

월간

재정포럼

2016. December_Vol.246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선/ 김유찬

현안분석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 -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

/ 최한수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박명호

정책토론포트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CONTENTS

권두칼럼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선 · 김유찬 02

현안분석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
-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 · 최한수 06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 박명호 26

인포그래픽

2016~2060 장기재정전망 45

포커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 의의 · 윤병태 58

정책토론티포트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6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국제청 자문단의 세무행정 이슈 관련 보고서 발표 외 93

정책흐름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157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 159
2016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164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소득세 제도는 개인들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공공재원을 조달한다.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존재는 자연인인 개인일 수밖에 없기에 소득세는 세금의 부담을 개인들 사이에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는 어려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소득세 제도는 개인들 사이에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역할을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와 소득 및 세액의 공제체계에 맡기고 있다. 소득세 공제체계는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개개인들의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는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공제체계는 실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들의 부양가족 수나,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 등 공제되는 내용이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를 통하여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추구하고자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3번째 자녀부터 높여줌으로써 미약하나마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한다. 때문에 소득세의 공제체계에서 하나의 요소나 정책목표를 분리하여 개정하기가 어렵다. 여러 사안들이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른 요소나 사안들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한 현 소득세 공제체계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인적공제액 수준이 낮고 근로소득공제수준이 높아서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소득세 공제체계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체계가 공평하지 못하여 성실한 사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체계가 허용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은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것인데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2007년에 42.2%에서 2013년에 32.1%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가 2014년의 소득세 공제체계의 대폭적 개편 이후 이 수치는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면세비율은 2007년 35%에서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면세비율이 23.1%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사업자의 면세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일본 등 OECD 평균인 20% 수준의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축소와 인적공제의 확대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30.7%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공제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높은 근로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적 이유는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가 충분하지 않고 또 사업자들은 경비사용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제출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들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에게만 소득세 공제 체계에서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차별적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소득자들에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개인적 지출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특히 정직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근로소득공제액 과다로 인하여 정작 저출산 추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세법은 가족 1인이 추가되면 해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을 연 15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한 가족에게 한 사람의 부양가족이 추가될 경우 과세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해주고 과세하면 소득이 동일하고 부양가족이 한 명 적은 다른 비교대상 가족과 동등한 과세상의 대우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30.7%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공제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
**즉, 사업소득자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받을
 소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세공평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은 기초생계비 수준에 비추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수준은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인적공제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과의 격차를 비교해도 싱글 근로소득자의 격차가 가족을 가진 근로소득자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세 공제체계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세수입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동시에 인적공제를 최소생계비 수준을 감안하면서 확대해야 한다. 또 사업소득자에게도 근로소득자에게 허용하는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를 허용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양성화율이 높지 않다고 하여도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자들보다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정당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 공제체계 개선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 확보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업소득자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받을 소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세공평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 즉 자녀가 많은 가족은 유리하게 되고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중립성은 유지되면서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경비의 신고를 성실하게 사실에 부합되게 신고하던 사업자는 상대적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던 사업자는 불리하게 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
-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
최한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oihns@kipf.re.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행정부, 그중에서도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퇴직 결정과 퇴직 이후 재취업력(再就業歷)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 고위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인력 관리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만큼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계속 공직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들은 정년 전에 퇴직한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위 공무원은 일반인이 갖지 못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적 자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퇴직 후 재취업패턴에 대한 연구는 고위 공무원에게 축적된 인적 자본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상위 1%의 공무원'에 대한 연구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약 156,000명이다.¹⁾ 이 중 장·차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의 숫자는 1,231명으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¹⁾ 한국의 공무원의 총 수는 1백만명이 넘는다. 2014년 기준으로 1,016,181명(출처: 인사혁신처, 「2015 통계연보」)

따라서 이들 고위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력에 대한 연구는 최고 경영자(CEO)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급여나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고위 공무원의 생애 임금에 대한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민간과 공무원 사이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을 준다.

공무원과 민간 사이의 임금 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²⁾들은 전체 공무원의 급여 구조와 특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초점이 ‘중·하위직(5급~9급)’에 맞추어져 있다.³⁾ 이로 인해 고위 공무원의 급여 구조의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고위 공무원에게는 잘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이번 연구를 통해 고위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 결정이 민간의 노동자는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위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시스템은 이들과는 좀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소위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 퇴직 관료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의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고위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 결정이
민간의 노동자는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위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시스템은
이들과는 좀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통해 고위 공무원(2급 이상)⁴⁾의 퇴직패턴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2005~2104) 동안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약 96%가 정년 전에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퇴직률 21%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퇴직 사유를 보자.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87%가 의원 면직,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였다.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19%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은 경기변동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의원 면직자 수가 줄어드는 일반직 공무원의 패턴과 비교된다. 결론적으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대다수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2) 이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 연구는 한종석(2016), pp. 24~31 참고하라.

3) 예컨대 한종석(2016)의 연구에서 4급 이상 공직자는 전체 샘플의 0.1% 미만이었다.

4) 고위 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는 제3장 제1절을 참고하라.

“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약 83%가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평균 3개 정도의 다른 직업을 가지며
 약 8.5년 정도 노동시장에 더 남아 있다가
 최종적으로 63세 정도 은퇴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정년 전에 의원면직의 형태로 퇴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퇴직 관료들의 취업패턴과 그 이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 67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재취업패턴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약 83%가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재취업에 성공한 뒤 이들은 평균 3개 정도의 다른 직업을 가지며 약 8.5년 정도 노동시장에 더 남아 있다가 최종적으로 63세 정도에 은퇴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직종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퇴직자의 52%가 ▲공공기관(20%)과 ▲협회(19%) ▲공직(12%)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나머지 48%는 각각 ▲사기업 취업(19%) ▲사기업 자문(16%) ▲학계 및 국제기구(13%)등의 민간영역에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직 경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첫 번째로 취업한 직업군은 공공기관(31%)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기업 취업(18%), 협회(18%) 순이었다.

퇴직 후 두 번째로 취업한 직업군은 사기업 취

업(11%), 사기업 고문(11%), 공공기관(11%) 순이었고 세 번째 직업군의 경우 협회(9%), 사기업 자문(8%), 사기업 취업(7%) 공공기관(7%) 순이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분석대상과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을 제Ⅳ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제Ⅴ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국내연구

공무원의 퇴직패턴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김병섭·양재진(2001)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정부 혁신이 공무원의 퇴직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퇴직률이 외환위기 이전 3%에서 그 이후 10%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훈·이호준(2012)은 공직임용의 개방성과 공직부패 발생의 관계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직임용의 통로가 폐쇄적일수록 민간에게 전임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강한 유인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부처별 개방형 공직임용제도의 도입과 정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중·조준모(1999)는 관료들의 피규제 기업으로의 전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피규제 기관으로 간 관료일수록 평균적인 초직 근속연수가 짧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를 피규제 기관이 관료에게 가치를 두는 측면이 감가상각(減價償却)이 더 잘 일어나는 로비 능력임을 간접

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병섭 외(2002)와 최무현(2015)은 퇴직 공직자의 관리 체계라는 관점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법부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Choi(2015)와 최한수(2016)가 있다. 두 연구는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의 퇴직 후 수입한 주요 경제범죄 사건들을 분석하였는데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의 경우 유죄선고 시 집행유예율이 전관 변호사의 수입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전관 변호사가 내는 좋은 성과는 상당 부분이 이들의 연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해외연구

미국과 유럽에서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 문제를 주로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으로 설명한다.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었던 버냉키(Bernanke)의 퇴직 후 첫 번째 직업이 시카고의 헛지 펀드의 통화정책 자문역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직 관료에 의한 회전문 현상은 상당히 흔한 현상이다.

Vidal, Draca, and Fons-Rosen(2012)에 따르면 1998년과 2008년 사이 미국에서 로비스트에 지불된 돈의 56%가 정부나 정치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로비스트에게 집중되었다. 이들은 로비스트가 받는 보수의 크기가 그들의 전문지식보다는 인맥에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로비스트의 네트워크가 인적 자본에 비해 보다 빠르게 감가상각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Lucca et al.(2014)는 지난 25년(1988~2013) 동안 미국의 연방과 각 주 5개 은행 감독 기관에

“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관행은 민간의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영미권의 관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한국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패턴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는 일본의 ‘아마쿠다리’이다.**
 ”

몸담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3만 5,000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분석하여 이들의 경력에 눈여겨 볼 만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규제 강도가 공직자의 이직 결정에 미치는 효과이다. 이들은 규제가 복잡해질수록 민간에서 공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들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회전문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관행은 민간의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영미권의 관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한국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패턴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는 일본의 ‘아마쿠다리(天下り, Amakudari: descent from heaven)’이다.

Colignon and Usui(2003)는 ‘아마쿠다리’라는 일본 관료 사회 특유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관료(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들의 재취업 형태가 대단히 체계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MITI 출신 관료들의 퇴직 후 취업 경로를 조사한 결과 퇴직 후 첫 직장은 자신이 감독하던 회사 중 규모가 큰 공기업(Yokosuberi), 다음 단계(보통 2~3년 이후)는 같은 분야의 협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간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체계적 패

“
**일본 사회의 ‘아마쿠다리’는
 후배들의 승진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년 전 용퇴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금체계의 성격이 있다.**
 ”

턴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일본 사회의 ‘아마쿠다리’는 후배들의 승진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년 전 용퇴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금체계(혹은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분석 자료·대상·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고위 공무원 퇴직패턴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력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전체 고위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연구를 위해 행정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공무원의 연도별·직급별 퇴직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보가 있다.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경력 데이터셋(이하 ‘경력 DB’라 표현)을 참고하였다.

경력 DB에서 언급한 경제부처라 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 포함)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 부처의 명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경력 DB를 구축할 때는 현재 부처명뿐 아니라 과거의 부처명을 모두 조사하였다.

예컨대 경력 DB에서 기재부라 함은 과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예산처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⁵⁾

본 연구의 고위 공무원의 정의는 분석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체 공무원의 퇴직패턴을 살펴볼 때의 고위 공무원은 장·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혹은 2급 공무원의 숫자를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⁶⁾ 그러나 경제부처의 고위 공무원 경우 중앙부처의 국장인 3급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고위 공무원 기준은 퇴직 당시의 직급으로 판단하였다. ‘퇴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별 이동(예컨대 기재부 → 금융위)이나 직위를 유지한 채 국제기구로 파견나가는 것(예컨대 기재부 → 월드뱅크)은 퇴직으로 보지 않았다.

퇴직 연도는 공무원 직 마지막 단계의 소속 및 직급에서의 퇴직 연도를 의미한다. 퇴직 연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을 시에는 퇴직 후 새로운 직위를 시작한 연도를 퇴직 연도로 간주하였다.

5) 마찬가지로 산자부의 경우, ‘동력자원부,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까지 포함하고 국토부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개념이다.

6) 보다 정확히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없었던 2006년 이전의 경우는 ‘1급+2급’을 합친 것(장차관 제외)을 그 이후에는 고위 공무원단 개념과 일치한다.

퇴직 후 경력은 크게 공공과 민간부문, 두 범주로 나누었다.

공공부문은 다시 ▲공공기관 ▲협회 ▲공직으로 나누었고 민간부문은 ▲사기업 취업 ▲사기업 자문 ▲학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각각의 범주에 대한 설명과 분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고위 공무원 전체 퇴직 통계는 각 연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참고하였고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과 재취업 정보는 각 언론사의 인물 DB를 종합하여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왜 퇴직 후 재취업패턴에 대한 분석을 경제부처로 한정하였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이유이다. 전체 부처 관료들의 퇴직 후 취업 내역을 조사하는 작업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석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비경제부처’의 경우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 대응할 정도의 민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 중 하나가 퇴직 공직자에게 민간과 공공영역 양자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들이 왜, 어디를 선택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비경제부처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외교부의 경우 퇴직 관료들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공공영역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이들과 유사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교부 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 경로를 분석할 경우 관료들이 자신이 감독 혹은 관리하던 기관으로 취업한다는

“
먼저 전체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과 관련하여 정년 퇴직률, 전체 퇴직자 중 의원면직 비율, 퇴직률의 연도별 추이, 경기와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

도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제부처 공무원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먼저 전체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과 관련하여 정년 퇴직률, 전체 퇴직자 중 의원면직 비율, 퇴직률의 연도별 추이, 경기와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퇴직 시점, 퇴직 후 재취업 시기, 퇴직 후 취업력(就業歷)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중에서도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의 재취업 직종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공공영역

- (가)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는 기관들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나) 관련협회(저축은행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 협회는 이윤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도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회를 공공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다) 공직(퇴직 후 공직에 재입성, 정치권 포함)

나. 민간영역

- (라) 로스쿨, 학교, 국제기구(정직원으로 취업한 경우만 포함하여 초청연구원, 명예, 특임, 교수 등은 제외)
- (마) 사기업(상근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 (바) 사기업(비상근 직위로서 고문, 자문, 여기에 사외이사 포함)

이 중 협회를 공공영역으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협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먼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외부에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경우에 따라 정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윤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도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회를 공공영역으로 분류하였다.

IV. 기초 통계량 및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경력DB 안에는 678명의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있다. 부처별로 기재부(금융위와 금감위 포함)(32%) → 산자부(29%) → 국토부(20%) → 국세청(10%) 순이다. 경력 DB에서 각 부처별 퇴직 공직자 비율은 [그림 1]과 <부표 1>에 있다.

[그림 2]와 <부표 2>에는 퇴직 연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10년 단위로 퇴직 시점을 나누어 보면 2000년대(2000~2009년)가 가장 많아 전체 샘플의 39%(262명)이고, 다음으로 2010년대(2010~16년) 33%(218명), 1990년 이전이 18%(121명) 순이었다. 2000년대 이후 퇴직한 공직자는 전체의 약 73%이었다.⁷⁾

퇴직 시 직급별 통계는 [그림 3]과 <부표 3>에 있다. 장·차관 경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전체의 34%(233명)로 가장 많다. 1급 경력의 공직자는 19%, 2급 경력은 17%로 이들 세 그룹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잠시 DB의 포괄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경력DB 안의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의 퇴직 정보가 과연 전체를 어느 정도 포괄하는 것일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만을 놓고 이를 살펴보았다.

DB에서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2급 이상 직위(장차관 제외)의 퇴직공직자는 모두 144명이다. 간단한 방법⁸⁾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경제부처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수를 추정해보면 약 278명이다. 따라서 경력 DB는 최근 10년 동안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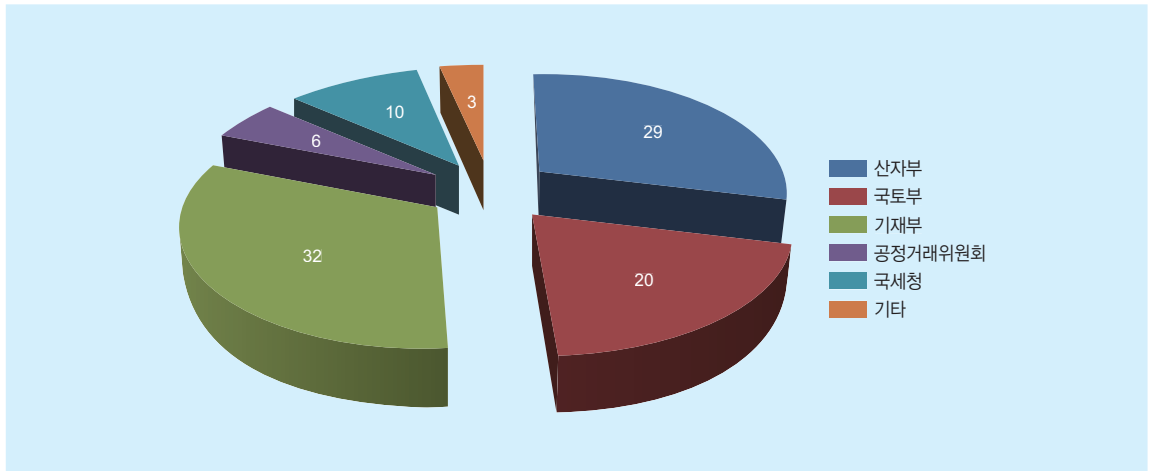
7) 참고로 본 연구의 샘플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사례는 1949년이다.
8) 직급별 평균 재임 기간을 갖고 계산한 것이다.

제부처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의 DB에서 과거 장·차관 출신 공무원은 대부분 포괄하

고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DB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⁹⁾

[그림 1] 표본 구성(부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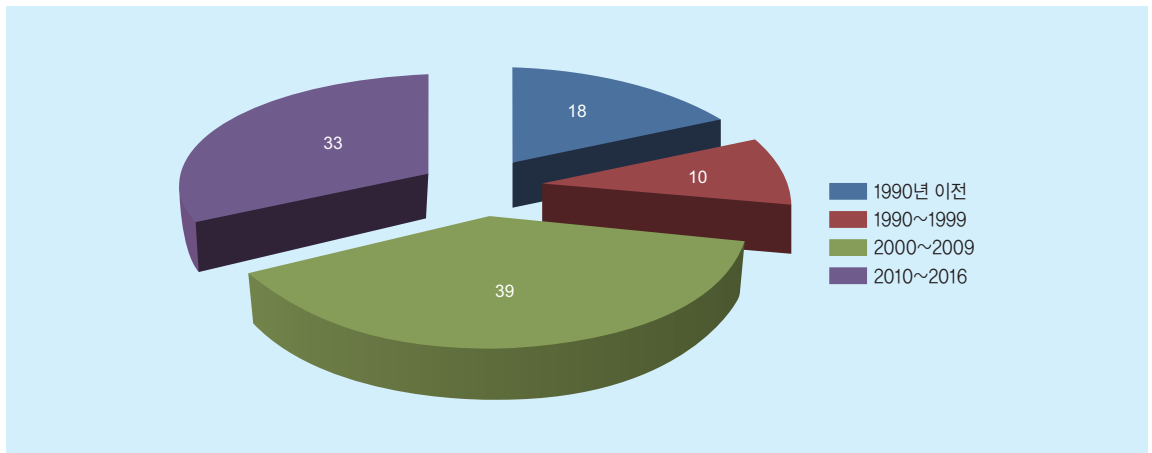
(단위: %)



주: 기재부에는 금융위원회, 금감위, 그리고 기획예산처 포함

[그림 2] 표본 구성(퇴직 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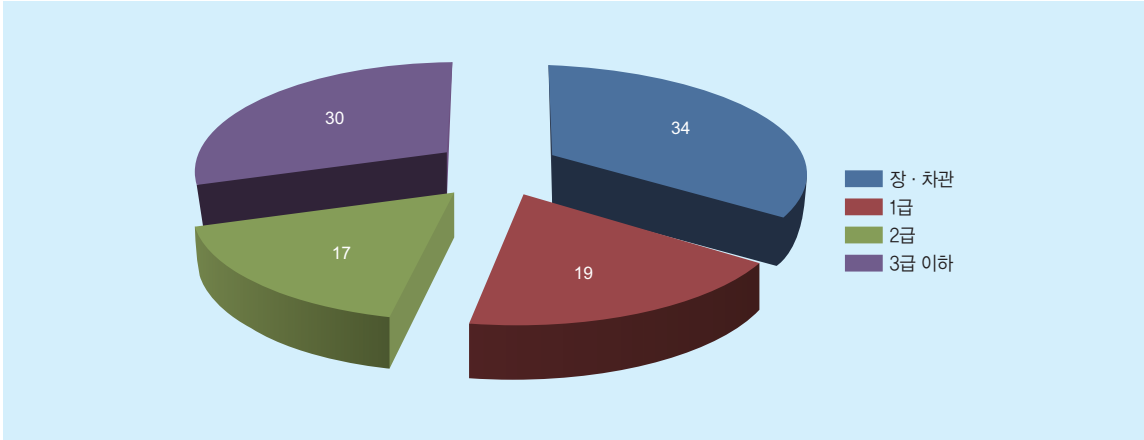
(단위: %)



9) 반면에 시기적으로 과거로 올라갈수록 결측치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표본 구성(퇴직 시 직급 기준)

(단위: %)



2. 분석결과

가. 행정부 고위 공무원 퇴직패턴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이용하여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법정 정년(즉 60세) 이전에 퇴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10년(2005~2014년) 사이 고위 공무원의 정년 퇴직률은 고위 공무원 전체 퇴직자의 3.3%(전체 210명중 7명)에 불과하였다. [그림 4]는 고위 공무원의 정년 퇴직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연도별 편차(variation)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직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림 4]에서 나타나있듯이 같은 시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퇴직률은 평균 21%로 고위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 추세도 차이가 있는데 연도별로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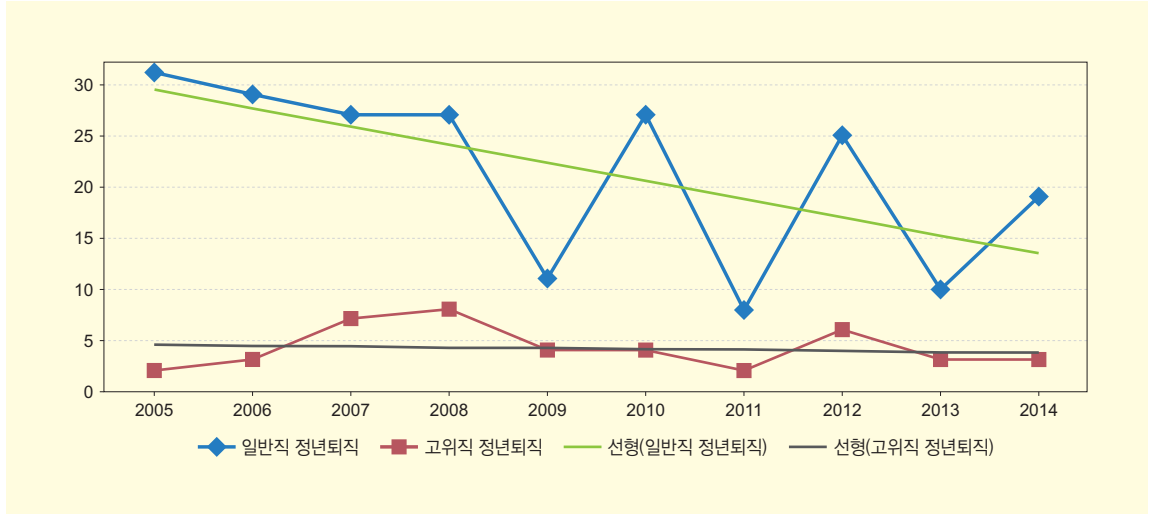
일정 비율로 퇴직하는 고위 공무원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퇴직률은 최근 들어 그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위 공무원은 왜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것일까? 이는 이들 대부분이 의원면직, 즉 본인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기 때문이다.¹⁰⁾ 실제 지난 10년 동안 고위 공무원 퇴직자 중 의원면직 비율은 평균 87%였다. 10명 중에 약 9명이 정년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다.

¹⁰⁾ 퇴직 사유 중에는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외에 사망, 징계, 당면 퇴직 등이 있다.

[그림 4] 퇴직자 중 정년퇴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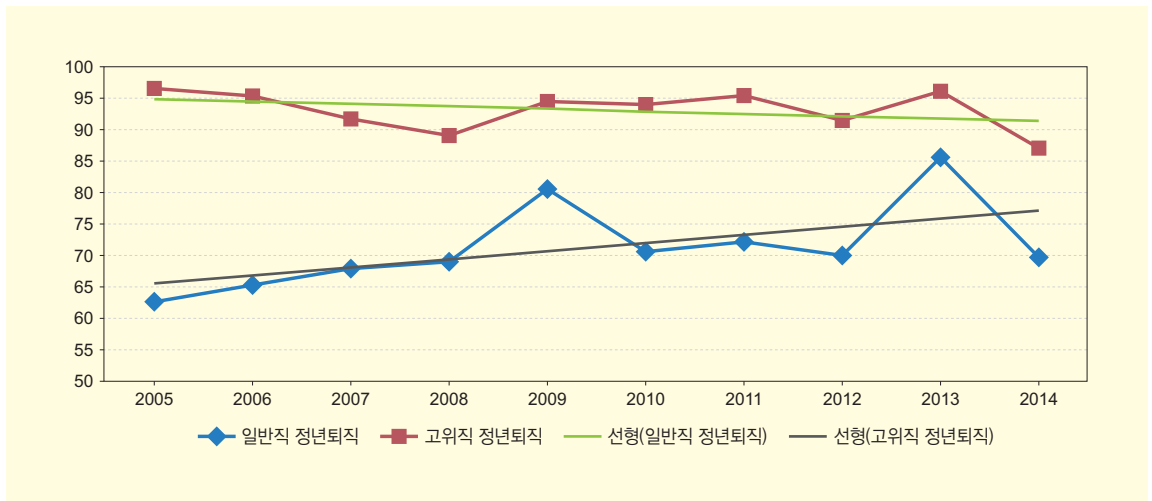
(단위: %)



주: 1.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지방 제외)
 2. 2006년 이전의 고위 공무원의 개념은 1급+2급 공무원의 숫자를 합산한 것. 그 이후는 고위 공무원단과 일치
 출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각 연도

[그림 5] 전체 퇴직자 중 의원면직 비율

(단위: %)



주: 1.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지방 제외)
 2.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서는 2010년까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술하였고 2011년부터는 명예퇴직이 의원면직 및 사망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서술. 여기서는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의원면직은 의원면직+명예퇴직을 합친 것을 의미
 3. 2006년 이전의 고위 공무원의 개념은 1급+2급 공무원의 숫자를 합산한 것. 그 이후는 고위 공무원단과 일치
 출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각 연도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은 경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대답은 [그림 6]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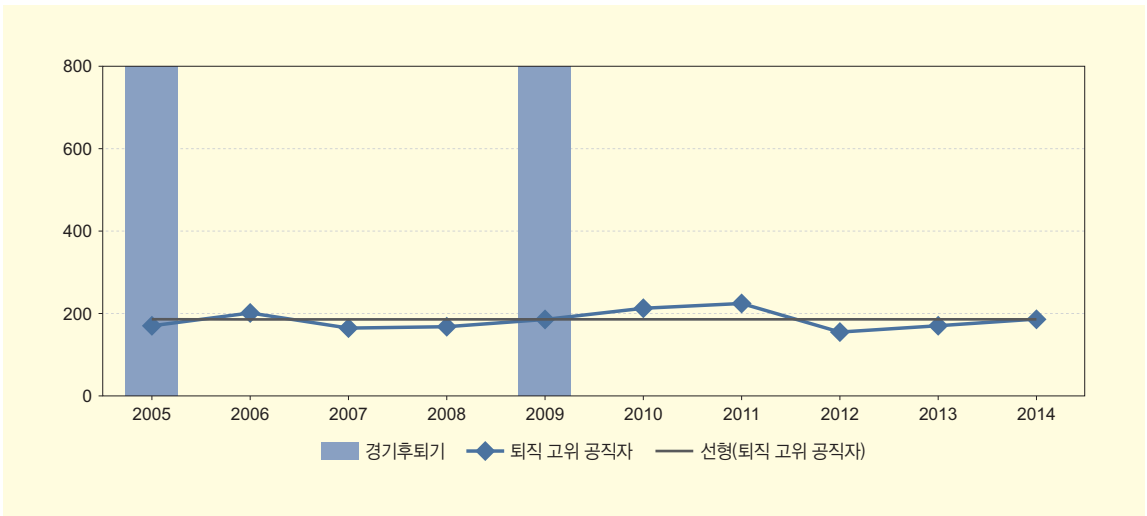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행정부 고위 공무원 중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직자의 숫자는 경기 변동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acyclical)처럼 보인다. 예컨대 경기 후퇴기라고 해서 의원면직자의 숫자가 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의원면직 패턴과 상당히 다

르다. [그림 7]에서 보듯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도별 의원면직자 수는 경기와 동조되는 경향(procyclical), 특히 경기가 나쁠 때에 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불경기에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고위 공무원 중 의원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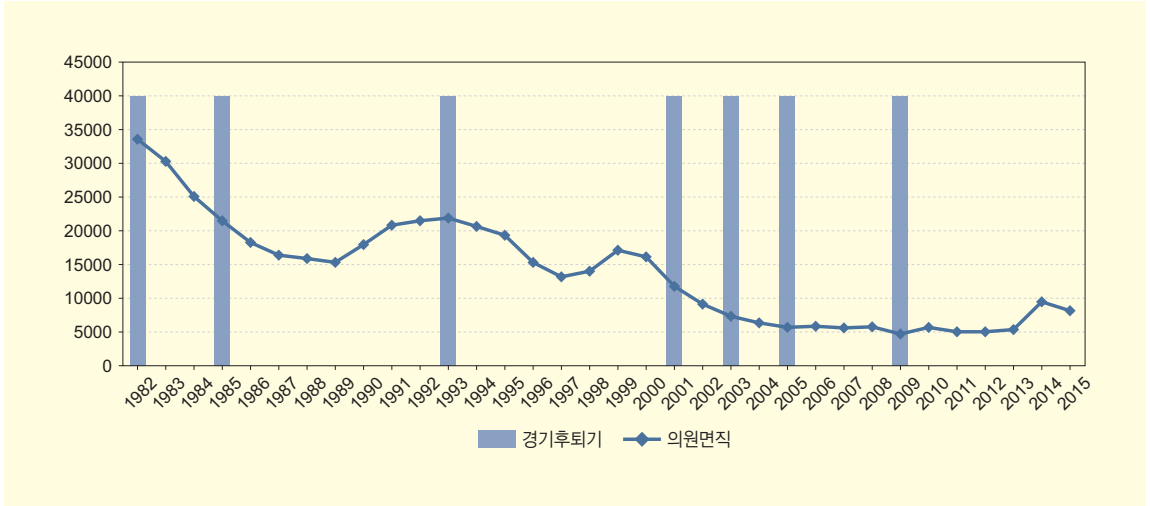
(단위: 명)



주: 1. 퇴직 고위 공무원의 정의는 2006년 이전의 고위 공무원의 개념은 일반직 1급+2급 공무원의 숫자를 합산한 것. 그 이후는 고위 공무원단과 일치 (출처: 각 연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과 특정직 별정직과 구분되는 직종(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및 지방제외)
 2. 경기후퇴기: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기 후퇴기 해당 연도에 월별 순환변동치가 100 이하인 경우가 3분의2 이상이면 경기후퇴기로 판단
 원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7

[그림 7] 국가공무원 중 의원면직자 수

(단위: 명)



- 주: 1. 의원면직자 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퇴직자 데이터. 여기서 공무원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 즉 국가(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포함) 및 지방공무원을 의미.
- 2. 경기후퇴기: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당 연도에 월별 순환변동치가 100 이하인 경우가 3분의2 이상이면 경기후퇴기로 판단(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제외)

원출처: http://www.data.go.kr/comm/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309751&fileDetailSn=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7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왜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설명은 시장 수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은,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때문이든 아니면 이들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든 시장에서 탐내지만 희소한 자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요는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알고 있는 고위 공무원은 퇴직 결정에 있어 경기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 이를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문화를 갖고 있는 관료제도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인사에 있어 특정 고시 기수가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그 뒤 기수가 일괄적으로 사퇴하는 관

행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인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용퇴에 따른 고위 공직자의 퇴직 결정은 경기와 상관없어진다.

이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우리가 목도한 고위 공무원 퇴직패턴의 경기무관성을 더 잘 설명해 주는가를 보기 위해 재취업패턴을 들여다볼 것이다.

나.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I: 연령, 직업 수, 취업기간

분석 결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6세이었다. 이는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보다 약 6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고위 공무원의 조기퇴직 관행이 경력 DB에서도 재확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퇴직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확률은

약 83%였다.¹¹⁾ 이들이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0.7년이였다. 이는 퇴직 후 첫 번째 직업을 구하는 연령(54.3세)과 퇴직 연령(53.6세) 차이를 통해 구해진다. 이처럼 높은 취직 확률(job finding probability)은 일반 노동자에게서 발견되는 진입장벽(entrance barrier)에 의한 마찰적 실업이 이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 군에서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강건성 분석(robustness check)을 위해 샘플을 2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다시 1990년 이후 퇴직자로 한정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이 경우 샘플 수는 315개로 줄어든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퇴직 후 0.7년(=첫 번째 취업연령(55.9세)-평균 퇴직 연령(55.2세))이내에 직업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평균 8.5년 정도 남아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평균 3번 정도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경제 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약 평균적으로 63세(62.8=54.3+8.5)가 되어서야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를 넘어선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 중 90%는 법적

정년을 6년 앞두고 퇴직한다. 이러한 결정은 정년까지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대급여의 상실이라는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다시 퇴직 공무원들의 80%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한다. 그 후 평균적으로 약 8.5년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음으로써 사실상 조기 퇴직의 경제적 손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보다 엄밀하게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업의 질(quality)과 급여수준을 알아야 한다.

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II: 이직경로에 따른 직업유형

분석 결과 경제부처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직종은 공공과 민간영역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공공기관(약 20%)에 자리 잡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회와 같은 공직 유관 혹은 반민-반관 단체(약 19%), 다음으로 공직(12%)이었다. 이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합치면 전체의 52%가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 재취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에 자리 잡는 경우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8% 수준이다. 사기업 취

〈표 1〉 경제 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현황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공직근무기간(년)	622	23.0	10.5	0	40
퇴직연령(세)	661	53.6	5.2	28	69
첫 번째 취업연령(세)	578	54.3	5.3	32	75
퇴직 후 경력개수(개)	678	2.9	2.9	0	23
퇴직 후 경력기간(년)	438	8.5	7.6	0	45

주: 공직근무기간이 0인 경우는 민간기업이나 학교 등 다른 곳에 있다가 장관으로 임명되어 1년 안에 그만 둔 경우 등이 있음

11) 물론 이 취업률은 DB안에 있는 고위 공무원 중의 취업률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 우리 샘플의 선택 편의(bias)가 커서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배제되었다면 취업률은 이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업(19%)→사기업 고문(16%)→학계 및 국제기구(13%) 순이다.

이처럼 퇴직한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 재취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한국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패턴이 서구의 회전문 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회전문 현상은 규제나 허가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뒤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혹은 관련 협회조직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공공기관이나 협회는 정부 기능의 일부를 위탁 혹은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부처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그 업무는 많은 경우 자신이 과거에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정년연장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후 맡게 되는 직위의 대부분이 고위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퇴직 후 첫 번째 직업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한 208명 중 공공기관에서의 직위가 임원급(기관장, 이사장, 감사 등)이 아닌 경우는 단 5명에 불과했다.¹²⁾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보수수준이 차관급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취업하여 받는 연봉 수준이 현직

“
**한국의 경우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혹은
 관련 협회조직에서 일자리 얻는다.
 또한 이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후 맡게 되는
 직위의 대부분이 고위직이다.**
 ”

에서 받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정부부처 1급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가 퇴직 직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최고 상한액은 약 7,488만원이다.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평균적으로 1억 5,856만원이다. 2.1배 정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고용확률까지 고려한 기대임금을 계산하면 1.7(=0.83×2.1)배가 상승한다.^{13) 14)}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연령에 따른 임금 프로파일 추세와 대조적이다. 한중석(2016)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임금수준은 노동시장 경험연수가 25~30년에 이른 시점에 최고점에 다다른 후 점차 하락한다. 경력 DB의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당시 공직경력이 평균 23년이고 퇴직 후 8.5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임금 프로파일은 노동시장 경험연수가 31.5년까지 꾸준히 올라가거나 대단히 느리게 하락하는

12) 김병섭 외(2002)도 2000년 재계 인명록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공직자의 직위이동 현황을 분석하여 민간에서도 이직 시 직급이 상향 이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3)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의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5,856만원, 1억 3,559만원, 1억 4,393만원이다(출처: <http://www.aio.go.kr/statisticsStat4.do>).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2급(25호봉)은 6,876만원, 1급(23호봉)은 7,488만원, 차관급은 1억 1,352만원, 장관은 1억 1,689만원이었다(출처: 2급과 1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장차관은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4/0200000000AKR20160104187000001.HTML>)

14) 기관장의 급여가 외부에 공개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협회의 경우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없다.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이사장의 연봉이 3억원(엔지니어링 데일리 2014.10.13.일자 기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경우 7억 3,500만원(한경 2014.8.14.기사)이다. 이는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과 미국(유럽)의 퇴직 관료의 재취업

	한국	미국(OECD)
퇴직 후 역할	공공기관 혹은 협회 임원	민간기업 로비스트
분야	전 분야	규제 및 허가 부서(금융, 군수, 의약)
민간과 관료의 관계	관료→민간	관료↔민간

〈표 3〉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단위: 개, %)

퇴직 후 경력의 유형	개수	비율
공공기관	395	20
관련협회	376	19
공직(공무원, 정치권포함)	230	12
공공영역(소계)	1,001	52
로스쿨, 학교, 국제기구	254	13
사기업(취업)	376	19
사기업(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308	16
민간영역(소계)	938	48
총 합	1,939	100

주: 공직근무기간이 0인 경우는 민간기업이나 학교 등 다른 곳에 있다가 장관으로 임용되어 1년 안에 그만 둔 경우 등이 있음

임금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이를 고려하여 살펴보자. 재취업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평균 3번 이직한다는 앞의 분석결과 때문이다.

또한 이는 한국에도 일본의 아마쿠다리와 유사한 관행이 있는지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관료들의 퇴직 후 이직 흐름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직(初職)과 그 이후의 직업군 간에 눈여겨볼 만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경력을 퇴직 후의 순서대로 분류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이 제일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서를 불문하고 취업한 직업군으로 공공기관의 비중은 20% 정도였는데, 순서를 감안하면 이는 31%까지 올라갔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경력으로 가면서 공공기관 비중은 크게 줄었다(각각 31%→11%→7%). 반면에 민간영역의 사기업 자문이나 로스쿨 등은 변화의 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4〉 참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직종 중 상위 3개만을 뽑은 내용이 〈표 5〉에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직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지만 세 번째 직업이었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경로

(단위: %)

유형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공공기관	31	11	7
관련협회	18	10	9
공직(정치권포함)	5	7	6
로스쿨, 학교, 국제기구	10	8	5
사기업(취업)	18	11	7
사기업(고문, 자문위원등)	11	11	8
무직	8	42	58
총 합	100	100	100

주: 전체 관측치는 678명

〈표 5〉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경로(상위 3개)

(단위: %)

순위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1	공공기관(31)	공공기관(11), 사기업취업(11), 사기업자문(11)	관련협회(9)
2	관련협회(18), 사기업취업(18)		사기업자문(8)
3			공공기관(7), 사기업취업(7)

마지막으로 퇴직 후 재취업 직종에서의 평균 재직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민간과 공공분야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재직 기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종별로 자신의 퇴직 후 재취업력 중 언제 그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재직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직업인 경우 평균 2.9년과 2.6년 재직했으나 세 번째인 경우 1.7년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서도 가장 짧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임

〈표 6〉 경제 분야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현황(재직 연수)

(단위: 년)

평균임기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공공기관	2.9	2.6	1.7
관련협회	4.0	3.1	4.0
공직(정치권포함)	3.0	2.5	2.3
로스쿨, 학교, 국제기구	4.8	4.2	5.2
사기업(취업)	4.6	3.3	5.0
사기업(고문, 자문위원등)	5.7	4.6	3.0
전체	3.9	3.5	3.4

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왜 세 번째 재직기간만 1.7년으로 크게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체에 취업의 경우 세 번째 취업 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재직기간보다 길었다.

IV. 결론

고위 공무원의 퇴직 결정과 퇴직 후 재취업패턴을 살펴본 본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부 고위 공무원 전체 퇴직패턴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1) 대부분이 정년 전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다.
- 2) 이러한 의사결정은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의 83%가 퇴직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다.
- 2) 퇴직 후 총 8.5년 동안 평균 3번 정도 이직을 하며 63세 정도에 노동시장에서 사라진다.
- 3) 재취업 업종은 공공과 민간영역이 거의 비슷하나 공공영역 비중이 조금 높다.
- 4) 재취업 이력을 업종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직업으로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을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으로 선택하는 비중은 빠르게 줄어든다.
- 5) 공공기관에 취업한 고위 공직자는 이전 공직 급여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한국의 고위 공무원의 퇴직과 재취업패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한지 생각해보자. 앞에서 한국의 관료 집단, 특히 퇴직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아마쿠다리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이 연구에서 목격한 고위 관료들의 재취업패턴이 전직 관료에서 로비스트로 변신한 서구의 사례와 몇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퇴직 후 취업, 특히 첫 번째 직업이 공공기관에 몰려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위 공무원의 퇴직결정은 미국처럼 퇴직 관료에 대한 민간 수요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관료 조직 내적 요인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 최무현(2015)은 일본의 아마쿠다리 관행이 조직 내에서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퇴직관리의 일환으로 활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경력직 관료가 퇴직하면 그 성향에서 퇴직 시 상당하는 지위와 대우를 받는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주선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의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을 아마쿠다리로 설명할 경우 이들의 재취업은 후배의 승진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퇴한 선배들의 희생에 대한 관료 조직 차원의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한수(2016)는 아마쿠다리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 사법부의 전관예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관료들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승진이라고 하자. 여기에 승진 가능성이 희박한 고위 관료가 있고 그의 정년은 몇 년이 남아있다. 이 경

우 그 고위 관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한 가지 선택은 낮은 승진 가능성이란 조건하에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퇴직하여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이후 벌어들이 수 있는 기대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다. 자신이 계속 직위에 남아 있을 경우 그는 정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전 퇴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이 현직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최소한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

현직에 있는 후배 입장에서 승진 가능성이 희박한 선배가 계속해서 관료 조직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자신의 승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선배들이 퇴직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남아있는 후배들의 승진 가능성은 더 올라간다.

이 경우 공직자에게 퇴직 후 옮겨갈 자리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들 선·후배 그룹은 각각 금전적 혜택(퇴직하는 관료)과 승진기회 확대(남아있는 관료)라는 상호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몇 가지 이유로 공공기관(과 협회)이 이러한 ‘예약석(reserved seat)’에 부합한다.

먼저 공공기관과 협회의 임원을 위한 노동시장은 일반기업 임원들을 위한 시장과 그 성격이 다르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나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선출절차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료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민간에 비해 자리를 둘러싼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이들의 업무가 기존에 자신이 근무하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옮겨갈 자리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들 선·후배 그룹은
 각각 금전적 혜택과 승진기회 확대라는
 상호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던 부처의 업무와 밀접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노력과 수고를 덜어준다. 이런 면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퇴직 공직자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과 유사하다.

세 번째 급여 수준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공무원에 비해 높다. 앞서의 가상적 사례로 설명하면 1급으로 퇴직한 경우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재취업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경우, 초직(初職)만으로도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¹⁵⁾ 그 이후부터는 재직 시기 전체의 낮은 보수를 감내하는 유인기제인 것이다.


이는 ‘고위 공무원의 조기 퇴직 → 공공기관 및 협회로의 이직’이라는 관행이 ‘낙하산 인사’라는 외부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이러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이 퇴직하는 공무원이나 현직에 남는 공무원들 모두에게 상호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정

15)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 당시의 평균연령은 53.6년이다. 그리고 1급에서 퇴직 후 기관장으로 이직할 경우 임금이 2.1배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3년 동안 받는 급여는 현직에 6.3년 동안 받는 것과 동일하고 이를 더하면 초직만으로 59.9세까지 급여를 받는다. 이는 정확히 자신의 퇴직 나이와 일치한다. 공공기관의 초직으로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를 염두해 둔 표현이다.

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재훈·이호준(2012)의 주장처럼 정년을 완화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관료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의 임금 프로파일(wage profile)이 민간에 비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동일한 경력이나 학력수준을 갖고 있는 민간의 임금 프로파일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중 어느 정도가 고위 공무원의 인적 자본과 연줄(connections)에 의한 프리미엄(premium)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퇴직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취업한 후 실제로 그 기관이 정부계약 체결이나 규제에 있어 우선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공부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키는지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섭·양재진, 「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이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12, pp. 409-425.
 김병섭·양재진·김연진·정복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분석 : 늘어나는 수요, 줄어드는 기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10, pp. 17-37.
 김일중·조준모, 「규제와 부정부패 :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

제학연구』, 47(3), 1999, pp. 47-141.
 김재훈·이호준, 『공직임용제도와 공직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최무한, 「'확장된' 퇴직관리 관점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정부학연구』, 21(2), 2015, pp. 5-35.
 최한수, 「전관예우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2016, (<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ZGVmYXVsdGRvbWFpbmXoYW5zb29jaG9pMTF8Z3g6NDFiM2ViZmI3MTI4NmJjZQ>).
 한중석,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 비교 방법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미공개자료), 2016.
 Choi, Hansoo,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Revolving Door: Evidence from South Korea's Judiciary," Edmond J. Safra Working Paper No. 65, 2015.
 Colignon, Richard A. and Chikako Usui, Amaku dari, "The Hidden Fabric of Japan's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Lucca, David, Amit Seru, and Francesco Trebbi, "The revolving door and worker flows in banking regul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5, pp. 17-32, 2014.
 Vidal, Jordi Blanes I., Mirko Draca, and Christian Fons-Rosen, "Revolving door lobbyi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pp. 3731-3748, 2012.

〈부표 1〉 표본 구성(부처 기준)

(단위 명, %)

기관	표본 수	비율
산자부	197	29
국토부	135	20
기재부	194	29
금융위원회	13	3
금융감독위원회	9	1
공정거래위원회	38	6
국세청	69	10
기타	23	3
합계	678	100

〈부표 2〉 표본 구성(퇴직 연도 기준)

(단위 명, %)

기관	표본 수	비율
1990년 이전	121	18
1990~1999	68	10
2000~2009	262	39
2010~2016	218	33
합계	669	100

주: 퇴직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결측치 8개 있음

〈부표 3〉 표본 구성(퇴직 시 직급 기준)

(단위 명, %)

퇴직 시 직급	표본 수	비율
장·차관	233	34
1급	127	19
2급	115	17
3급 이하	203	30
합계	678	100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I. 서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cpmh@kipf.re.kr)

최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및 더딘 경기회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은 세법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세수확대의 어려움과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의 지속, 노후에 대한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한 단위의 가치가 상승하여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한 채 세수증대를 야기하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납세의 식 고취 등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유인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화를 경험한 다수의 선진국은 자발적·비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율, 가산세 등 조세정책 도구 이외에 납세의식, 사회적 규범,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OECD(2010) 보고서는 납세순응행위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억제(Deterrence), 규범(Norms), 기회(Opportunities), 공정성과 신뢰(Fairness and Trust),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제시하였다. 그리고 납세순응도 제고전략을 수립할 때 위의 5가지 유형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개별 효과뿐만 아니라 동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해원(2012)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시행하여 납세순응행

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 인구특성 변수들을 통제해도 성실납세의향(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함을 보였다. 백웅기·박명호(2015)는 1,000명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 국세청 신뢰 정도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변수들과 사회·경제적인 인구특성 변수들을 통제해도 납세순응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들이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고려할 때, 최근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점검하고, 그러한 인식 변화가 납세순응도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¹⁾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들과 납세순응행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점검하고,
그러한 인식 변화가 납세순응도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II. 설문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 분포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설문조사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질문들과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납세 관련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질문들은 크게 납세순응행위, 개인적 규범 등 7가지 유형이다.

〈표 1〉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 용
인구통계 특성 질문	- 거주지역, 성별, 연령, 고용형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연평균 소득수준, 1년간 복권 구입 유무, 이념적 성향 등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 관련 질문	- 납세순응행위 - 개인적 규범 -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1) 본 연구는 납세순응행위와 그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다만 납세순응행위와 납세 관련 심리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납세 관련 인식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효응답 인원은 총 2,299명이었으며,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센서스를 조사 모집단으로 사용하였고, 지역별(16개 시도), 성별(남/여), 연령대별(20대/30대/40대/50대/60대), 근로형태별(임금근로자/사업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미취업자)로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설정하였다. 모집단 특성에 비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은 54.9%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7%로 가장 많고, 30대(26.7%), 50대(23.7%), 20대(12.7%), 6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비율은 66.2%였으며,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48.8%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별 응답자 분포는 임금근로자 62.8%, 사업주·자영업

자 20.5%, 미취업자 11.7%, 무급가족종사자 5% 순이었다. 연간 소득수준 분포를 보면, 1천만원 미만 12.3%, 1천만~3천만원 미만 31.8%, 3천만~5천만원 미만 31.9%, 5천만~7천만원 미만 15.6%, 7천만원 이상 8.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는 중졸 이하 1.9%, 고졸 이하 21.3%, 대졸 이하 66.9%, 대학원 이상 9.9%로 대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1. 납세순응행위 지표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묻는 두 가지 설문항목으로 생성하였다. 첫 번째 설문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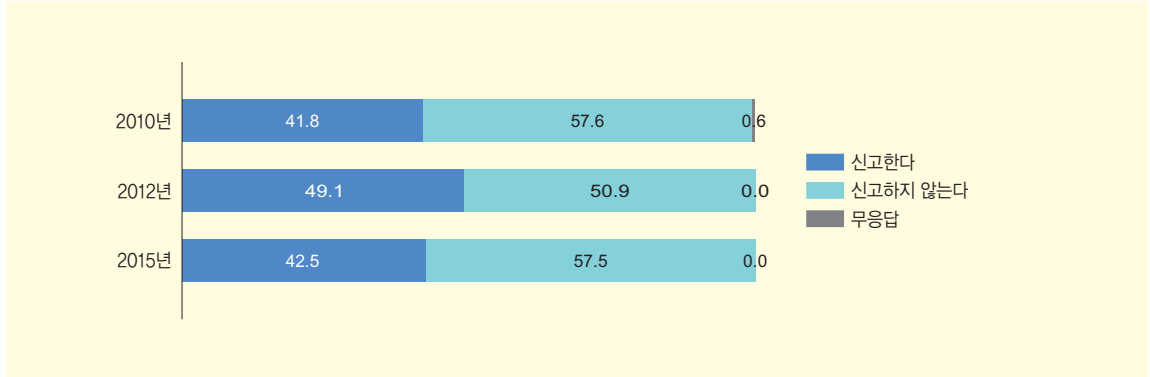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중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전체		2,299	100.0				
성별	남성	1,262	54.9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444	62.8
	여성	1,037	45.1		사업주/자영업자	472	20.5
연령	20대(25~29세)	292	12.7		미취업자	268	11.7
	30대(30~39세)	613	26.7		무급가족종사자	115	5.0
	40대(40~49세)	683	29.7	배우자 유무	있음	1,522	66.2
	50대(50~59세)	544	23.7		없음	777	33.8
	60대(60~64세)	167	7.3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48.8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2.3		기타 광역시	695	30.2
	1~3천만원 미만	732	31.8		그 외 지역	481	20.9
	3~5천만원 미만	733	31.9	교육 수준	중졸이하	44	1.9
	5~7천만원 미만	359	15.6		고졸	490	21.3
	7천만원 이상	192	8.4		대졸(전문대졸)	1,538	66.9
			대학원 이상		227	9.9	

[그림 1] 현금매출액 1천만원 신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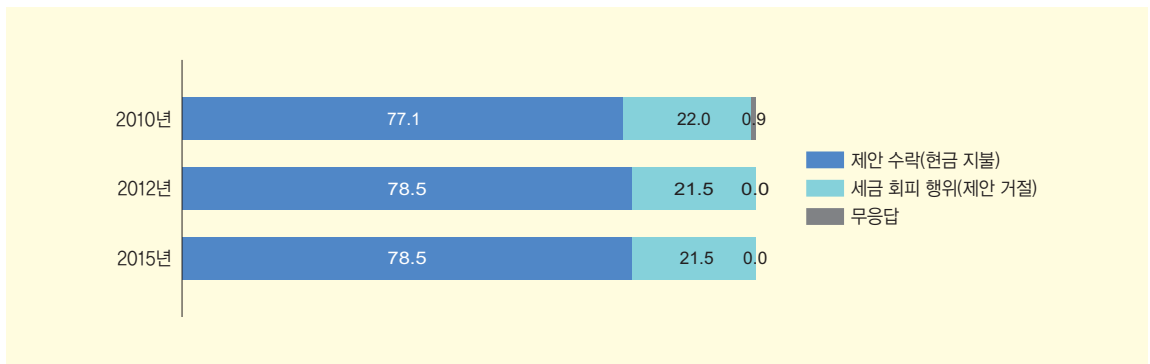


은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동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인 42.5%는 신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010년 설문조사²⁾에서는 신고한다는 의견이 41.8%였으며, 2012년에는 49.1%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 조사 결과는 다시 42.5%로 하락하였다.

두 번째 설문항목은 50만원짜리 물건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수락 여부이다. 동 질문에 대하여 10명 중 약 2명(21.5%)만이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과거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림 2] 현금할인 제안 수락 여부

(단위: %)



2) 동 설문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명호·정재호(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다만, 과거의 설문조사와 달리 금번 조사에서는 할인 금액의 규모가 2만원 증가한 차이가 있어서 과거 설문조사와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도 설문응답 결과와 비교하여 가상적인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가 최근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적 규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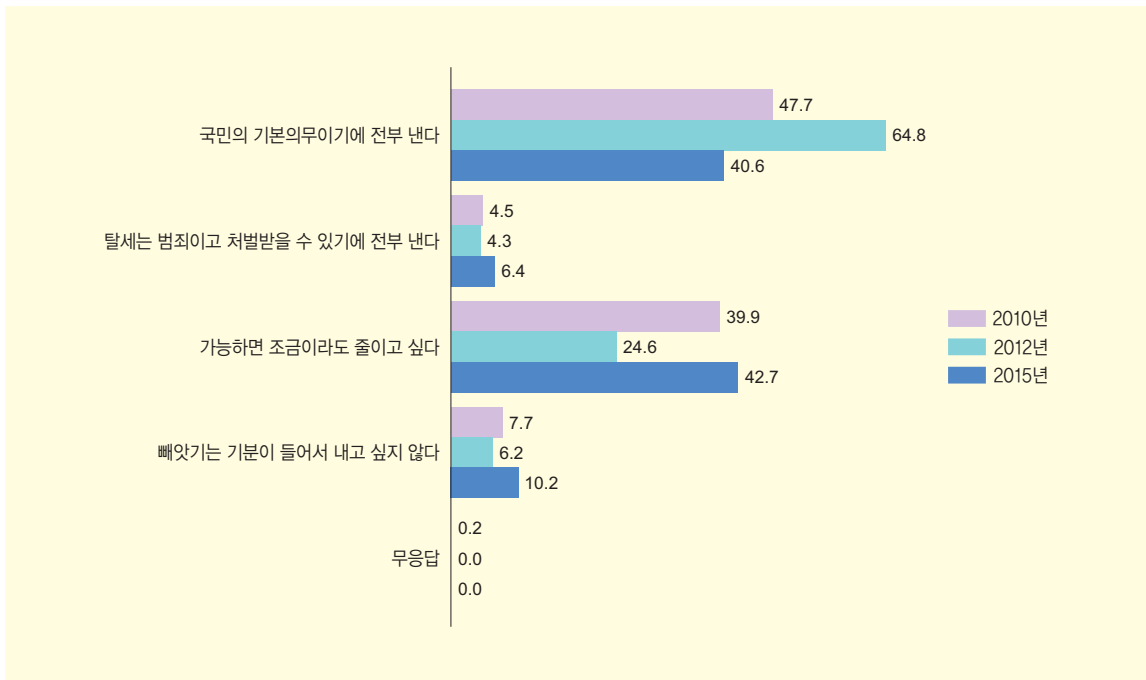
개인적 규범 지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종합한 지표로 어떠한 생각으로 세금납부를 하는가란 질문과 세금납부회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생성한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적극적 성실납세의향,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 성실납세의향, “가

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와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성실납세의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성실납세의향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은 52.9%,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40.6%,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6.4%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성실납세의향을 지닌 응답자 중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고, 납세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였다.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 시 적극적 성실납세의향 응답 비율은 줄어든 반면, 부정적 성실납세의향 응답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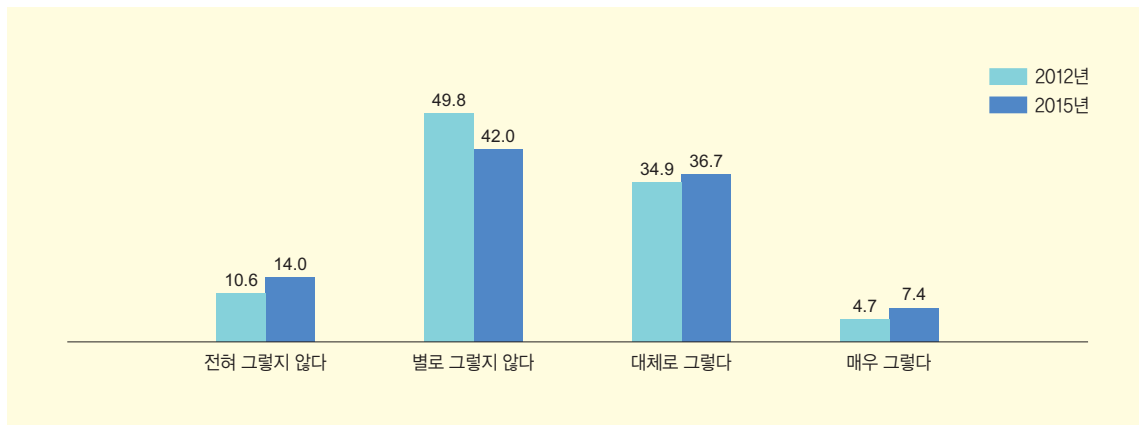
[그림 3] 세금납부 시 드는 생각

(단위: %)



[그림 4] 적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세금납부회피 의향 여부

(단위: %)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세금 납부회피 의향을 나타내는 답변(“대체로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7.4%)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44.0%,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인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42%)을 한 응답자는 56%로 응답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만이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도 설문조사와 비교 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승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규범 또는 혐의의 납세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2012년도 설문조사와 비교한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이 퇴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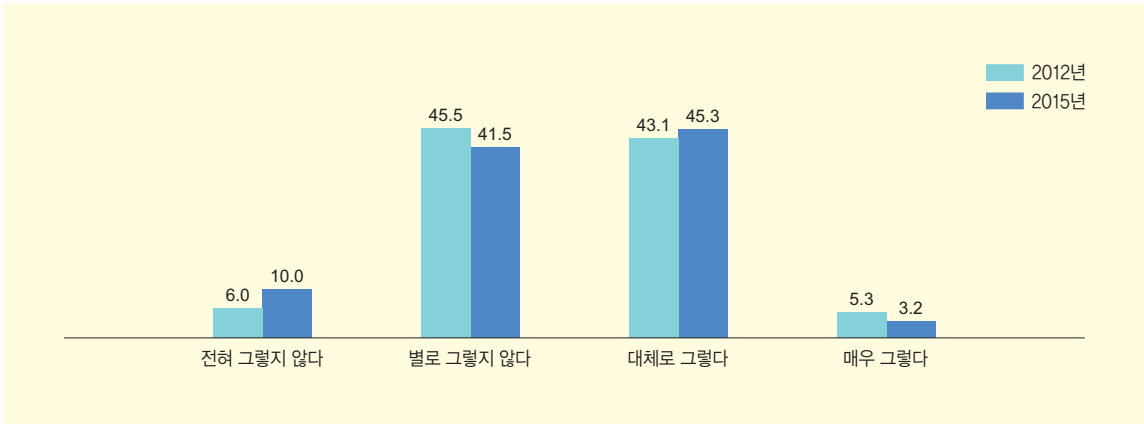
3. 사회적 규범 지표

본 연구에서는 이해원(2012)처럼 사회적 규범을 기술적 사회규범(descriptive social norm)과 명령적 사회규범(prescriptive social norm)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회적 규범 지표를 생성하였다. 여기서 기술적 사회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령적 사회규범은 특정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기술적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41.5%)이 51.5%로 긍정적인 답변(“대체로 그렇다” 45.3%, “매우 그렇다”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 시 부정적 답변 비율과 긍정적 답변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설

[그림 5]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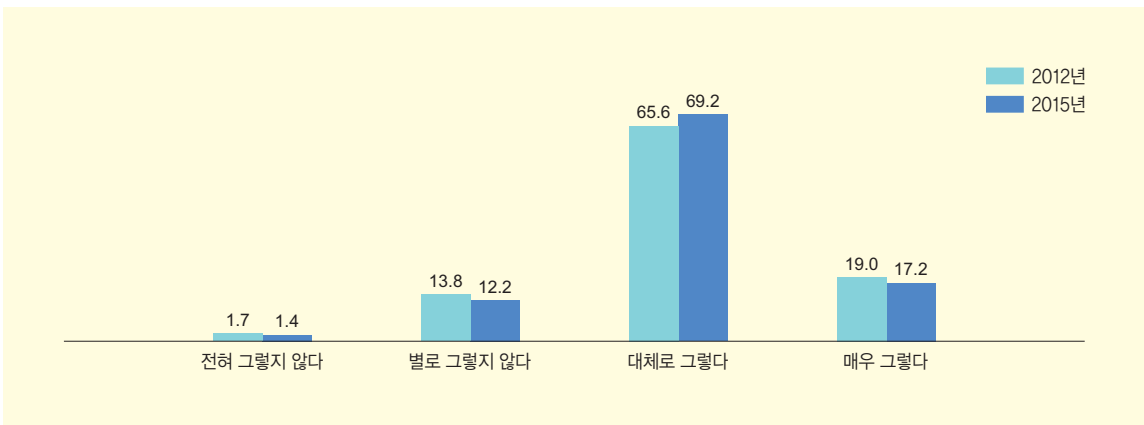
문조사에서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상승한 반면 강한 긍정(“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기술적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은 본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답 결과 지인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긍

정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69.2%, “매우 그렇다” 17.2%)은 86.4%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과거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질문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술적 사회규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최근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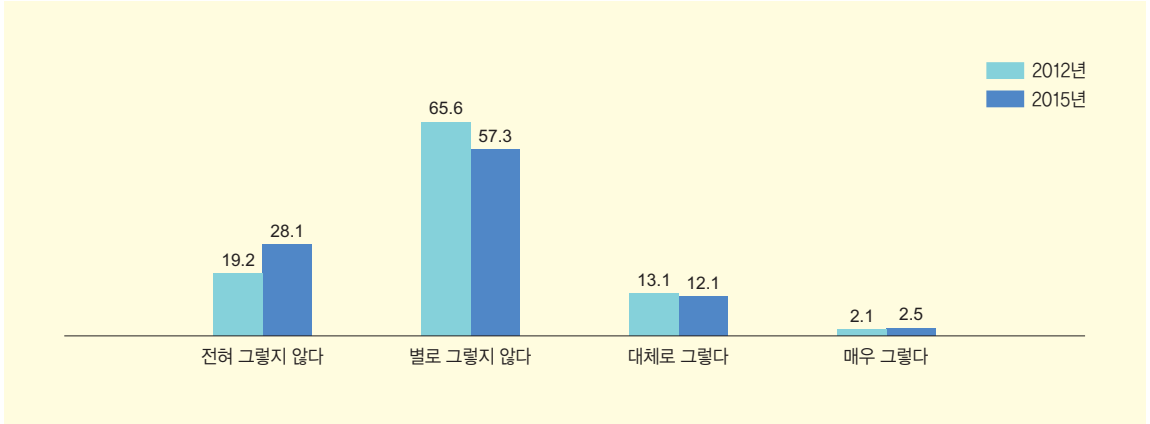
[그림 6] 지인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7]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단위: %)



한편, 명령적 사회규범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답 결과 긍정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12.1%, “매우 그렇다” 2.5%)은 14.6%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28.1%, “별로 그렇지 않다” 57.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여 명령적 사회규범은 최근 퇴보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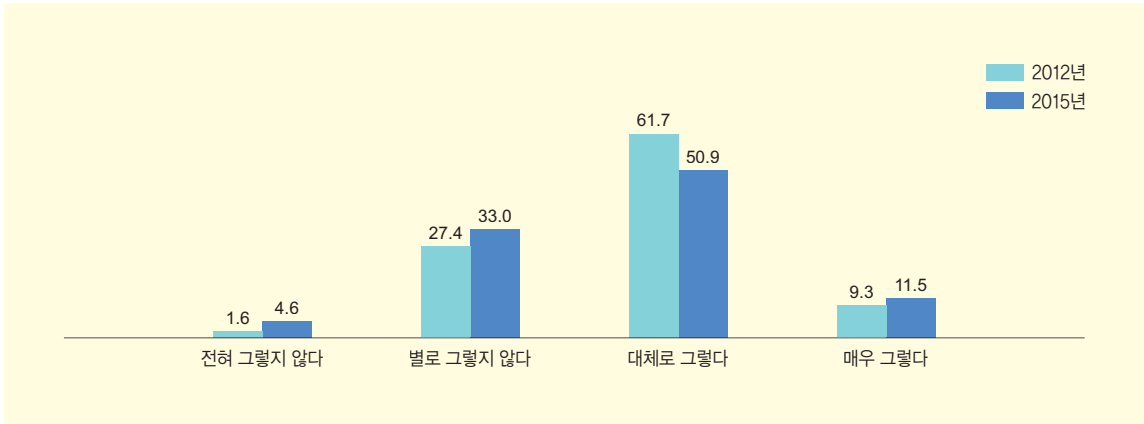
명령적 사회규범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답 결과 긍정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50.9%, “매우 그렇다” 11.5%)이 62.4%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4.6%, “별로 그렇지 않다” 33%)의 응답비율 37.6%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과거 설

“
**명령적 사회규범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결과를 볼 때,
 최근 명령적 사회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퇴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문조사에서는 동 질문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9.0%였기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사회규범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결과를 볼 때, 최근 명령적 사회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퇴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8]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때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단위: %)



4. 조세형평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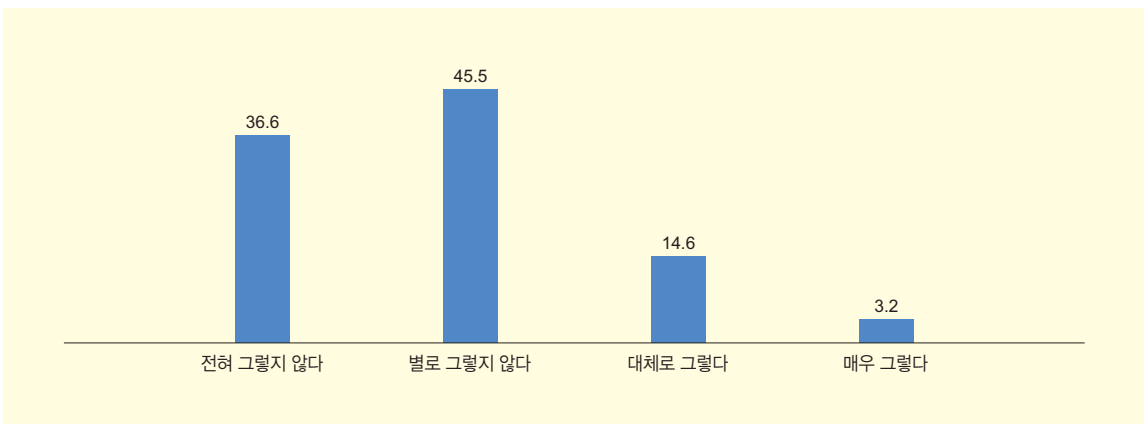
조세형평도 지표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 관련 질문을 통해 생성되었다.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질문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대체로 그렇다" 14.6%, "매우 그

렇다" 3.2%)로 나타난 반면, 82.1%의 응답자는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조세체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설문 조사에서는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으로 응답한 비율은 9.9%,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응답한 비율은 4.4%로 수직적 형평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3%로 파악되었다. 질문하는

[그림 9] 수직적 형평성

(단위: %)



방식이 변경되어 과거 설문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조세체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질문으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의 세금부담 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수직적 형평성과 비교할 때 수평적 형평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 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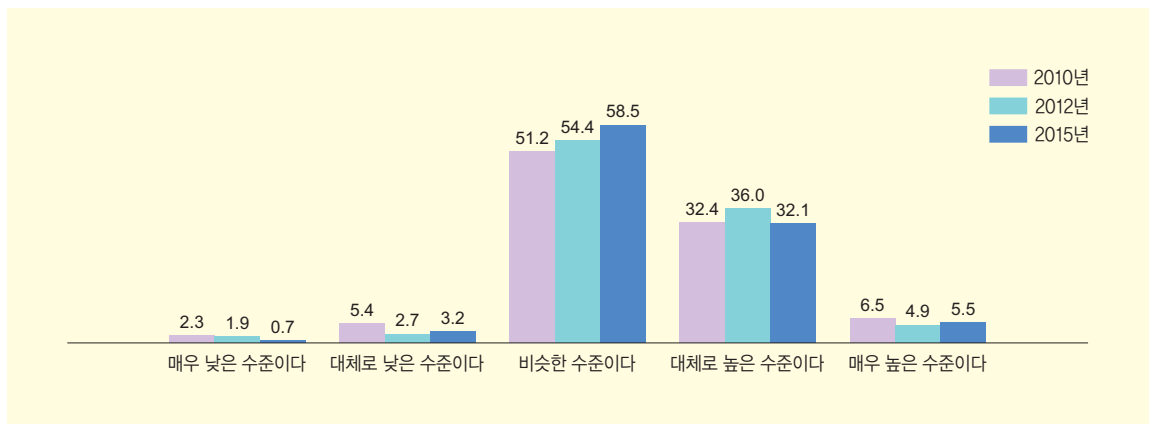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떤가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응답 결과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6%, “매우 높은 수준이다” 0.2%)으로 응답한 비율은 3.8%인 반면, 낮은 수준(“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48.7%, “매우 낮은 수준이다” 21.2%)은 69.9%이었고,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 시

“
조세형평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소폭 개선된 반면,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상승하여 국민들이 인식하는 교환의 형평성은 최근 퇴보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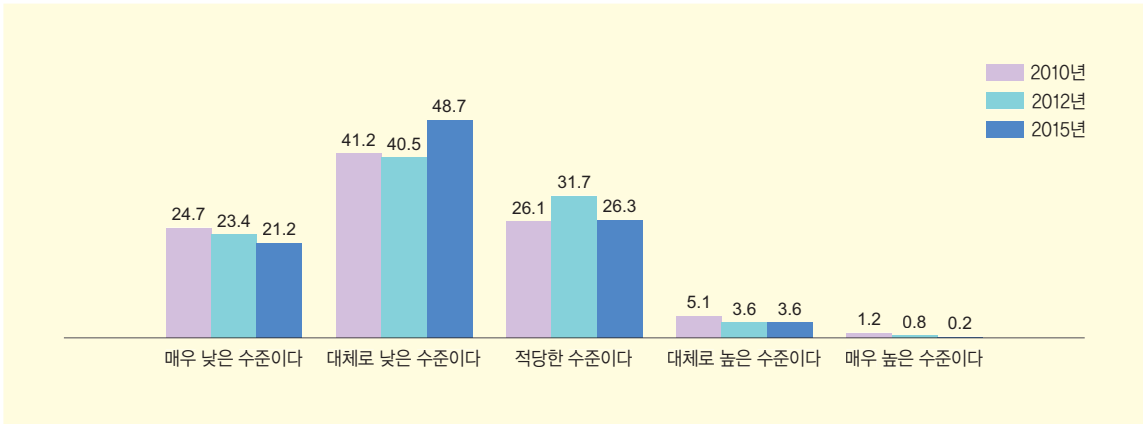
[그림 10] 수평적 형평성

(단위: %)



[그림 11] 교환의 형평성

(단위: %)



조세형평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소폭 개선된 반면,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조세이해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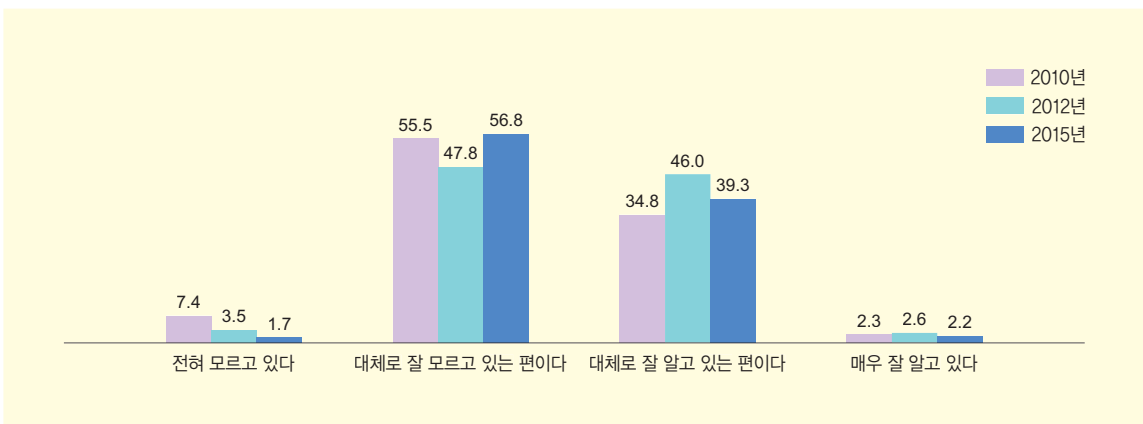
조세이해도 지표는 조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

도 및 객관적인 지식 수준을 묻는 질문들로 형성되었다.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관련 질문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세금에 대해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56.8%, “전혀 모르고 있다” 1.7%)이 58.5%로 나타나 세금에 대해 잘 안다는 긍정적 답변(“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9.3%,

[그림 12] 세금 인지 정도

(단위: %)



“매우 잘 알고 있다” 2.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2년도 조사에 비해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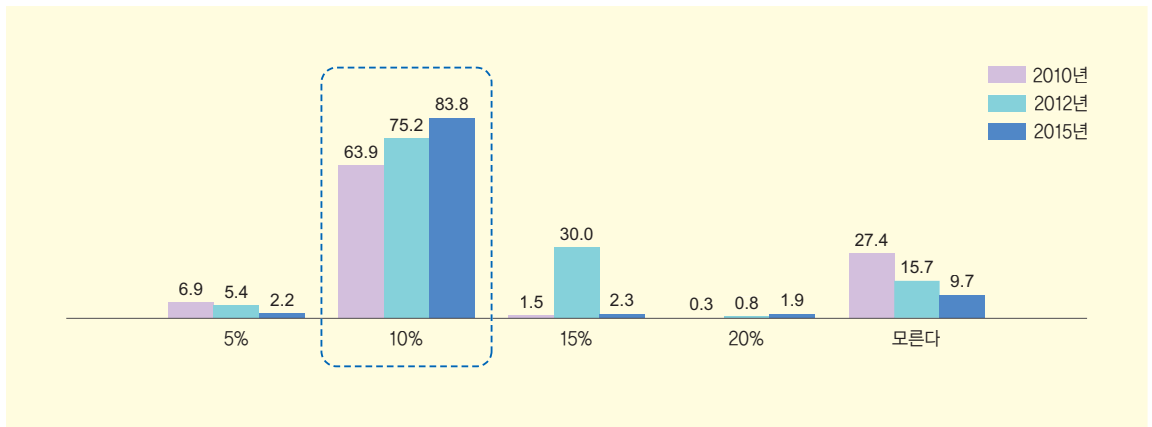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8%가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

식하는 비율은 아래의 [그림 13]이 보여주듯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에 관한 두 번째 질문으로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동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의 50.6%만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선택하여 절반 정도만 현금영수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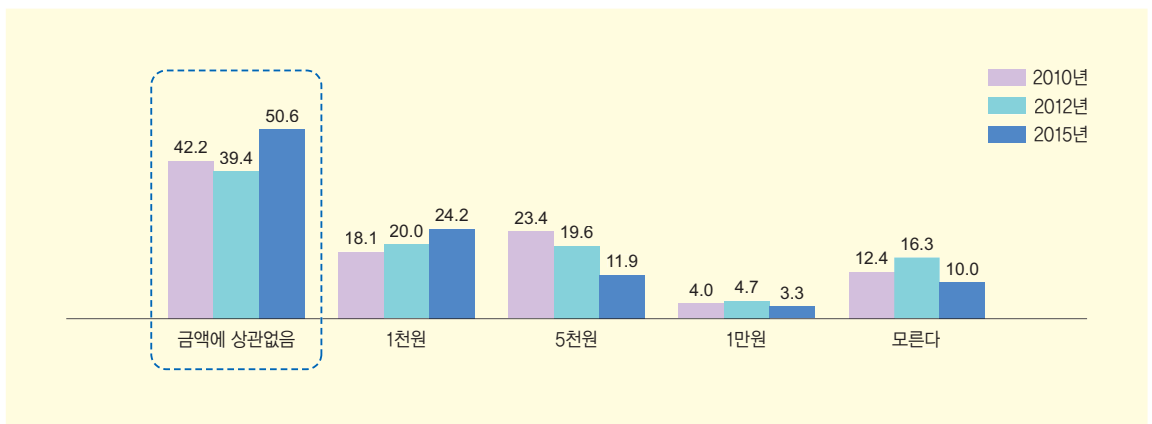
[그림 13]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단위: %)



[그림 14]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단위: %)



“
**설문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탈세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

었다. 그럼에도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이해도 지표에 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또는 지식은 과거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 스스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조세에 대한 이해 수준은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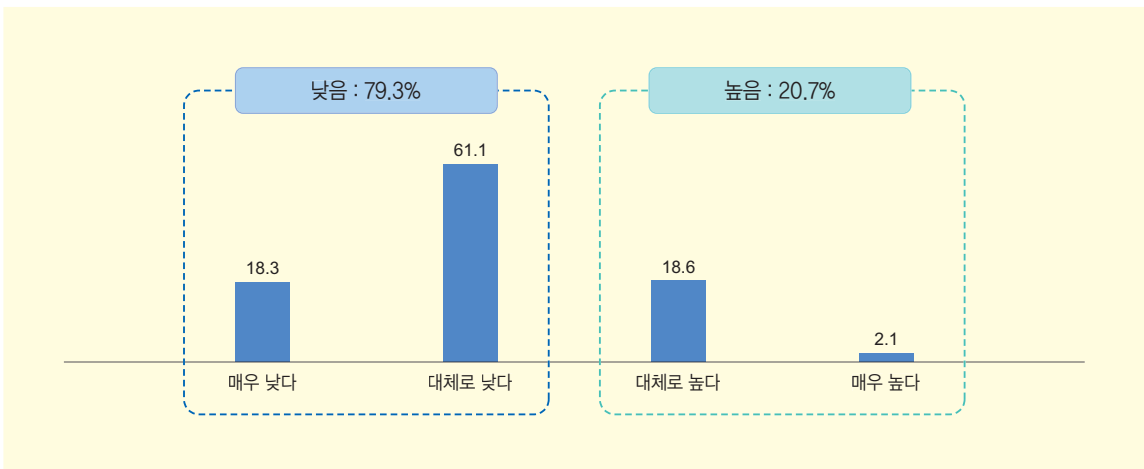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질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기적인 탈세 발각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소득세

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 등의 처벌 수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동 질문에 대하여 처벌 수준이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8.2%,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37.8%)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0%나 되어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23%,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3%)일 것이라는 응답비율(26.1%)이나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탈세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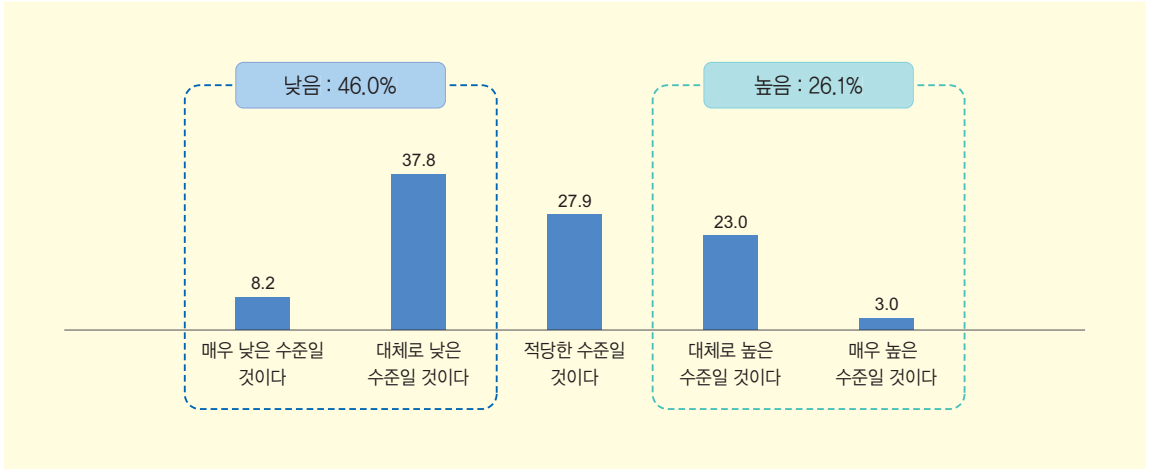
[그림 15]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단위: %)



[그림 16] 탈세 적발시 벌금 등 처벌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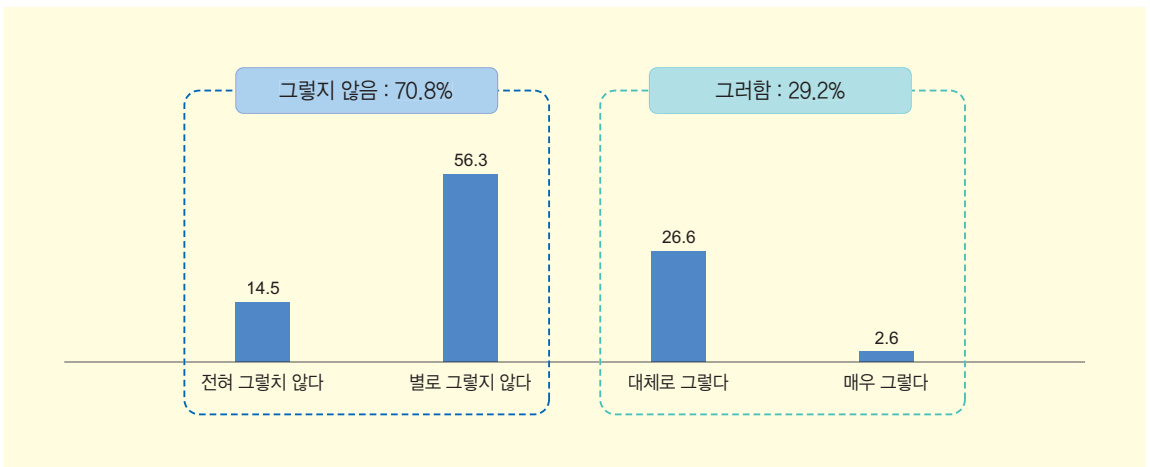


한편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0.8%)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5%, “별로 그렇지 않다” 56.3%)고 응답하였다. 과세관청이 더 엄격

하게 대응하고 있다(“대체로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2.6%)는 긍정적인 답변은 29.2%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17]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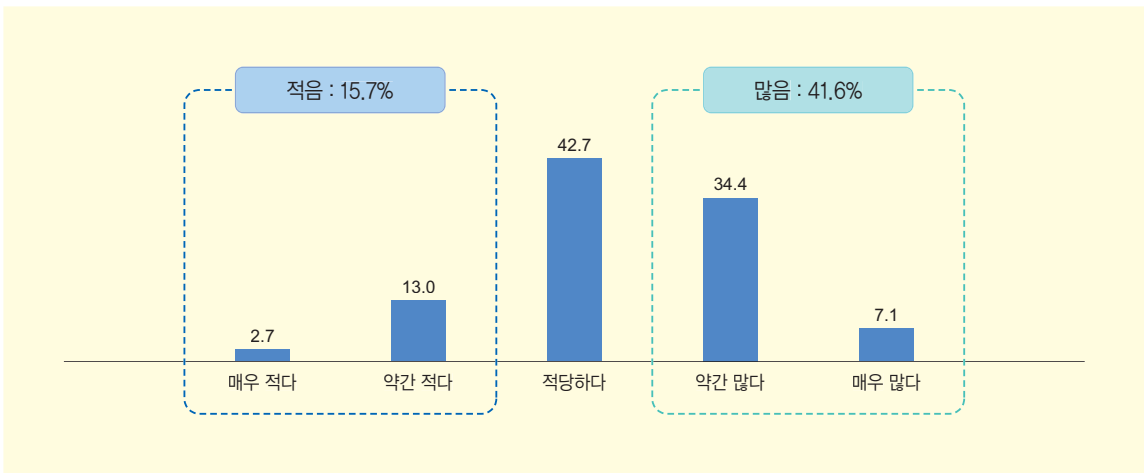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인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많다(“약간 많다” 34.3%, “매우 많다” 7.1%)는 응답도 41.5%에 달하였다. 반면, 납세 협력을 위해 투입

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적다(“매우 적다” 2.7%, “약간 적다” 13%)는 응답비율은 15.7%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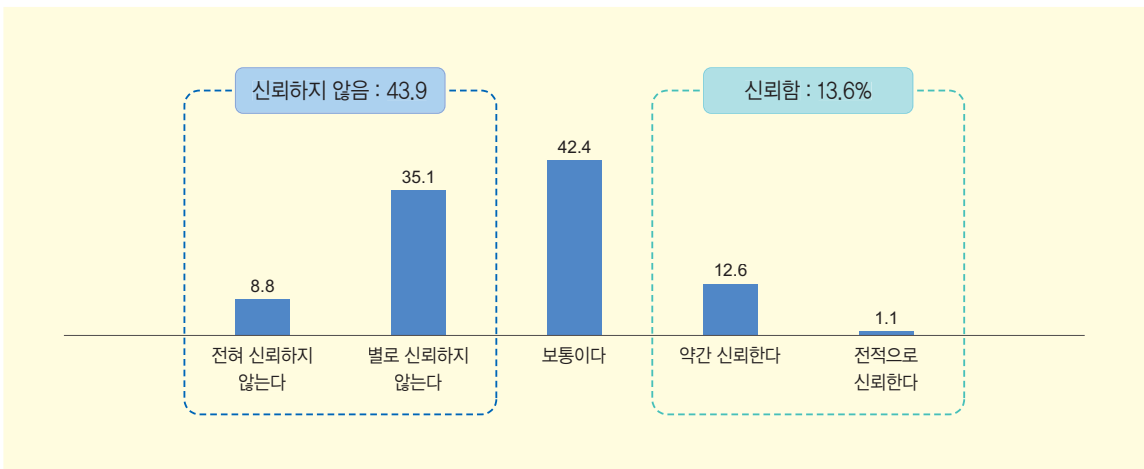
[그림 18]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19]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단위: %)



35.1%)는 응답이 43.9%였지만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 12.6%, “전적으로 신뢰한다” 1.1%)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⁴⁾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설문항목으로부터 생성되었다. 이때 각 설문항목의 응답결과를 긍정적 답변(=1)과 부정적 답변(=0)으로 전환한 후 그 결과를 결합함에 따라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순서형 변수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모형 A)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행위 변수에 대하여 개인적 규범,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심리적인 요인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⁵⁾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적 규범 변수 및 사회적 규범 변수는 1% 유의수준 아래서 납세순응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형평성 변수, 조세이해도 변수, 국세청 신뢰 변수는 5% 유의수준 아래서 납세순응행위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주관적인 조세이해도,
 국세청 신뢰 변수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과 같은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 이외에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학력, 소득수준 등도 비경제인 요인들을 통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두 번째 모형(모형 B)에서는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관련 변수들,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배우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자영업자 여부, 학력 및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주관적인 조세이해도, 국세청 신뢰 변수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조세형평성 변

4) 종속변수는 실제 현실에서의 납세순응행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제3자 정보를 통한 소득의 노출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한 납세순응행위를 배제하고 있다.

5) 각 변수들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납세순응행위 변수와 개인적 규범 변수는 관련된 두 질문의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들의 평균값, 조세형평성 변수는 3가지 형평성 질문의 평균값, 사회적 규범 변수는 기술적 규범 관련 질문들 및 명령적 규범 관련 질문들의 평균값, 조세이해도 변수는 주관적 이해도 관련 질문의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 국세청 신뢰 변수는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생성하였다. 여기서 조세이해도 변수에 대해 주관적인 지식 수준에 관한 응답결과만을 사용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 수준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서 응답 결과의 변동성(variation)이 낮기 때문이다.

수는 부호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세 번째 모형(모형 C)처럼 조세형평성 변수를 교환의 형평성만을 나타내는 변수로 대체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 외에 모형 B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자영업자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납세순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A	모형 B	모형 C
비경제적 요인	개인적 규범	0.0168***	0.0173***	0.0173***
		(0.0011)	(0.0013)	(0.0013)
	사회적 규범	0.0058***	0.0051***	0.0052***
		(0.0017)	(0.0020)	(0.0020)
	조세형평성	0.0040**	0.0034	0.4184**
	(0.0020)	(0.0024)	(0.1896)	
조세이해도	0.2070**	0.2058**	0.2121**	
	(0.0842)	(0.1004)	(0.1003)	
국세청 신뢰(신뢰=1)	0.1827**	0.2088*	0.1956*	
	(0.0888)	(0.1115)	(0.1118)	
제도적 ·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높다=1)		-0.0646	-0.0808
			(0.1318)	(0.1343)
	처벌강도	보통	0.2049	0.2103*
			(0.1262)	(0.1257)
	높음		-0.0928	-0.0905
			(0.1284)	(0.1284)
납세협력부담	보통	0.0428	0.0534	
		(0.1552)	(0.1547)	
높음		0.2142	0.2249	
		(0.1596)	(0.1591)	

6)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제3차(고용주) 정보를 통해 과세관청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이 높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보다도 임금근로자에서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는 소득이 존재할 때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금환인 제안에 대해 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적인 상황 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자영업자 더미변수와 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표 3〉의 계속

구분		모형 A	모형 B	모형 C	
외생변수	성별(남성=1)		0.0792 (0.1034)	0.0829 (0.1032)	
	배우자 여부(있음=1)		-0.3072** (0.1267)	-0.3142** (0.1260)	
	연령	30대	-0.1041 (0.1756)	-0.0901 (0.1752)	
		40대	0.1969 (0.1876)	0.2033 (0.1872)	
		50대	-0.1005 (0.2147)	-0.1023 (0.2139)	
		60대	0.1338 (0.2984)	0.1574 (0.2959)	
	자영업자 여부(자영업자=1)		0.2563** (0.1107)	0.2576** (0.1107)	
	지역(수도권=1)		-0.0821 (0.1121)	-0.0811 (0.1126)	
	교육수준(대졸이상=1)		-0.1515 (0.1275)	-0.1404 (0.1279)	
	소득수준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0.0966 (0.1126)	-0.1011 (0.1125)	
		7천만원 이상	-0.0624 (0.1774)	-0.0747 (0.1783)	
	이념성향	중립(4~6)	-0.0893 (0.1429)	-0.0814 (0.1446)	
		진보(7~10)	0.0425 (0.1625)	0.0394 (0.1642)	
	Pseudo R2		0.0743	0.0842	0.0852
	분석 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V. 결론

금번 설문조사와 과거의 설문조사 간의 결과 비교 시, 납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수준 및 개인적 규범·사회적 규범·교환의 형평성·주관적 조세 이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2010년 또는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인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조세이해도, 교환의 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자세를 나타내는 개인적 규범과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의 납세순응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와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강제함과 동시에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⁷⁾ 이런 노력의 결과는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켜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명호·정재호,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2011. 3.
- 백용기·박명호, 「정부신뢰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016년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 이혜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제198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p. 22-37.
- OECD,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yers’ Compliance Behaviour,” 2010.

7)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은 세금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윤리의식의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 탈세·체납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응,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 및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16~2060 장기재정전망



장기시계의 재정전망 필요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해서는 장기 시계의 종합적인 재정전망 필요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할 것을 규정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개년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할 것을 규정

(수입 측면) 최근 들어 국세수입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 변화로 세수의 경상 GDP 탄력성이 하락한 상태

(지출 측면) 2014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향후 인구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지출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재정총량 측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지속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이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인구고령화와 재정) 상대적으로 빠른 인구고령화는 현재의 재정여건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및 재정상황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2014년 말부터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이하 협의회)중심으로 추진



* 민간위원 8명, 8개 부처 국장 등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장기재정전망 전망 절차 및 전망 내용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인구, 거시경제 변수 변화를 반영하여 2060년까지의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 (2016~2019년은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

1 전망의 전제 도출 (인구, 성장률 등)

한국개발연구원 (KDI), 통계청 등

2 추세적 변화에 영향 받는 부분 추계 (의무지출, 수입 등)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위원회 및 조세재정연구원

3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 결정 (재량적 지출)

2개 시나리오 : 경상성장률로 증가 또는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

4 장기재정전망

- ▶ 국가채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반재정부분) → 재정수지, 국가채무 추계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 기금(계정)으로 운영되는 부분(사회보험부분) → 각 사회보험별 지속가능성 진단



5 민감도 분석 : 기본 시나리오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주 : 일반재정부분은 국제 등 일반재원으로 지출하는 부분으로 국가채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말함

<p>인구 population</p> <p>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활용 (2011년, 중위 기준)</p>	<p>통계청에서는 2100년까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 가정에 근거하여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s method)에 의해 성·연령별 인구수를 산출</p> <p>총인구 5,216 만명 '30 → 4,396 만명 '60</p> <p>생산가능인구 3,704 만명 '16 → 2,187 만명 '60</p> <p>급속한 인구고령화로 '18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14%), '26년에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고, '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 도달할 것으로 전망</p>	<p>거시경제 macroeconomy</p> <p>한국개발연구원 생산함수 추정법 활용</p>	<p>KDI에서 생산함수법 등을 활용하여 전망 (2014년 12월)</p> <p>경제성장률 3.6% '16~'20 → 1.1% '50~'60</p> <p>명목금리 4.6% '16~'20 → 3.7% '50~'60</p> <p>물가상승률 2.5% '16~'20 → 2.0% '50~'60</p> <p>추계결과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60년 0.9% 수준으로 전망, 명목금리나 물가상승률 변수도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p>
---	--	--	---

01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총수입 전망)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자본수입 등으로 나누어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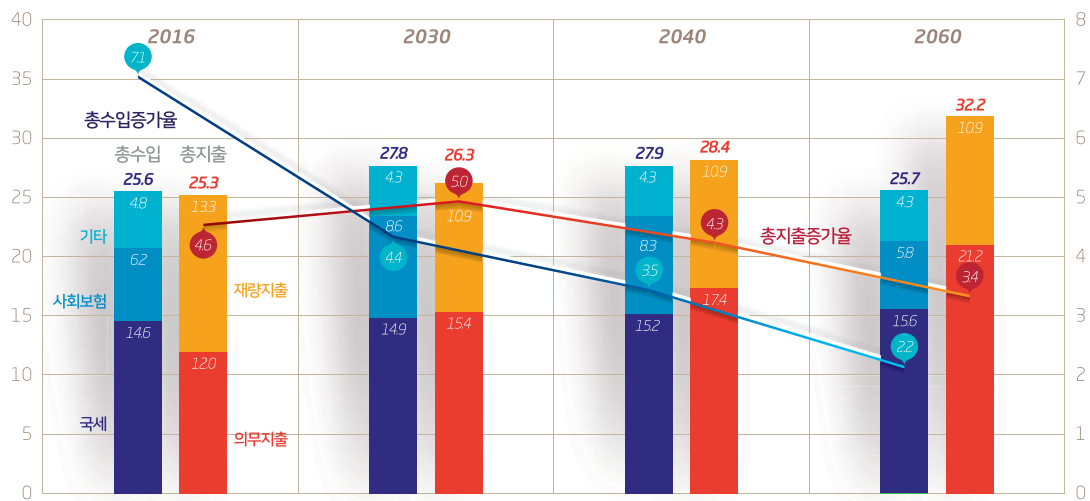
- **(국세)** 9개 주요세목은 세목별로 구축된 장기전망모형을 통해 추계하고, 나머지 5개 세목 및 과년도 수입은 GDP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소관기관 기여금 추계결과를 활용
- **(세외·자본수입 등)** 국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서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총지출 전망)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의무지출)** 8개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기타 복지지출 등 주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을 선별한 후 개별 기관에서 자체 추계모형을 통해 전망하고, 지방이전,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을 합산
- **(재량지출)**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좌우되는 재량지출은 기준선 전망에서는 GDP의 일정 비율로 가정하며, 기타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재량지출 추이가 가정으로 제시

총수입, 총지출 (GDP 대비 %)

증가율(%)



총수입 전망 결과

2016년 GDP 대비 25.6%에서 2040년대 초까지 28% 수준으로 소폭 상승 후, 사회보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60년 25.7%로 하락

국세수입 GDP 대비 14%대에서 2060년까지 15%대로 소폭 상승

사회보험수입 국민연금 기여금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2030년대 초까지 상승 후 증가율이 하락

기타수입 2015~2019년 중기계획상 2019년 GDP 대비 비중(4.3%) 유지 전제

총지출 전망 결과

2016년 GDP 대비 25.3%에서 2060년 32.2%로 상승

의무지출 2016년 GDP 대비 12.0%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2060년 21.2%로 상승
- 연금·의료 지출(GDP 대비 %): 2016년 3.6% → 2060년 11.3%

재량지출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경우, 2016년 GDP 대비 13.3%에서 2019년 이후 2060년까지 10.9% 수준 유지 (중기계획상 2019년 재량지출 수준)

* 의무·재량지출 비중 변화: 2016년 47:53 → 2060년 66:34

02

국가채무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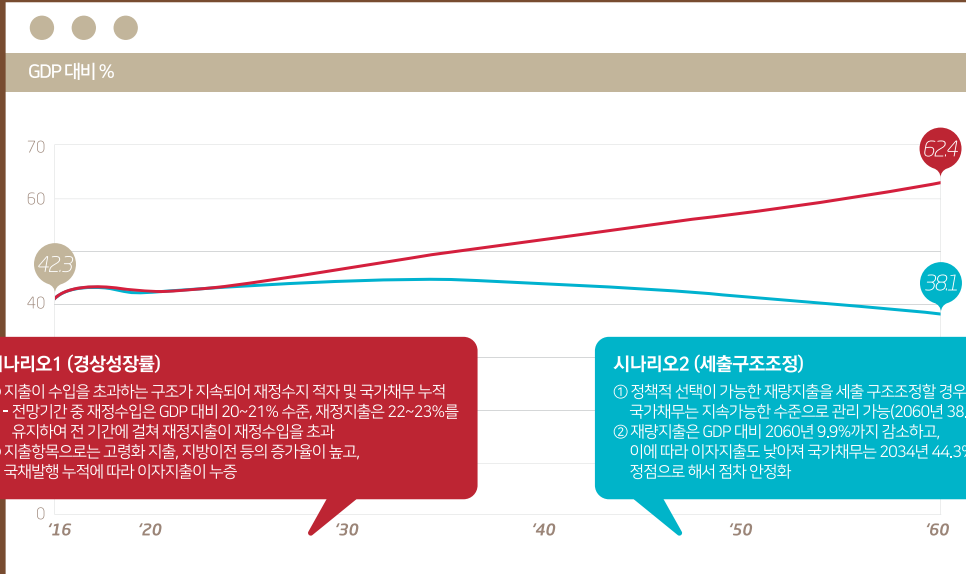
— 시나리오1 (경상성장률)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증가하며 2060년 GDP 대비 62.4%에 도달 전망

— 시나리오2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1 전망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세출구조조정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GDP 대비 38.1%로 하락 전망

10%삭감
2020년 자연증가분 = 10조원
▶ 삭감분 = 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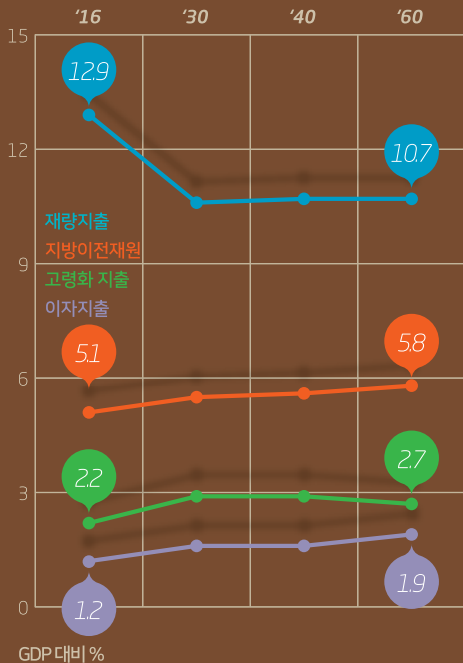
시나리오1 (경상성장률)

- 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
- 전망기간 중 재정수입은 GDP 대비 20~21% 수준, 재정지출은 22~23%를 유지하여 전 기간에 걸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
- ② 지출항목으로는 고령화 지출, 지방이전 등의 증가율이 높고, 국제발행 누적에 따라 이자지출이 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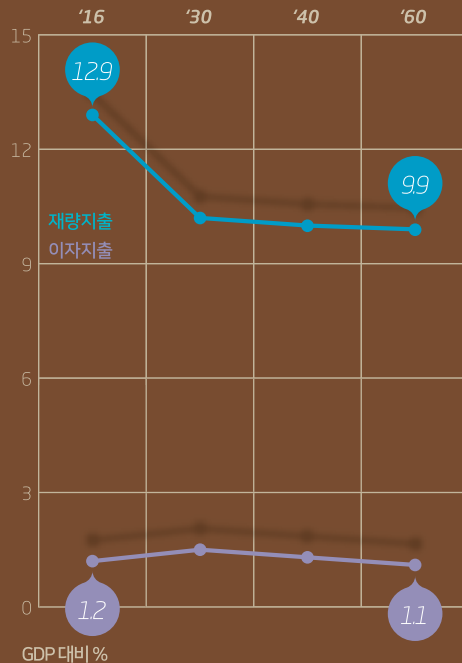
시나리오2 (세출구조조정)

- ①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세출 구조조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2060년 38.1%)
- ② 재량지출은 GDP 대비 2060년 9.9%까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자지출도 낮아져 국가채무는 2034년 44.3%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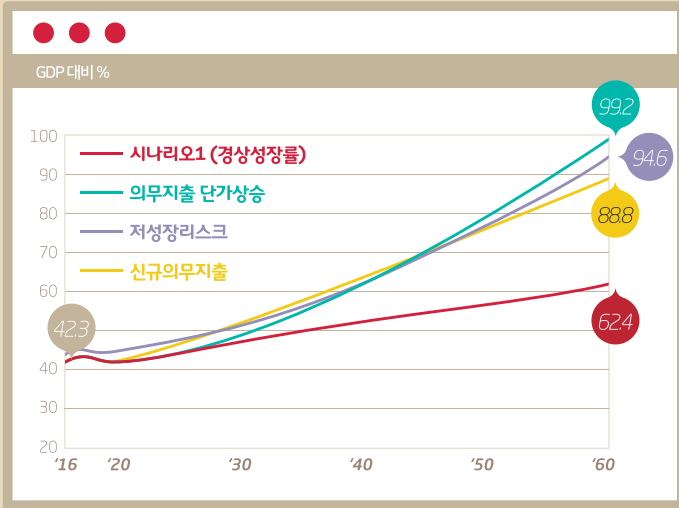
일반재정부문의 주요 지출항목 전망 시나리오 1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재량지출 및 이자지출 추이 시나리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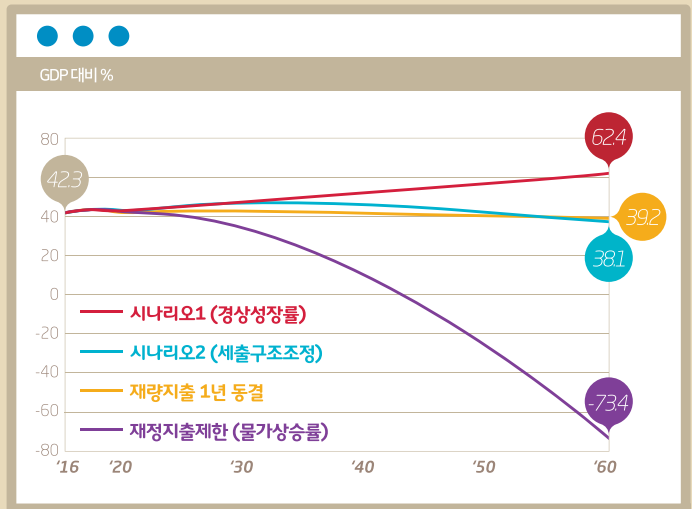


03 민감도 분석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

- 의무지출 단가상승 99.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매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인상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시나리오1 대비 36.8%p 증가
- 저성장 리스크 94.6%** 경제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시나리오1 대비 32.2%p 증가
- 신규 의무지출 도입 88.8%** 자원 조달 방안 없이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 대비 26.5%p 증가



재정 건전성 개선 요인

- 재량지출 1년 동결 39.2%** 2020년 재량지출 수준을 2019년 수준으로 1년간 동결 후, 이후 기간은 경상성장률로 증가시키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 가능
- 재정지출 제한 -73.4%**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CPI) 수준(연평균2.2%)으로 제한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Δ 73.4%로 순채권 발생 가능
-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률 제고**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완화하고, 미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경우,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전망
※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견인효과는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45년부터 가시화될 전망'

04

사회보험분야 전망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보전의 의무가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 분야

사회보장성기금 가운데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험 존재

적자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재정지원 받는 연금 및 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적자보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시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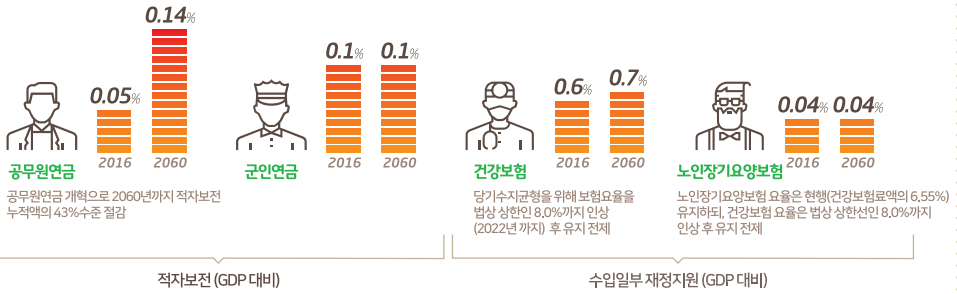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

*사회보장성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보전은 없음



재정지원을 받는 연금 및 보험



05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사회보험분야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긴요



재정준칙 도입

- 재정지출 : 재정지출 증가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 의무지출 : 신규 지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Pay-go 제도 도입 추진



사회보험 개혁

- 현행 부담 · 급여 구조에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등 유지가 곤란
-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연금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택패키지를 검토 ·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지원



인구구조 대응 및 성장을 제고

- 결혼 · 보육 · 교육 등 전과정에서 가족친화적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
- 청년 · 여성 · 노인 경제활동 유도, 인적자본투자 · R&D 지원 등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유도



장기재정전망과

국가채무

국가채무 GDP대비 비율

— 시나리오1 (경상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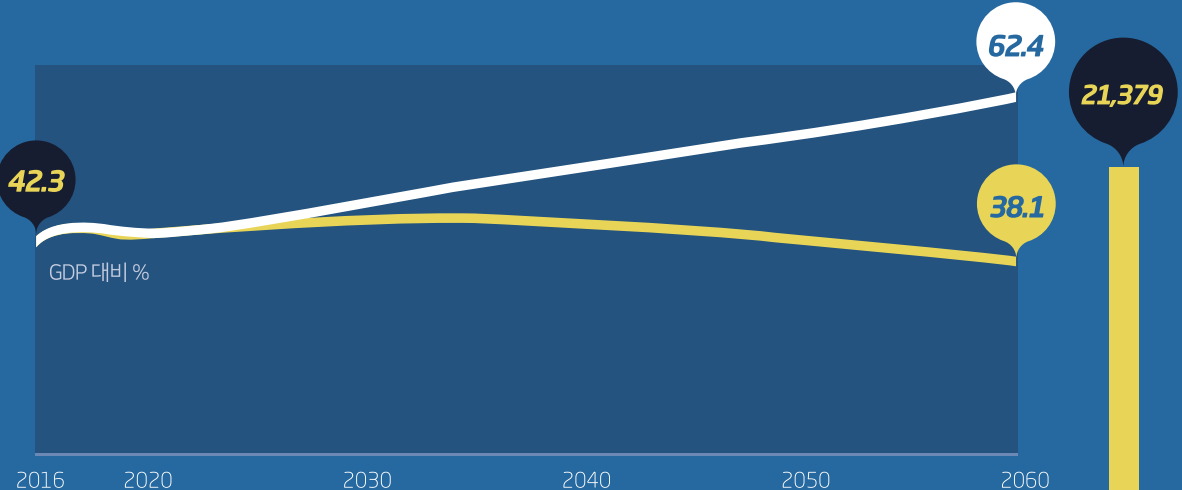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증가하며 2060년 GDP 대비 62.4%에 도달 전망

— 시나리오2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1 전망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세출구조조정,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GDP 대비 38.1%로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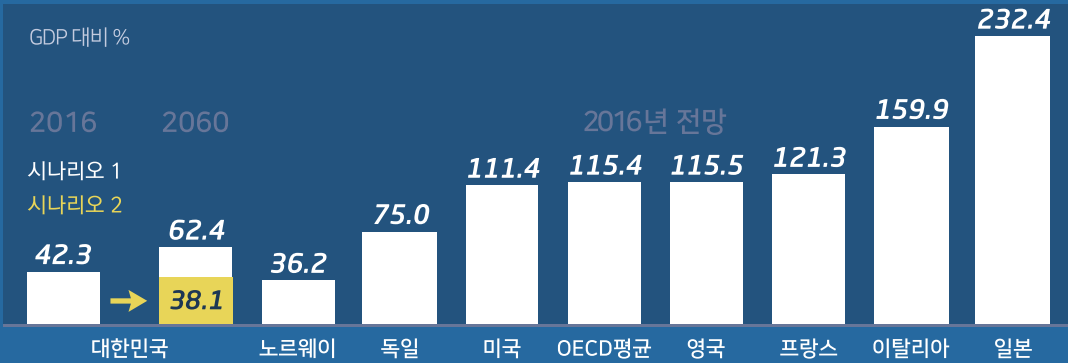
10%삭감
2020년 자연증가분 = 10조원
▶ 삭감분 = 1조원

시나리오 1에서 국가채무 증가 이유



주요국가 국가채무 비율

우리나라 재정을 모범 국가로 평가



※ 주요 국제기구/신용평가사 평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을 세계 최고 수준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으로 평가(2015.06)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의 필요없는 국가로 평가(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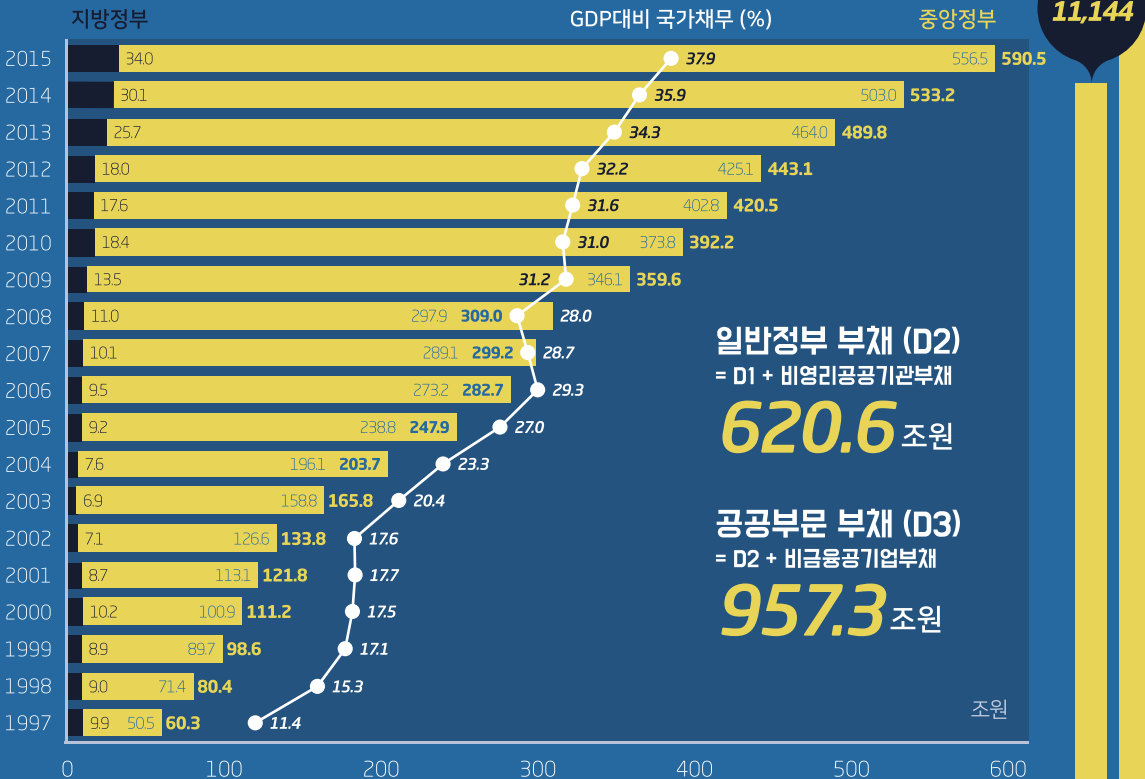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 Moody's(2015.04) S&P(2015.09)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 (D1) **590.5**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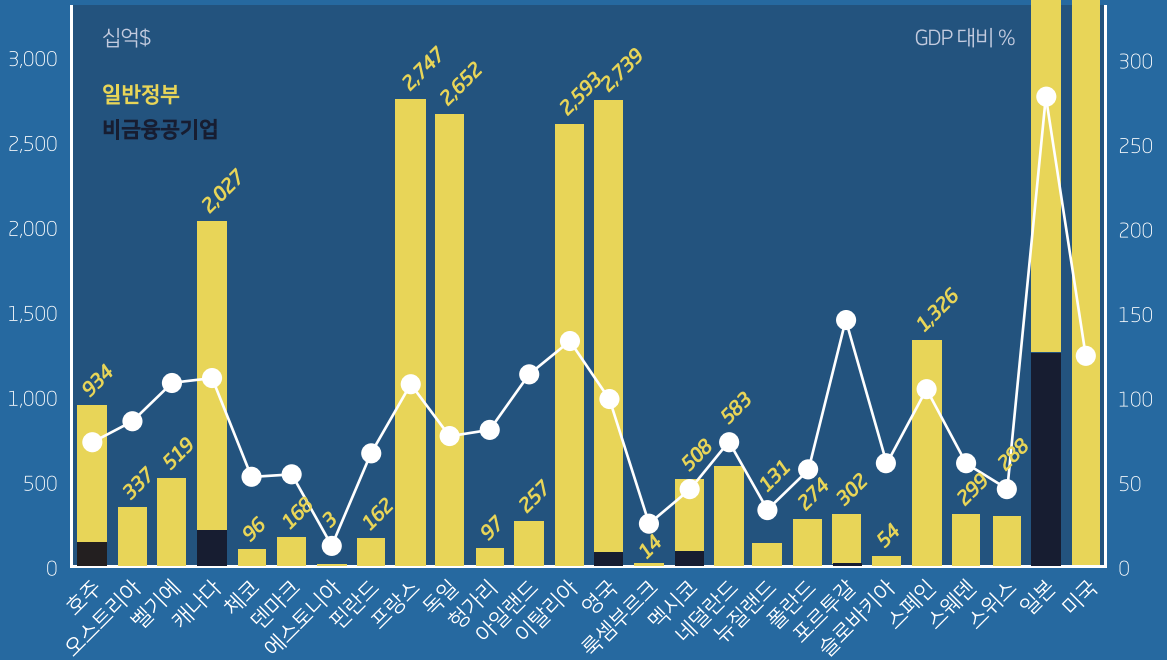
일반정부 부채 (D2)
= D1 + 비영리공공기관부채
620.6 조원

공공부문 부채 (D3)
= D2 + 비금융공기업부채
957.3 조원

조원

OECD 주요 국가의 부채현황('14년 기준)

출처: OECD,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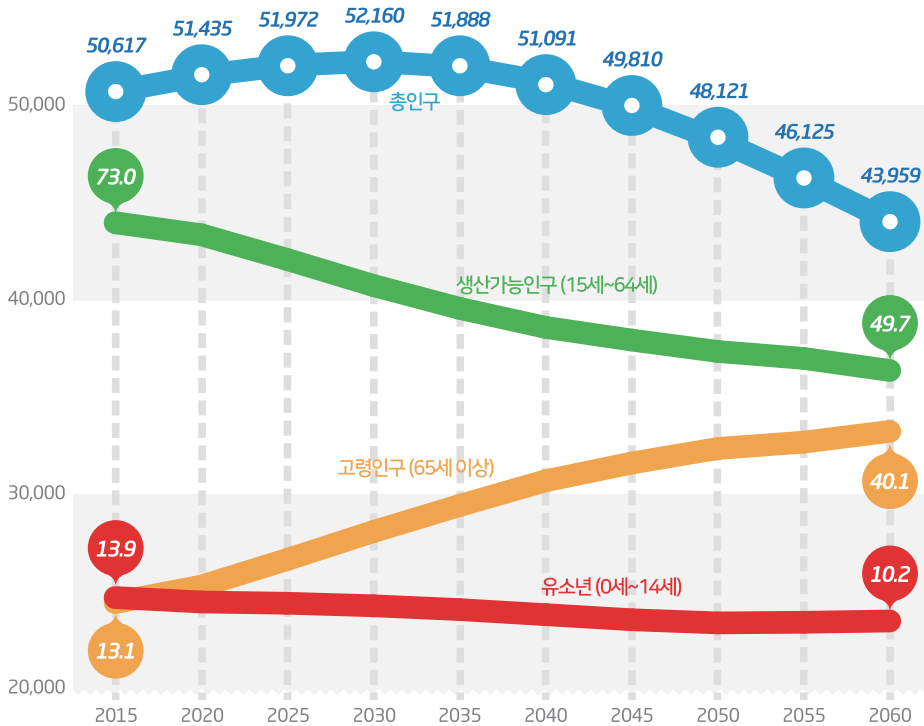
장기재정전망 핵심 주요지표

Long-Term Fiscal Projections
Key indicators

인구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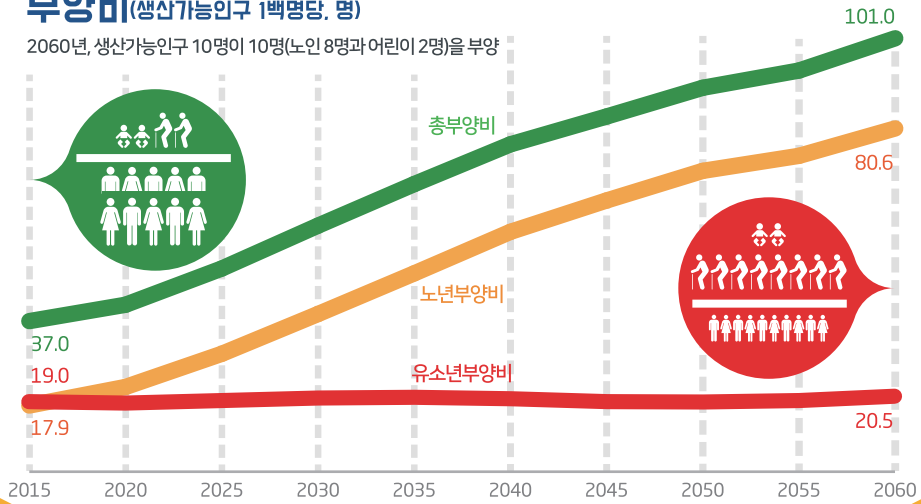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2100년까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 가정에 근거하여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에 의해 성·연령별 인구를 산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인구 전망(천명, %)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명)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



총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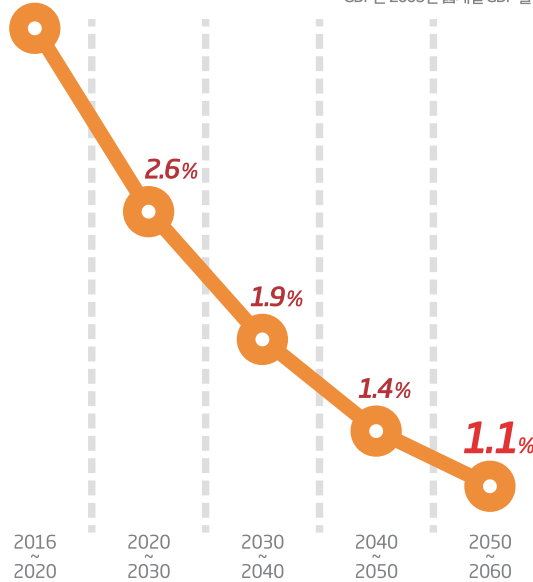
성장률

growth rate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60년 0.9% 수준으로 전망. 명목금리나 물가상승률 변수도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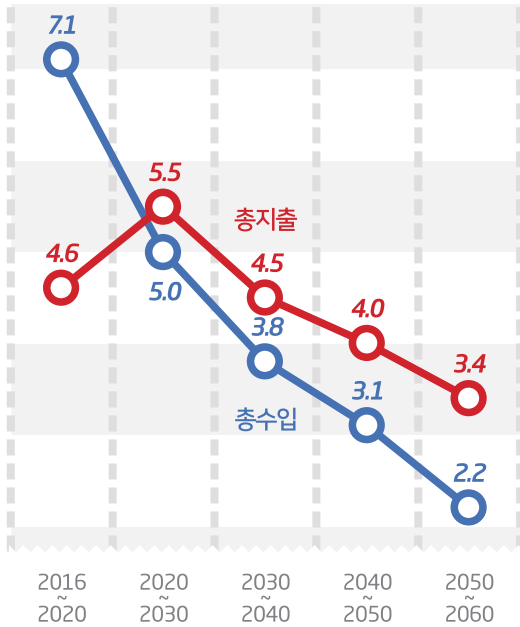
3.6%

GDP는 2005년 환계열 GDP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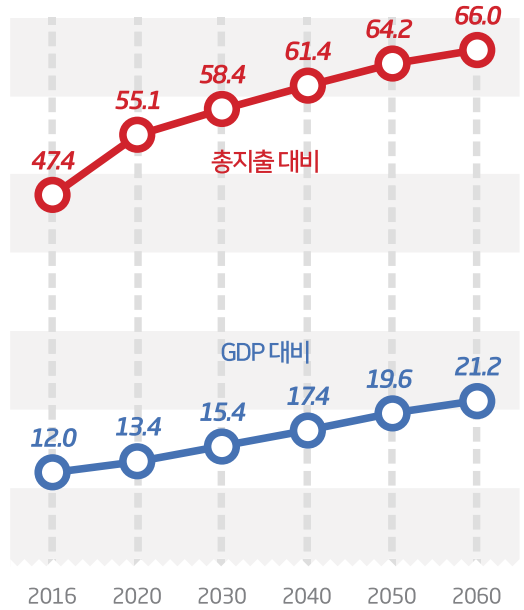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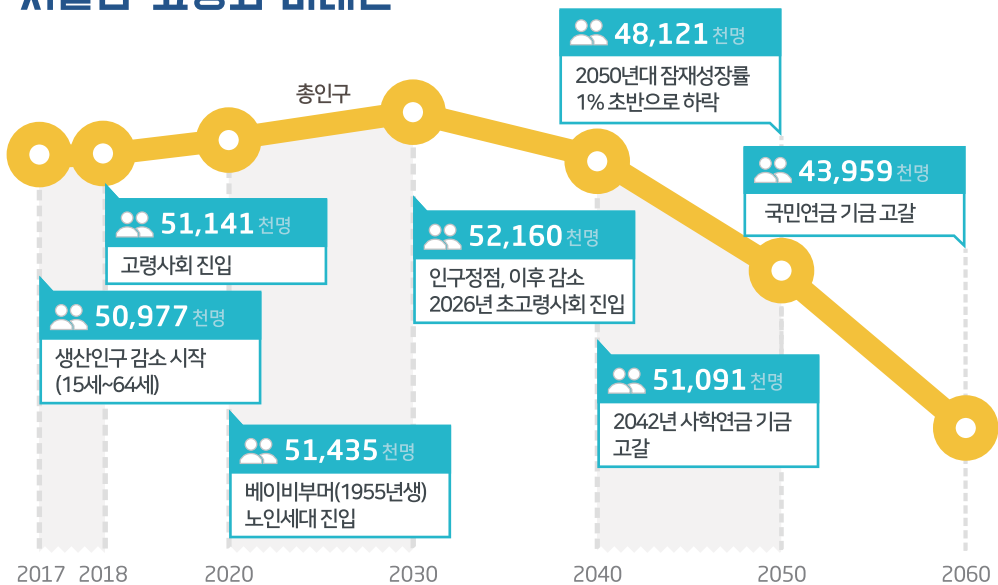


인무지출 비중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기준, %)



저출산·고령화 미래는



| 포커스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 의의
윤병태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장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 의의



윤병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장

I. 구축 배경

2017년 1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1차 개통된다. 1963년 「보조금관리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의 대변화이자,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도입 이후 10년 만의 재정관리 분야의 혁신사례이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자금으로, 복지, 고용, 문화, SOC, 농어촌,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까지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단계까지만 관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불투명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중복·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복지부의 행복e음, 농식품부의 Agrix, 문체부의 기금지원시스템 등 자체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도 상호연계가 없어 보조금 정보가 분산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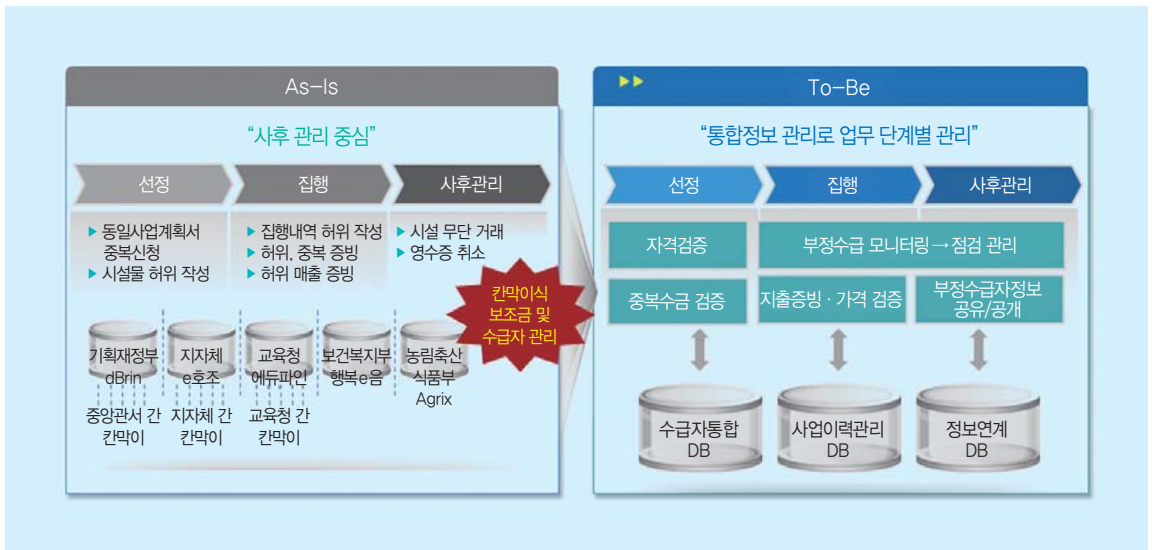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을 수립(15.9.)하고, 추진주체로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15.10.)한 후 총예산 35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II. 주요내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의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보조금의 편성 단계부터 교부, 집행과 정산,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까지, 어느 부처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더라도 보조금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조금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 생애주기(life-cycle)에 대한 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순 관리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의 생애주기별로 시스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①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하고,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를 선정하기 전에 ② 자격검증과 ③ 중복수급 검증을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기 전에 ④ 거래 유효성 검증과 ⑤ 가격 적정성 검증을 하게 되고, 보조금 집행 후에는 중복수급 검증이 다시 이루어지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⑥ 중요재산 사후관리 검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보조금의 누수위험을 탐지하는 ⑦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도록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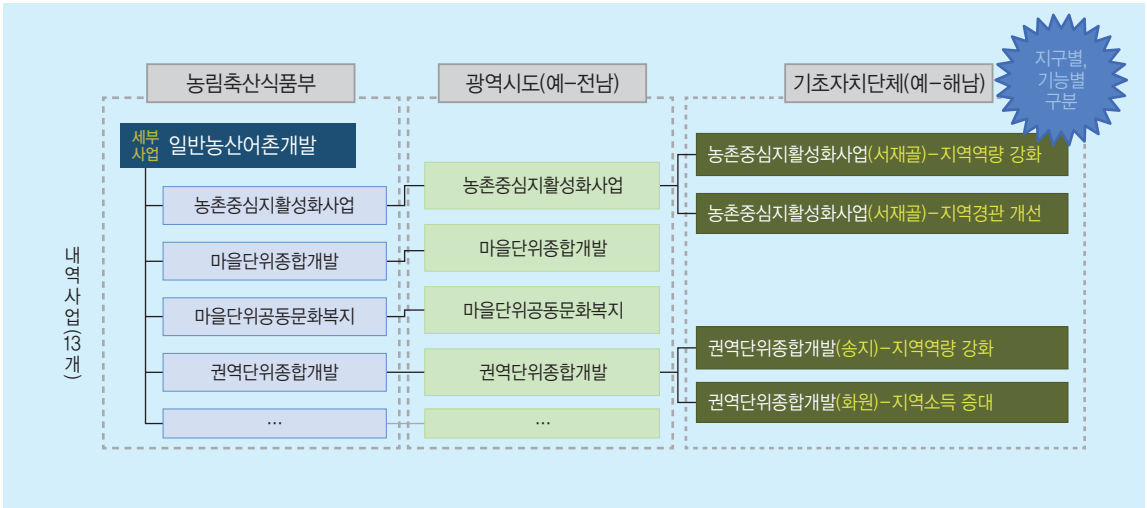
[그림 1] 정보 통합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은 '재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는 정책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나 민간보조사업자를 거쳐 최종 수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끊임없이 관리되고 피드백되어, 국민이 국고보조금 전달과정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고보조금이 어떤 경로로 어떤 분야에 유입되는지, 어떤 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지

등 국가 재정지출의 효과성 분석이 용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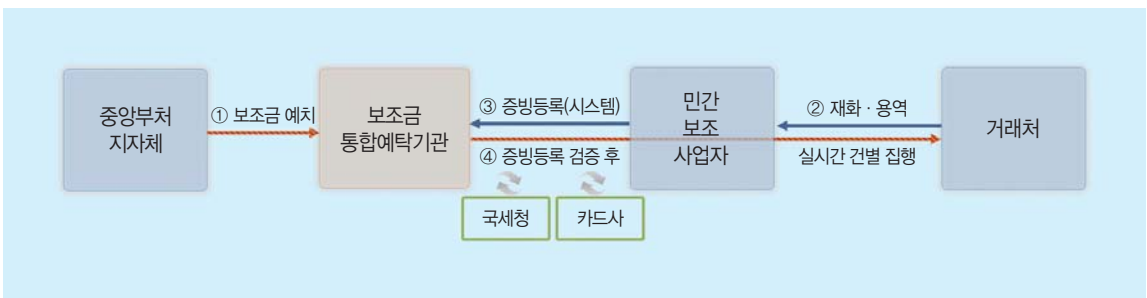
[그림 2] 중앙부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과 지자체 세부사업의 매핑을 통한 보조사업 현황 한눈에 확인




주: 1. 지자체(광역, 기초)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내역사업 명칭 준용
 2. 추가 사업명: 지구, 기능 등 기초단체의 세부사업명 활용

중앙·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별도계좌 통합예치 → 지출 증빙 검증 → 거래처 대금 자동이체 과정을 거침으로써 허위·중복증빙 등 증빙 관련 부정소지와 보조금 유용 여지를 없앴다.

[그림 3] 통합예탁기관을 통한 실시간 집행관리 프로세스



Ⅲ. 기대효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유용 방지 등으로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15.9., BPR & ISP 결과), 기존 수작업 업무가 온라인 처리로 전환되어 업무편의가 높아지고 특히 정산업무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 맞춤형 보조금 정보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부가적으로 보조금 전달경로 파악, 최종 집행정보(비목, 거래처 등) 확보로 재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분석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토론투리포트

■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 본 원고는 2016년 11월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주 제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3:30~17:30
- 장 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 14:00~14:10 개회
 - 14:10~15:40 **제1세션(사파이어 홀)**
 - ▶ 사 회 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I-1.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효과 분석
 - ▶ 발 표 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I-2.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
 - ▶ 발 표 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 ▶ 토 론 자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I-3.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 발 표 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 ▶ 토 론 자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4:10~15:40 **제2세션(루비 홀)**
 - ▶ 사 회 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I-1. 주택연금제도가 노인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 발 표 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II-2.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빈곤의 상태의존성 분석

- ▶ 발표자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토론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I-3. 한국의 표준형 ORANI-CGE 모형의 개발

- ▶ 발표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5:40~16:00 **중간 휴식**

16:00~17:30 **제3세션(사파이어 홀)**

- ▶ 사회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III-1.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이 가계의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 ▶ 발표자 이창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영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 토론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II-2.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발표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토론자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III-3. 자녀양육가구의 소득·소비 유형과 출산장려정책

- ▶ 발표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토론자 이순국 성균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16:00~17:30 **제4세션(루비 홀)**

- ▶ 사회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V-1. 20~30대의 소비지출 패턴 연구

- ▶ 발표자 김나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허윤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 토론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V-2. 가구의료부담 추이 연구: 2008-2014

- ▶ 발표자 이창우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 ▶ 토론자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V-3. 자동차 소유력과 구매데이터 구축 및 활용

- ▶ 발표자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 토론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6:00~17:30 **제5세션: 대학원생 세션(가넷 홀)**

- ▶ 사회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토론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V-1.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발표자 강민조 연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

V-2. 가구의 기부금 가격 탄력성 측정 및 정부정책 시사점

- ▶ 발표자 김영록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주제발표 요약

I-1 주제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효과 분석**

정원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예상과 달리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의 전환이 연금자산 형성이 꼭 필요한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에 충분한 연금저축 납입 유인을 주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들 계층에 특화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형태 변화를 처음으로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 정책적 기여가 있다.



토론요약 1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근거를 제공**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본 논문은 2007-2014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저축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액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반면, 고소득층의 행태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중·저소득층 연금 납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금자산 적립금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논평결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이 연구에서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의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하여야 하는 연금저축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또한 정책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즉, 정책의 주요대상은 중산층일텐데 해당 논문에서는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산층의 행태 변화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12%,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 5,500만원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한



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2014년 가계 경상소득 평균이 3,833만원이었고, 중위값은 3,137만원이었다.

셋째, 본 연구는 DID 모델을 사용하여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으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DID 모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변수와 세액공제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과 관련된 변수가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분석대상의 수와 model evaluation index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세액공제 도입 이후 면세자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연금저축 유인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으나, 경제주체의 면세자 여부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도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이외의 저축행위와의 뚜렷한 대체관계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연구에서 이용한 금융자산변수는 연금저축과 유사한 저축성·보장성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금융시장의 규모 및 활성화 측면에서 연금자산 적립금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연금저축은 취지상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2015년부터 퇴직연금계좌 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금자산 적립금 성장에 부정적 영향은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I-2 주제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대상 항목의 소득계층별 지출액 규모가 2014년부터 이루어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즉, 2013년까지 적용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구별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효과의 크기가 결정되어 고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2014년 이후에 적용된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방식 변경에 따라 고소득계층에서는 특별공제 항목의 개별 지출액들이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동(同)지출액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항목별로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고소득계층을 규정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특별공제 항목의 지출액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이들 계층의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 소득계층과 무관한 2013년과 2014년의 연도별 비교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지출액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부금 지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위험회피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가



계 지출액이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부금 지출액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에 특화된 효과는 없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 걸친 유의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절세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의 지출 의사결정에서는 절세효과와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 기본적인 위험회피 특성, 의료 및 교육서비스 수요의 증가 추세 및 개인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2014년의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고소득계층에 한정되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서 유의적인 지출액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게만 미칠 수 있는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동(同)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적 기부금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계층의 기부금 지출 가구들에도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론요약 1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나타난 지출형태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홍우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4년 다양한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지출행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일 경우, 소득금액에 의거한 한계세율에 따라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일정률(12% 혹은 15%)을 산출세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나 고소득자는 이전보다 적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고소득자들의 공제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출액도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가계 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재정패널의 자료의 경우 응답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공개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의 특별공제 항목의 지출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은 현재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인데,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통해 변할 유인이 있는 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세액공제항목의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항목별로 상당히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특성(교육과정에 있는 자녀의 수, 가계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지출액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장기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어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가계의 특성 및 개인의 기부성향에 의존하는 바가 더욱 크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출항목의 결정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액공제의 효과를 단순히 지출액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세액공제(혹은 가격의 변화)가 지출액에 미치는 민감도, 즉 탄력성의 측면에서 세액공제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본 연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이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세액공제 전환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는 고소득 가구라기보다는 공제항목에 필연적으로 지출이 높은 가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출항목별로 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시점을 중심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고소득자에게만 관측되지 않는 양의 소득 충

격(unobserved positive income shock)이 나타나서 고소득자의 지출액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효과를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소득 대비 지출액 혹은 총소비 대비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임의효과 패널모형(random effect panel model)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로 인한 지출액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인 세액공제 항목의 지출은 대체로 가구의 고유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고정효과 패널모형(fixed effect panel model)을 활용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는 세액공제가 전환된 첫 해인 2014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특별공제항목의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의 축적과 함께 더욱 개선된 연구의 진행을 기대해 본다.



I-3 주제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들의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패널조사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인과효과는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높인 세제개편,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요약

빈곤율의 측정과 실증분석에 대한 보완 필요

송호신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저자는 기부금 관련 조세 제도의 변화(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의 변화)가 개인 및 가구의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저자는 복잡한 조세제도를 충실하게 이해함으로써 실증 분석에 필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하였다. 이는 조세제도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보여준 연구로 사료된다.

저자는 공제제도의 변화가 한계 소득세율 15%를 기준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는 점을 세제상의 특징으로부터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제약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한계세율이 15%보다 낮은 사람(저소득계층)은 제도 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15%보다 높은 사람(고소득계층)은 세부담이 많아진다. 이 두 그룹을 처리 집단(처리집단 1, 처리집단 2)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한계세율이 15%인 사람(중소득계층)은 세부담에 변화가 없으며, 이들은 통제 집단으로 취급된다. 참고로, 중소득 계층의 소득은 1,200만원 초과 그리고 4,600만원 이하이다. 이러한 처리그룹과 통제그룹에 기초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



된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저자가 이용한 모형(specification)은 OLS를 이용하여 교차항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이중차분법과는 외양상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이중차분법은 처치더미 변수와 정책 후 시점을 반영하는 시간더미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저자의 방식은 외양에 있어서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특히, 저자는 그들의 새롭게 정의한 처치그룹 더미 변수의 계수를 평균 처치효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필요한 가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자가 분석에 이용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저소득과 중소득의 경계를 전후로, 그리고 중소득과 고소득의 경계를 전후로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으로 정의한 회귀절단 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분석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저자의 가정에 의하면, 처치(treatment)가 온전히 소득수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II-1 주제

주택연금제도가 노인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 혹은 역모기지제도가 노인층의 빈곤율과 불평등(5분위 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연금 가입 시 빈곤은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더라도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평등은 주택연금 급여액의 차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정패널조사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4억원에서 45천만원, 중위주택 가격 기준 3억원에서 4억원 수준이었다. 반면에 도의 군은 주택평균가격이 5~6천만원 수준이며, 중위주택가격도 4천만원대라는 점에서 서울보다 거의 10배 정도의 낮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 자가의 20%가 주택연금을 수급시 빈곤율은 2010년 51.5%에서 50.9%로 약 0.6%p가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다소 빈곤율 감소폭이 큰 1%p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자의 50%가 주택연금 가입시 20% 가입에 비해서는 빈곤율 감소폭이 두배 정도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가 반영되어 소득분배율이 악화될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분석에서는 노인의 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5분위 배율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규모에 따라 자가의 20%가 가입 시 2010년 8.99배에서 8.61배로 50%가 가입 시는 8.49배로 줄어들었다. 향후 세밀화된 모형설정을 통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토론요약

주택연금 효과를 지역별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어

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 총평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빈곤효과 개선 여부는 어느 소득계층에서 많이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의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주택연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특히, 그 효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세평에서 제시)에서 논문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 세평

첫째,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연금 급여액 산출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연금공사에서 제공하는 종신행 주택연금은 LTV방식으로 산출하지 않고, 주택가격상승률과 할인율을 활용하여 주택의 순가치를 산출한 다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약 70% 수준을 제공하는 LTV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가격상승률보다 할인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여 가입자의 장수화에 따른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제시한 식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해가 어려운데, 특히, 식 (3)에서 식 (4)로 전개 되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분석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표로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또한 분석가정에 의해 산출된 결과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 즉, 표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각주를 활용하여 주요 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빈곤율 개선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주택연금 가입 전후에 따른 상대빈곤선이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빈곤선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론자가 제시한 방법을 포함하여 두 경우를 모두 보여준다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제시한 표들에서 전체 빈도수는 표아래 주(표주)에서 보여주는 것도 분석자료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소득 5분위 배율 변화와 관련하여,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제도상 이들 주택은 비해당이므로 이를 대상자에 포함하였는지 아닌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5분위 배율이 약 8배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 하위의 소득격차가 8배라는 의미이므로 추가



적인 주택연금소득이 8배보다 매우 적거나 크지 않다면 5분위 배율의 값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유인이 커지거나 금액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효과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용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본문에 나오는 ‘종신 정기금’은 ‘종신 연금’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표현하였으면 한다.

또한 5분위배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산출식 혹은 의미를 서술해 줄 필요가 있다.

II-2 주제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빈곤의 상태의존성 분석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임병인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가구 빈곤을 측정 및 연계하여 가구의 빈곤상태가 가구 지닌 본래의 특성 혹은 유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인지 동태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8차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첫째, 현재의 빈곤 상태는 가구가 지닌 본래의 특성보다 과거의 빈곤경험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되며, 둘째, 정태적 모형을 활용하거나 동태적 모형 중 초기조건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 모형의 경우 추정결과에 편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모형을 통해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완충자산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요약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빈곤의 상태의존성 분석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빈곤의 상태의존성에 대한 실증 논문이다. 상태의존성이란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지칭한다. 반면, 상태의존성의 반대로서 개인의 (미관측)이질성을 들 수 있다. 이질성이란 빈곤이 개인의 타입(type) 때문에 기인한 것이며, 빈곤이 지속되더라도 과거의 경험과는 무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Heckman (AER, 1991)의 “Identifying the Hand of Past: Distinguishing State Dependence from Heterogeneity”에서도 잘 지적되어 있다.

실증 분석에서 두 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모형이 아래와 같은 선형모형이라고 해보자.

$$(1) y_{i,t}^* = \gamma y_{i,t-1}^* + x'_{i,t} \beta + \alpha_i + u_{i,t}$$

여기에서 $y_{i,t}^*$ 는 빈곤을 결정짓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이라고 해보자. α_i 는 개인의 이질성을 결정짓는 타입이라고 해보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 $y_{i,t}^*$ 가 연구자에게 관측된다고 가정해보자. 위의 식(1)은 동적 패널 모형으로서 일반적인 차분 혹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도구변수들을 이용한 적률조건(moment conditions)으로부터 모수들을 추정하게 된다. $y_{i,t}^*$ 가 직접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y_{i,t}^*$ 의 특정 상태, 예컨대 빈곤 여부가 관측된다고 하면 식(1)에 비선형성이 추가되어 문제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본 논문의 공헌은 Heckman의 방법론을 이용하

여 상태의존성과 이질성을 분리했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초기조건이 문제인데, 초기조건이란 표본전 가구 상태가 어떠했었는지에 대한 변수가 필요하다. 현재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모수들이 적절히 식별되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비선형 모형을 추정하고 있는데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선형확률모형으로 추정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I-3 주제

한국의 표준형 ORANI-CGE 모형의 개발

남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호주 방식의 ORANI-CGE 모형을 염두에 두고 한국형 표준 CGE 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ORANI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CGE 모형에 미시적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모형과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과정은 표준적인 ORANI 모형의 개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토론요약

ORANI-CGE 모형, 학자뿐 아니라 정책관련 실무자에게도 도움될 것

강동관 /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남상호 박사가 CGE modeling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저와 학문적인 교류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격주로 그룹스터디를 함께 하였으며, 나중에는 호주 Victoria 대학의 Mark Horridge 교수가 쓴 CGE 모형에 대한 입문서인 'Minimal' 책자를 함께 우리말로 번역·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 책자는 CGE 모델링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현재 무상으로 배포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상호 박사와는 몇 건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CGE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경험을 공유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정책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모형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CGE 모형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복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매우 어렵다.

또 이 분야의 연구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 CGE 모델링 작업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연구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의도한 바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온전하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상호 박사가 그동안 준비해 온 한국의 표준형 ORANI-CGE 모형의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공개되는 모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우리나라 통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데이터베이스와 모형의 컴퓨터 code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초학자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분야는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다. ORANI-CGE 모형의 공개 내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공개되는 ORANI-CGE 모형의 향후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및 수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을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실제로 CGE 모형을 연구에 활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User Group을 형성하여 이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는 새로 도입된 2008년 국민계정 체계(SNA 2008)를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ORANI-CGE 모형은 1993년 기준의 국민계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와는 괴리가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부지런한 남상호 박사님이 이 작업에 앞장서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는 모형에 관한 제언이다. 첫술에 배가 부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정태모형에 뒤이어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RANI-CGE 모형을 기본적인 정책분석 도구로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도 동태분석을 위한 모형 작업에 매진하고 있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끝으로 오랫동안 쉽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남상호 박사님께 이 분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친다.

Ⅲ-1 주제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이 가계의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이창근/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보편적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역에서 도입되어 왔다. 이 정책은 많은 사회적·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경제학의 분석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이 연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첫 경제학적 분석으로서, 가구의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지자체별로 도입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각 지출항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급식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공교육비 지출은 예상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정책 시행 이전 이미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식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총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토론요약

재정패널 1차년도 데이터부터 사용해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길 제안

정세은/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국내의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이 가구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첫 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급식시행 시기가 다른 것을 정책변수로 사용하여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각 지출항목-재정패널의 흥미로운 변수들, 예를 들면 사교육비, 공교육비, 급식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무상급식 이후 급식비 항목과 공교육비 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흥미롭게 읽었으며 급식의 정책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몇 가지의 토론 포인트이다.

발표문에 보면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학교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무상급식 시행이전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지에서는 이미 무상급식 지원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시점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학교의 존재는 정책변수의 계수를 과소 추정하여 0으로의 편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충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충남은 이미 2010년에 78%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시점인 2011년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했다고 하면 정책이 관여를 한 학교는 22%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22%의 효과가 전체 정책효과를 설명하게 되면 계수 값의 편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큰 비중의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던 지자체를 제외하고 따로 분석을 시행하거나, 정책 변수를 더미변수가 아닌 무상급식의 정도, 즉 지자체별로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학교들의 비율로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정책이 0에서 1로 변한 것이 아니라, 충남의 경우 0.78에서 1로 변한 것으로 치환하여 분석한다면 편의현상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재정패널 1, 2차년도에 급식비 항목이 없지만, 공교육비에 대한 지출항목이 있으므로 1차년도 데이터부터 사용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의 분석은 정책시점으로부터 2년 떨어진 2009년 데이터부터 사용하는데, 이를 3~4년으로 늘리고 분석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사교육비 항목 역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결과가 흥미롭다.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면 사교육비가 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편,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사교육비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느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음(-)의 방향은 패널B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로부터 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식료품비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데, 결국 무상급식은 이들의 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무상급식으로 아낀 비용이 저축항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축항목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다.

각 지자체별 각기 다른 상황, 즉 heterogeneity로부터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낮거나, 혹은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무상급식에 호의적인 교육감



을 선출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역의 차이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지자체별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함에 있어 지자체의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제하였다.

Ⅲ-2 주제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조세제도 형평성에 대한 인식, 복지혜택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진단해 보고, 이러한 인식들이 규범적인 차원의 복지의식에서 나아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적 조세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세제도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인 조세부담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을 갖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신뢰는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을 갖게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조세의 부담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트론 요약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세금이 활용돼야

남석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신 이소영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연구목적과 방향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닌, '복지 있는 증세'로의 사회적 지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에 있으며,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 접근 역시 노후생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시작되어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정부예산 투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복지의 방향을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94%에 이르고, 특정계층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정 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고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비교'임에 주목해야 한다. 즉, 동일한 소득기준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논리적으로 같은 상황임에도,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8.8%로,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10.5%)보다 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조세 부담 의향에 수평적 형평성 차원의 조세부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소득공제 제도가 '실질적 독신세 징수'라는 시각을 갖고, 본인이 같은 소득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찾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추가 조세 부담 의향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하며, 그중 대다수는 5% 이상의 조세 부담을 찬성하지 않는 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나타난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추가 조세 부담 의향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의 증대를 위해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세금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집행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감소될 때,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것이 추가적인 조세 부담 수용과 복지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할 수 있다.

재정패널을 통한 장기 종단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8차 재정패널조사에서 추출한 현재의 문항들이 추후의 패널조사에도 동일하게 활용된다면,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으로 패널 참여자의 신뢰와 추가 조세부담 의향의 변화 궤적을 확인한 후, 이중변화형태모형(dual trajectory model)으로 두 변수의 장기적 관계 양상 검증에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Ⅲ-3 주제

자녀양육가구의 소득·소비 유형과 출산장려정책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8차년도를 이용하여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소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자녀양육가구의 소득·소비 유형별 자녀양육지원금 수혜 특성을 살펴보고, 자녀양육가구의 소득·소비유형별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째, 5세 이하 자녀양육가구는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 비율이 5.0%p 적고, 공적이전소득은 6.3%p 더 많았다. 둘째, 5세 이하 자녀양육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식료품 및 외식비가 4.7%p 더 많고, 보육·교육비는 7.5%p 적었다. 셋째, 5세 이하 자녀양육가구의 소득·소비유형은 근로소득중심·관계지향형(33.6%), 근로소득중심·교육투자형(56.4%),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10.0%)으로 구분되었다.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은 자녀양육지원금 수혜율(98.4%)이 가장 높고 연간수혜금액(455만원)도 가장 많았다. 근로소득중심·관계지향형은 자녀양육지원금 중 양육수당 수혜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약 2배 많고, 근로소득중심·교육투자형은 세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다자녀지원금을 받는 가구가 있었다. 넷째,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은 가구주의 미취업률이 높고 가구경제수준이 나쁜 편이므로, 다른 자녀양육가구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취약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은 가구주의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취업



알선 등 고용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토론요약

5세 미만 자녀양육에 포커스 맞춘 것, 타당한지 의문

이순국/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본 논문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구분하고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와 비교하였으며, 자녀양육가구의 소득과 소비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 수혜특성, 소득소비유형별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출산장려정책을 개선하기에 앞서 자녀양육가구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구특성에 따라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논문의 목적, 구성과 방법, 논문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보편적인 자녀 양육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자녀양육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소비 지출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정책으로 그 효과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5세 이하 자녀양육가구의 특성을 소득과 소비측면에서 살펴본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가구유형을 밝히며 가구유형별로 출산장려정책의 수

혜수준을 살펴본 후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자녀양육은 통상 20~30년의 장기간 이루어지며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사교육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성격의 다양한 자녀양육정책은 사실 영유아에 국한되어 있어, 자녀의 성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5세 미만의 자녀양육에 포커스를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자녀 연령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소득-소비구조와 정책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국내 상황을 대변하고 관련 양육정책의 한계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유형구분을 하고 있는가 혹은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부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과 소비도 중요하지만 가구주의 직업(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일 것이다. 직업유형에 따라 자녀양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령자가 가구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통제변수를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자녀 여부에 따라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양육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첫 번째는 조정이 필요하다. 가구소득구조와 자녀의 생애주기 연령에 따라 자녀의 양육수준이 차



이가 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양육의 형태가 달라지고, 자녀수 및 가족구성원 특성 등에 따라 소비유형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집유형을 소득과 소비 유형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연구문제 세 번째는 소득소비유형별로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수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지만 현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수혜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수혜 차이보다 차이로 인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와 연구배경에 관하여 자녀의 양육문제는 Becker(1965)의 가계생산모형과 일맥상통한다. 가계의 소득과 자산상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자녀를 얼마를 갖게 될지 혹은 교육과 의료비 지출 등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하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볼 때, 주어진 소득과 자산제약하에서 자녀양육과 소비지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제모형으로 체계화한다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관점에서 소득과 소비 지출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을 검토한 논문들을 색출하여 소득과 자산패턴, 소비변화에 따른 유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재정패널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 통제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즉, 소득과 소비유형에 대해서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를 구분하고, 소비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월평균조사와 연간조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통제변수의 도출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필

요가 있다.

소비의 유형에서 재정패널의 항목들을 일일이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는 주거 등 정기적인 지출, 여행 등 간헐적인 지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자녀양육과 관련이 있는 지출중심으로(예: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보건의료 지출 등) 분류하기를 제안한다.

계층적 군집분석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장단점 등을 소개하는 것이 논문의 실증분석의 수준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것이며, 구체적인 추정모형을 언급하고 핵심적인 통제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으며, 관심있게 보고자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군집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근로소득중심-관계지향형, 근로소득중심-교육투자형,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 이러한 구분은 복잡하고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어 명확하고 단순화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비근로소득중심-기본생활형은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되지 않은 공적이전지출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안과 세제지원에 대해서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양육수당, 다자녀지원금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각주를 통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녀간 임금차이, 보육환경에 대한 열악함, 일자리의 불안정,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결혼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다자녀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일시적인 지원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안정성과 건강복지를 위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V-1 주제

20~30대의 소비지출 패턴 연구

김나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허윤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현재 한국 사회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족형태 변화 등으로 소비지출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20~30대 중 미혼 비중이 늘어나면서 혼인 여부에 따라 소비행태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20~30대의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 특히 미혼 인구의 소비지출 패턴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해당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미혼 인구의 소득 변화 양상과 연금, 보험을 포함한 저축의 비중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소비지출 패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30대의 소득, 소비, 저축의 패턴을 살펴본 후, 가구의 지출 양상이 혼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가구 필수요소 지출 및 가구 저축 양상을 두 가지 모형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혼 가구는 기혼 가구에 비해 총지출 중 추가 요소에 대한 지출이 필수요소에 대한 지출보다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혼 인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 저축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미혼 인구의 소비지출 양상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 사태가 장기화될 시 나타날 사항들에 대한 시사점

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요약

선택한 분석 모형에 대한 근거와 자세한 설명 필요

김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이후 (1)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와 (2) 연금 및 보험을 포함한 저축의 비중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20~30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으며, 적절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토론을 맡았으며, 따라서, 주로 연구자가 사용한 회귀 분석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제한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귀 모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그중 어떠한 모형을 사용했는지 명확한 모형의 식과 가정들을 기술하는 것이 후에 이 논문을 읽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시한 [모형 1]과 [모형 2]가 ‘일반적인 패널모형’ 중 확률 효과 모형(random-effect model)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자와의 대화 이후 알게 되었다.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정 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고, 하우스즈만 검정(Hausman test)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위해 선택된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는 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된 종속 변수는 0과 1 사이의 비율(ratio)이다. 종속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bounded) 변수이기 때문에 [모형 1]과 [모형 2]의 오차항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항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일반 회귀식은 이 경우 근본적인 완벽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이항선택 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사용하겠지만, 이 경우는 종속변수가 비율이므로, 토론회자는 베타 회귀분석(beta regression)을 사용해서 추정된 결과와 비교해 봄을 제안한다. 통계 패키지 STATA의 betafit 명령어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의 해석이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앞서 제시한 토론자의 문제제기에 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지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연령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age)변수를 직접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연도'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변수를 포함한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코딩되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 준다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혼인 여부', '성별' 등 각각 사용한 변수를 소개할 때, 어떤 그룹이 기준이 되는 그룹(reference group)인지, 어떻게 코딩이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줬으면 한다. 셋째로, 기혼 세대주에 있어서 저자가 정의한 가계 필수요소지출의 상당 부분은 육아에 관련된 비용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재정패널 내 '자녀의 수' 등 육아 여부 및 그 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추가로 모형에 포함시켜서, 육아

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는 시도를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불균형 패널 자료(unbalanced panel data)에 대해 얼마나 많은 표본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동안 조사에서 이탈하고, 새로 유입되었는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2 주제

가구의료부담 추이 연구:
2008-2014

이창우/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 2-8차(2008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료부담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가구의료부담은 국민건강보험료부담과 가구부담 의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의료부담 중 건강보험료부담보다는 가구부담 의료비지출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가구부담 의료비지출은 감소하고 건강보험료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직장가입가구, 지역가입가구, 소득4분위 가구, 소득5분위가구 등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건강보험료부담이 소득 대비 가구부담 의료비지출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전체 가구 중 약 23%가 의료부담이 가구소득의 10%를 넘는 고부담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5-17% 정도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의료에 대한 가구의 높은 재정적 부담은 의료이용과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부담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요약

고부담 가구, 기존 연구에 비해 과대추정될
가능성 있어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우 교수의 연구는 가구의 의료부담액을 가구의원 건강보험료와 가구 의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하고, 2008~2014년 가구의 의료 부담액 추이를 건강보험 가입형태, 소득분위, 의료부담정도 등 가구의 여러 가지 특성별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소득 대비 의료비지출액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액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이 자리를 빌려 이창우 교수의 연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여쭙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고부담 가구”에 대한 정의는 기존 해외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에 비해 고부담 가구수를 과대추정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전체 가구에서 고부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결론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해외 연구에서는 고부담 가구를 ‘가구원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10%가 넘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보가 재정패널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고부담 가구를 ‘가구의 의료부담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가구’라 정의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는 가구소득이 한 명의 가구원에게



적어도 10%가 집중되어야만 고부담 가구로 분류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는 모든 가구원에게 지출된 부담액의 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이면 고부담 가구로 분류되므로 고부담 가구가 기존 연구에 비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구원 1과 가구원 2에게 가구소득의 각각 5%에 해당하는 의료부담액이 지출됐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부담 가구로 분류되나, 기존 연구에서는 고부담 가구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부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낮다고 말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저자가 결론에서 지적했으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소득 대비 의료비지출액 비중 감소 및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액 비중 증가’라는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소득 대비 가구의 의료부담이 늘어나면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의로서비스 접근을 막아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의 의료부담 구성의 변화, 즉 ‘고 의료비지출 및 저 건강보험료’에서 ‘저 의료비지출 및 고 건강보험료’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구성의 변화가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추가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패널의 민영보험지출자료와 저축성보험료, 연금성보험료 정보를 이용하면 민영건강보험료를 대리할 수 있는 값을 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론에 지적되어 있듯이 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재정패널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가구의료부담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재정패널에서 조사

되는 민영보험지출액, 저축성보험료, 연금성보험료를 이용한다면, 즉 민영보험지출액에서 저축성보험료와 연금성보험료를 제외한 값을 구하여 민영건강보험료를 대리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빈곤한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1인 가구의 의료 부담액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본 연구의 기여도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패널과 비교하여 재정패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복지패널을 이용한 관련 주제 실증연구에 비한 본 연구의 기여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IV-3 주제

자동차 소유력과 구매데이터 구축 및 활용

민인식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재정패널(NaSTaB) 데이터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가구와 가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NaSTaB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재정패널 데이터의 가장 큰 차별화는 자동차 자산에 대해 매우 자세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차~8차 데이터를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력과 구매력 데이터를 구축과정을 설명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소개하였다. 자동차 보유기간을 자동차를 구매한 가구특성 그리고 구매한 자동차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두고 생존 분석 모형을 추정한다.

토론요약

자동차 보유기간 결정요인을 잘 정리하였으나 실증분석에 대한 보완 필요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소유력 데이터 및 구매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유기간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재정패널 자료에는 자동차 자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소유 및 구매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2차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논문 초반부에서는 2차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구축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유기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동차 소유 및 구매와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보유 및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구축한 2차 자료는 향후 많은 후속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토론문은 자동차 보유 및 구매에 관련된 기존 해외 연구 및 본 논문의 실증분석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가구의 특성과 연결하여 자동차 보유기간 및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발표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개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 구매 결정을 소비자의 특성과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총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활용한 접근법, 두 번째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첫 번째 방식의 예로는 Berry et al.(1995)과 Petrin(2002)을 들 수 있다. 이들 논문은 소득, 인종 등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특성에 대한 미시 자료와 결합하여 자동차 구매 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구조적 모형 접근법을 활용하였는데, 소득, 인종 등의 분포로부터 임의로 값을 추출(random draw)하여 모형 내의 가상의 소비자 각각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차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번째 방식의 예로는 Hanly and Dargay(2000), Yamamoto(2008), Nolan(2010), Clark et al.(2016)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은 모두 다년간 축적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보유 및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2차 자료와 매우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유 및 구매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로서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저자는 구매력데이터를 횡단면 구조로 간주한 생존분석 모형과 패널 자료 구조로 간주한 frailty 생존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모형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성별, 거주 지역, 소득 등 매우 상세한 가구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자동차 특성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나타내는 더미변수 하나만이 포함되었다. 저자가 구축한 2차 자료는 자동차 브랜드, 배기량, 연식 등 보다 상세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의 자동차 보유 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포함된 새 차/중고차 더미 변수 대신 자동차 구매 당시의

연식 변수를 포함한다면 단순히 중고차인지 여부 뿐 아니라 중고차 중에서도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보유한 소비자가 자동차 보유를 더 짧게 혹은 길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V-1 주제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8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배적 공정성 및 절차적 공정성으로 정의하고, 납세자들이 판단하는 적정 조세부담률의 수준에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적 조작을 거친 후 조세순응과 납세의식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조세공정성과 신뢰가 초점납세자의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분배적 공정성의 측면에서 납세자들은 교환형평성이 낮을수록, 수직적 불공평을 인식할수록 적정 조세부담률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적정 조세부담률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타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조세제도가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직적 공평에 대한 납세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의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납세자의 적정 세부담률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요약

공정성 및 납세 의식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지만
변수 및 결과 해석에 좀 더 유의해야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지표로 교환형평성,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절차적 공정성 등 네 가지 변수를 추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변수가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환형평성이란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간의 형평성을 뜻한다. 즉 정부에 낸 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 공평은 본인과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세부담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낸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



간의 조세부담 차이를 나타낸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제도가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공정성은 국세청과 같은 세무당국이 세금징수 등의 과세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재정패널 8차년도 자료 중 납세자 인식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교환형평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수직적 불공평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적정 조세부담률을 낮게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평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조세부담률을 높게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우며 시사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 형평성 및 공정성의 지표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신중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수평적 공정성의 경우 본인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의 세부담을 본인의 세부담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수평적 공정성이 낮으며, 본인의 세부담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수평적 공정성이 높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함’의 척도이지, ‘공평성’의 척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공정성은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본인이 소득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내도 공평하지 못하며, 반대로 더 적게 내도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변수의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공평성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는 교환형평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직적 공정성의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경우, 중산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경

우,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기에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이 공평성을 의미하는지, 본인에게 유·불리함을 의미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각해볼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 중 조세제도의 공평함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일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적정 정부크기에 대한 가치관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해 보인다. 정치적 이념일 수도 있으며,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다. 또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다. 즉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정 조세부담률을 낮게 응답할 확률이 높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즉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불공정 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통해 더 많은 재분배를 선호할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조세저항의 정도가 아니라, 조세부담률 수준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도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 겪어왔듯이 공정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개편으로 인한 ‘숫자’의 변화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인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정책당국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납



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파악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본 논문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V-2 주제

가구의 기부금 가격 탄력성 측정 및 정부정책 시사점

김영록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2014년,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이며 고소득층의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8차까지의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분위별로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우선 Tobit 모델로 전체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약 -9.9%로 상당히 높게 가격 탄력성이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후 Censored 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위별로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각 분위별로 탄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액기부자일수록 기부가격에 대해서 소액 기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기부자 일수록 상대적으로 기부금 세제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0.95분위에 속하는 상위 5%의 고액기부자의 경우 기부가격이 1% 증가할 때 기부액은 약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액기부자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은데 이를 고려해 볼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액기부자들이 세액공제로 세제지원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부의 양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론요약

정부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하는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좀 더 엄밀한 추정이 필요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1~8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특히 평균적인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위별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액기부자일수록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액기부자들은 기부가격이 변화해도 기부 규모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저자는 기부금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고액기부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소액기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고액기부자의 가격탄력성이 소액기부자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보다 훨씬 크며, 보다 근본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책의 변화

로 인한 소득구간별 기부금의 변화, 세부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부가격을 어떻게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같은 연구에서는 정밀한 추정이 핵심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 기부가격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기부가격은 [1 빼기 한계세율]이기에 한계세율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각종 소득을 합하여 가구의 연간소득을 계산하였고,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맞추어 기부가격을 계산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된 것일수록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계세율의 추정이 매우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안에 여러 명의 소득원이 존재하여 가구원이 각각 소득세를 내는 경우, 그리고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각종 공제액을 삭감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근로소득세 대상자와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한 구분도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미 반영하였다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완을 통해 좀 더 엄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분위별로 다른 가격탄력성 추정하고, 정책점 시사점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향후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6-11

> 아메리카

[미국-국세청 자문단의 세무행정 이슈 관련 보고서 발표]

- 2016년 11월 16일, 미국의 국세청 자문단(Internal Revenue Service Advisory Council)은 세무행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2016 IRSAC Public Report)를 발표함
 - 국세청 자문단은 국세청의 고위직 임원을 상대로 하여 세무 이슈를 논의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문 조직임
 -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산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 납세자의 부정방지 및 신고간소화, 국제적 세무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세무 이슈를 다루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의 주요한 세무이슈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세무신고에 있어서의 가산세 영향을 평가하여, 가산세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산세 감면 적용에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 이상의 규칙 제정을 고려하여야 함
 - 납세자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산세 제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개선시킬 필

- 요가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세 정책 결정은 ‘자발적 세무신고의 고취’라는 보편적 목적에 부합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세무신고시의 가산세 영향이 어떠한지 명확히 평가하여야 함
 - 또한 적절한 수준의 명료화된 가산세 감면 규정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행정부담 절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발적 세무신고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국세청 자문단은 세액의 부정환급(tax refund fraud)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 또는 서면신고시에 해당 신고자가 진실한 납세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인증 및 ‘사업자 마스터 파일(Business Master File; BMF)’ 인증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일환으로서 납세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몇 가지 방안을 권고함
 - 201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억달러의 세무 부정환급시도가 있었고, 실제 부정환급은 5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최근 납세자 신원 도용을 통한 국고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권고 방안을 제시함
 - 세액 환급 실행 전에 신원 인증(identity authentication)과 자료 일치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
 - 국세청에 미신고한 서식이 있을 경우, 사업자 확인번호(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s)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분리하여 관리함
 - 국세청의 대리인이 납세자와 직접 전화통화 등



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원 인증 강화를 위해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험 프로그램을 가동함
- '세무신고 준비자 확인 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s)'와 '전자신고 확인 번호(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s)'의 일치 여부를 파악함
- 환급 전에 해당 납세자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정보를 확인함

■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세청 모바일 앱(application)'과 '납세자 온라인 계정 앱'의 개발 및 제공을 권고함

- 이러한 앱의 제공을 통해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 숙련도를 높임
- 앱 개발 시 보안성(Security), 완전성(Integration), '국세청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Digital Communication with the IRS)' 등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국가간 세무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납세자의 정보 자료가 오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03조에서 규정한 납세자 정보의 비밀유지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OECD의 BEPS 프로젝트 액션 플랜 13의 국가별 보고의무(country-by-country (CbC) reporting) 시행에 따라 국가간 납세자에 대한 자동 정보교환이 임박하고 있음
- 국세청 자문단은 미국 납세자 정보를 수령하는 타 당국이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지 않고

또한 정보의 비밀유지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자료 보호정책(International Data Safeguards), OECD의 세이프가이드 등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 웹사이트 공지에 링크시킴
- 정보 오용(misuse)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게시하고 만일 정보를 수령하는 타 국가가 그 정보를 오용한다면 그 국가와의 자동 정보교환은 중지된다는 사실을 국세청 고시 등의 사이트에 알림
-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유지수준이 저해되거나 정보가 오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에 성실히 알려주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캐나다-국세청의 비거주자 서비스 제공 보수관련 가이던스 발표]

■ 2016년 11월 10일,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캐나다 내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급시 적용되는 세무가이던스(RC4445 T4A-NR)를 발표함

- 동 가이던스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신고 및 납부 절차, 서식 작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캐나다 내에서 비거주자인 개인, 파트너십,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s), 커미션 등의 보수 지급 시 지급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 베이스로 캐나다 내에서 고용관계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 캐나다에서 제작된 영화 비디오에 출연한 배우는 제외함

- 15% 세율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성격이며,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절차에 의해 확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 만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금액 중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이며, 만일 1년에 2회 이상 불이행 시 2번째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됨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캐나다가 체결한 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거나 15%보다 낮은 세율로 감면된 원천징수를 행할 수도 있음

• 이때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비거주자는 서비스 개시 시작일로부터 30일내 또는 첫회 지불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신청서를 관

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브라질-국가별보고서 실행을 위한 공개의견수렴절차 개시]

- 브라질 과세관청은 2016년 11월 4일 국가별보고서 시행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¹⁾

• 이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 Action 13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Action 13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공개의견수렴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Action 13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브라질 거주자인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등의 보고대상, 관계회사와의 거래금액 등의 보고내용 등 기본적인 내용은 Action 13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

- 면제대상은 전기 연결매출액이 226천만레알 미만인 경우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모회사가 브라질 거주자가 아닌 경우 전기 연결매출액이 75십만유로 미만인 경우임

1) Receita Federal do Brasil(<http://idg.receita.fazenda.gov.br/sobre/consultas-publicas-e-editoriais/consulta-publica/edicao-de-instrucao-normativa-dispondo-sobre-a-obrigatoriedade-de-prestacao-das-informacoes-da-declaracao-pais-a-pais>).



- 최초 보고연도는 2017년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경우 2016년도 과세기간이 보고대상이 됨²⁾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이번 멕시코 과세당국이 제안한 규칙은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담고 있음
- 11월 18일까지 제안된 규칙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브라질-상호합의절차 실행을 위한 지침 공개]

- 브라질 정부는 2016년 11월 9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상호합의절차를 시행하는 지침을 공개함³⁾
 - 이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 Action 14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가격을 포함한 거래에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바탕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Action 14의 최소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중재절차는 브라질의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음⁴⁾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2015년 11월에 확정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을 요약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제출 대상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멕시코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644,599,005페소(약 34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임
 - 정부지배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별보고서는 그룹의 직전 사업연도 연결 매출액이 12십억페소를 초과하는 최종모회사가 제출함
-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과 함께 수출 및 수입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멕시코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이 제한됨
 - 세무상 불이익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 중 불성실 신고분에 대해 비용공제를 받지 못함
- 제출대상 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부터 관련 내용

[멕시코-국가별보고서와 관련된 규칙 제언]

- 멕시코 과세당국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규칙을 제언⁵⁾함
 - 멕시코는 2015년 11월 13일 소득세법⁶⁾에 BEPS Action 13에서 권고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⁷⁾

2) Brazil: OECD—Public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 (08 Nov. 2016), News IBFD.

3) NORMATIVE INSTRUCTION RFB NO. 1669 OF NOVEMBER 9, 2016(<http://normas.receita.fazenda.gov.br/sijut2consulta/link.action?visao=anotado&idAto=78624#1678258>).

4) Ernst & Young, "The Latest on BEPS," *Global Tax Alert*, 21 November 2016, p. 2.

5)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exican-tax-authorities—issue—proposed-regulations—regarding—the-master-file—local-file—and-cbc-report>) 및 TAX NOTES International pp. 556–557 (2016.11.7.)

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exicos-president—submits—2016-tax-reform-package—for-congressional-approval>) 및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exico-s-2016-tax-reform-published-in-the-official-gazette>)

7) 멕시코 소득세법 제76-A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함

을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함

- 제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이므로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이번 과세당국이 제안한 규칙에서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서식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다름

- 멕시코에서는 OECD 권고안에서 허용한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래금액 한도 등을 두지 않고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함
 - OECD 권고안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만 마스터파일에 그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멕시코에서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정함
 - OECD 권고안에서는 이전가격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멕시코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함
- 마스터파일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현재 법률구조와 지배구조, 법률구조와 지배구조의 변동내역, 기업의 주요기능, 위험과 자산에 대한 설명내용이 포함됨
 - 해외 본점과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OECD에서

는 마스터파일의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멕시코에서는 제출시기의 조정을 허용하지 않음

- 로컬파일에는 관계회사 사이의 모든 법률적 계약 내용이 포함됨
 - OECD에서는 관계회사 사이의 중요한 법률적 계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멕시코는 관계회사 사이의 모든 법률적 계약내용을 제출하도록 제안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보고서식과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번 규칙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유럽

[노르웨이-금융기관 대상 금융활동세 도입]

- 노르웨이 정부는 금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VAT 면제 대상인 금융서비스에 과세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금융활동세⁸⁾(Financial Activity Tax, FAT)를 부과할 예정임⁹⁾
- 금융활동세는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¹⁰⁾ 금융활동세 도입으로 인하여 17.9억크로네(약 2,500억원)¹¹⁾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¹²⁾

8) 금융활동세란 2010년 IMF가 제안한 것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기관의 이윤과 보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2012) p. 42).

9) E&Y. (검색일자: 2016.11.11.)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ay-proposes-new-financial-tax-as-vat-substitute-for-financial-sector>)

10) 노르웨이-2017년 예산안 발표' 참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10-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 2016년 11월 11일자 환율(139.26원/1크로네) 적용하여 환산함

12) 노르웨이 재무부, (http://www.statsbudsjettet.no/upload/Statsbudsjett_2017/dokumenter/pdf/Chapter1_tax2017.pdf), (검색일자: 2016.11.13.)



- 노르웨이는 현재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헬스케어 및 기타 공급에 대하여 VAT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¹³⁾
- 금융활동세 부과 대상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은행, 보험사,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금융지주사, 연금펀드 등이 해당됨
 - 과세대상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및 펀드 운용 서비스가 포함되며 금융지주사 중 고용된 직원이 없는 지주사는 금융활동세 적용대상이 아님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에서 지급한 인건비의 5%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1%로 구성됨
 - 인건비는 성과급 등의 급여성 항목을 포함하며, 법인세 산출 시 비용 공제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금융활동세의 실효세율은 3.75%가 됨
 - 2017년에 24%로 인하될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016년 법인세율인 25%를 유지해야 하므로 금융활동세 과세목적 차원에서 1%p 만큼 추가로 부과되는 개념임
- 일정한 최소기준 및 문서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금융활동세가 면제됨
 - 전년도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중 금융서비스에 종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금융활동세를 적용하지 않음

- 전년도에 지급한 금융서비스 관련 인건비 중 VAT 과세대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비중이 70% 초과 시 금융활동세를 적용하지 않음
- 금융기관의 비경제활동은 금융활동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경제활동임을 입증하는 문서는 반드시 과세관청에 제공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러시아-조세정책 관련 2017~2019년 계획 발표]

- 러시아 재무부는 2016년 10월 5일, 2017~2019년 조세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함^{14) 15)}
 - 주요 내용으로는 B2C 거래 관련 VAT 제도 정비, OECD 다자간 협약 참여, 국가별보고서 도입,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관련 등이 포함됨¹⁶⁾
- 가. 국가간 B2C 거래에 대한 VAT 제도 정비
 - 계획안에 따르면 국외공급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VAT를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VAT를 과세하는 법규 제정이 현재 논의 중이며 2018~2019년 내 도입될 예정임

13) Tax facts Norway 2016, KPMG, p. 43.

14) IBFD. (검색일자: 2016.11.11.)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25_ru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15) E&Y. (검색일자: 2016.11.11.)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russian-government-issues-bill-for-implementation-of-automatic-exchange-of-financial-account-information>)

16) 국가의 향후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계획을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서, 발표된 계획안이 모두 입법되는 것은 아님

- 개정을 통한 VAT 과세 범위에는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되는 용역과 사용권 등이 포함됨
 - 전자적 용역에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의 사용권,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고 영역과 광고서비스의 제공, 정보 처리 및 저장 등이 제시됨¹⁷⁾

나. OECD 다자간 협약 참여

-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에 참여할 예정임
 -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는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고정사업장 상태를 인위적으로 피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 조세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임
 - 다자간 협약의 내용에 따라 현재 러시아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개정함과 동시에 향후 체결할 조세조약에도 반영하고자 함

다. BEPS Action 13 조치 및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 OECD에서 발표한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임
 - 러시아 과세당국에 의해 신고된 납세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BEPS Action 13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방안을 이행할 예정임

- 러시아 재무부가 2016년 9월 6일에 발표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법률(안)¹⁸⁾에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의 제출의무자, 제출기한 및 적용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될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상기 내용은 공개 의견수렴 및 수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MCA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독일-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정 절차 개정]

- 독일 재무부는 2016년 10월 28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함¹⁹⁾
 - 발표된 법안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수익적 소유자 등록, 신고의무 및 관련 제재 확대, 주요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 및 탈세행위 제재기한 확대 등 과세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2016년 9월 22일에 발표한 조세피난처 거래 관련 지침이 상기 법안에 포함됨

17) '러시아-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참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8.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 '러시아-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법률안 발표' 참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9-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IBFD. (검색일자: 2016.11.11.)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1-03_de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가. 제3자에 대한 정보 및 수익적 소유자 등록 요청

- 과세관청에서 조세탈루 혹은 규정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조세회피 여부 판단 시 관련된 거래 당사자의 모든 납세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도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절차법에 새롭게 추가되어 거주자의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될 예정임
- 개인, 외국 조합, 법인, 협회, 펀드 및 재단에 의하여 외국에서 개설된 금융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수익적 소유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출 의무대상은 신용금융기관, 결제서비스제공기관, 투자브로커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임

나. 신고의무 및 관련 제재

- 납세자는 지분을 기준 10% 혹은 금액 기준 15만유로 이상의 지분 매입·처분 시 거래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에는 외국법인, 협회, 펀드 및 재단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 거래가 포함되며 상기 지분율과 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외국법인, 협회, 펀드, 재단, 국외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함
 - 만약 거주자가 제3국에서 설립된 기업의 영업

활동과 금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기 신고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며 중대한 영향력 판단에 대한 기준시점은 2018년 1월 1일임

- 거래정보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신고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정보(수입, 비용 정보 포함)는 6년간 보관되어야 함
- 관련 제재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만 5,000유로, 금융기관의 경우 5만유로까지 부과 가능하며, 탈세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독일-가속상속세제 개정]

- 독일 연방 의회는 2016년 11월 4일, 기업상속세제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법령은 2016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즉시 시행될 예정임²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용 자산 상속공제 요건 개정, 2,600만유로 초과 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 비사업용 자산(passive asset)의 범위 등이 포함됨
 - 2014년 12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범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통해 대규모 기업상속공제의 필요성 검토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²¹⁾

20) IBFD. (검색일자: 2016.11.21.)

http://online.ibfd.org/kbase/#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1-11_de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21) '독일-기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요소를 헌법불합치 판결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15-01호.

- 현행 상속세법이 세액공제가 큰 실체에 대한 기업상속공제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인 이하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제관련 규정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가. 사업용 자산 상속공제 요건 강화

- 독일은 사업용 자산의 상속 시 사업의 계속성과 자산의 사업 관련성 정도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85%, 100%가 공제되며 본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이 변경됨
 - 승계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내 종료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등 공제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을 안분하여 사후 추정하고 있음

1) 사업의 계속성

- 개정 전 사업의 계속성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업용 자산의 85%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5년간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승계일 이후 5년간 지급한 종업원 총급여 금액이 상속개시시점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4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용 자산의 10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7년간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승계일 이후 7년간 지급한 종업원 총급여 금액이 상속개시 시점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700% 이상이어야 함
 - 총급여 요건은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사업 유지의 연한에 대한 요건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개정 후 총급여 요건은 세분됨으로써 기존보다 강화됨
 - 기존에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20인 이하의 경우에도 적용 요건이 세분화됨
 - 85%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일 이후 5년간 총급여 합계액이 6인 이상 10인 이하 시 상속시점 총급여의 250% 이상, 11인 이상 15인 이하 시 총급여의 300%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을 배제함
 - 10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일 이후 7년간 총급여 합계액이 6인 이상 10인 이하 시 상속시점 총급여의 500% 이상, 11인 이상 15인 이하 시 총급여의 565%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을 배제함



사업의 계속성 판단 시 급여 요건

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85%	사업승계일 이후 5년간 종업원 총급여 합계액 ≥ 상속개시시점 총급여의 400% (단,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 배제)	16 ≤ 종업원 수	총급여의 400% 이상
		11 ≤ 종업원 수 ≤ 15	총급여의 300% 이상
		6 ≤ 종업원 수 ≤ 10	총급여의 250% 이상
		종업원 수 ≤ 5	요건 적용 배제
100%	사업승계일 이후 7년간 종업원 총급여 합계액 ≥ 상속개시시점 총급여의 700% (단,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 배제)	16 ≤ 종업원 수	총급여의 700% 이상
		11 ≤ 종업원 수 ≤ 15	총급여의 565% 이상
		6 ≤ 종업원 수 ≤ 10	총급여의 500% 이상
		종업원 수 ≤ 5	요건 적용 배제

주: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자산의 사업관련성

■ 개정 전 자산의 사업 관련성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업용 자산의 85%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의 50% 이하여야 함
- 사업용 자산의 10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의 10% 이하여야 함

■ 자산의 사업 관련성 요건은 다음 규정으로 개정됨

- 비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사업용 자산의 85% 공제가 가능함

- 단, 자산을 2년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어떠한 공제도 불가함

- 비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가 사업용 자산의 시장가치의 20% 이하인 경우 사업용 자산의 100% 공제가 가능함

나. 2,600만유로 초과 자산에 대한 공제 제한

■ 2,600만유로를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부분 공제가 제한됨

- 상속인은 85% 공제와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100%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2,6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75만유로당 1%씩 공제율이 감소함

자산의 사업관련성 요건

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85%	비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50%	비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10% (단, 2년 이하 보유 시 공제 불가)
100%	비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10%	비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시장가치의 20%

주: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납세자가 85% 공제와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9,000만유로임
- 2,600만유로를 초과하는 임계점을 산출할 때에는 과거 10년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함

다.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범위 확대

- 비사업용 자산²²⁾에 대한 범위가 예술작품 및 수집품, 도서관, 주화,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글라이더와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됨
 - 단,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대여 혹은 무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됨
- 만약 피상속인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2년 내 기업에 의해서 투자되고, 사업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이탈리아-VAT 전자신고 및 보세창고 관련 법령 개정]

- 이탈리아 정부는 2016년 10월 24일, 재무부 공식 회람을 통해 VAT 정보의 전자적 제출 의무 확대, 보세창고 관련 VAT 개정사항 등을 공표함²³⁾

22) 비사업용 자산이란 1차적으로 위험부담 없는 수익획득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적인 국민경제적 급부를 유발하지도 않는 자산을 의미함. 상속개혁법의 입법목적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임대용 토지 및 건물의 예를 들 수 있음(「상증세법상 기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09, p. 57)

23) E&Y. (검색일자: 2016.11.11.)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y-enacts-new-law-decree-on-vat-measures-for-countering-tax-avoidance>)

24) E&Y, Worldwide VAT, GST & Sales Tax Guide 2016, p. 494.

25) E&Y, Worldwide VAT, GST & Sales Tax Guide 2016, p. 490.

- 개정사항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정보(판매 및 구매정보 포함) 보고, 분기별 VAT 산출 관련 회계자료 제출, 보세창고 관련 VAT 제도 개정 및 기타 신고기한의 변경 내용 등이 포함됨
- 개정 법령은 회람 발행일 이후 60일 이내 VAT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임

- 상기 개정을 통해 Intrastat을 통한 보고,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한 보고, 임대회사와의 거래 정보 보고 규정 등이 대체됨
 - Intrastat이란 EU 회원국 간 재화와 용역의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신고 시스템으로서 회원국 간 교역 규모에 따라 월별 혹은 분기별로 Intrastat에 보고해야 함²⁴⁾
 - 모든 이탈리아 납세자는 블랙리스트 보고를 통해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이 재무부에서 지정한 특정 국가에 소재하는 실체와 1만유로를 초과하는 거래 시 연간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함²⁵⁾

가. 분기별 VAT 정보에 대한 전자신고 의무

-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자료와 분기 VAT 산출 회계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 보고를 통해 연간 VAT 신고를 대체할 수 있음
 - 분기별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자료와 VAT



산출 회계자료의 제출기한은 다음 분기 시작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임에 따라 2017년 1분기 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

- 분기별 보고의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분기별 세금계산서 자료 제출 시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신용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으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거래유형,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및 거래일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이 기재되어야 함
 - 거래 증빙에 대한 불성실 신고 시 최소 25유로에서 25,000유로까지 가산세 부과 가능함
- 과세관청은 납세정보 수신 이후 세금계산서 자료와 VAT 산출 정보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불일치 판단 시 관련 내역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정확한 산출 자료 제공 시 최소 5,000유로에서 5만유로까지 가산세 부과 가능하나 납세자의 입증과정을 통해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음

나. 보세창고 관련 VAT 대리납부 개정

- 대리납부 대상 재화의 범위 확대, 보세창고 보관 재화에 대한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등이 개정됨
 - 현행 대리납부 방식은 EU 회원국 및 특정 보증을 취득한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VAT 창고에 입고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VAT 창고에 입고되는 모든 이탈리아 재화로 범위가 확대됨

• 개정을 통해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특정 창고에 재화가 입고되는 거래에 대하여 VAT 과세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해당 재화의 입고시점이 아닌 출고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지연됨

- 재화의 입고시점에 VAT를 과세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자는 수입재화를 입고시키는 창고업자이며 출고시점으로 과세유예 시 대리납부 의무자는 재화를 출고하는 공급업자임
- 대리납부 VAT는 재화 출고일의 다음달 16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은 고빈도 수출업자(Frequent exporter)의 경우 상기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됨
 -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은 고빈도 수출업자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의 수입 및 취득 시 VAT 지급 의무가 면제됨²⁶⁾
 - 고빈도 수출업자는 재화의 수출, 영세율 적용 용역 및 EU회원국 내 공급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대상 매입세액이 7십만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다. 기타 신고기한의 연장

- 2017년 과세분에 대한 연간 VAT 전자신고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자동판매기 및 기타 전자결제를 통한 지급거래 관련 정보의 전송기한은 4월 1일까지 연장됨
 - 2016년 대상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7년 2월 28일까지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26) E&Y, Worldwide VAT, GST & Sales Tax Guide 2016, p. 486.

[덴마크-데이터센터의 고정사업장 판단과 관련한 규정 발표]

- 덴마크 조세위원회(the tax board)는 해외 모회사와의 웹호스팅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덴마크 자회사 소유의 데이터센터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함²⁷⁾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의 고정사업장의 정의, 제5조 제5항의 계약체결대리인과 제5조 제7항의 독립기업원칙을 참고하여 결정함
- 쟁점이 된 사례는 덴마크 자회사가 서버와 장비를 소유하고 웹호스팅 등 모회사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의 운영은 모회사 소속 직원이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자회사의 설립목적: 모회사가 데이터센터 운영 목적으로 덴마크에 자회사를 설립함
 - 지분관계: 해외 모회사가 덴마크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함
 - 계약관계: 웹호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서버와 장비를 사용함
 - 소유관계: 자회사가 서버와 장비를 보유하고 웹호스팅과 모회사의 활동을 위해 사용함
 - 자회사 직원의 역할: 자회사 직원은 자회사 경영진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설치부터 운영, 유지와 수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센터의 접근: 모법인 직원이 원격조정을 통해 자회사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

회사 직원이나 외부 서비스공급자는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없음

- 모법인 소속의 일부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데이터센터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자회사 직원은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하며, 모회사가 데이터를 통제함
- 모회사 직원의 역할 : 모회사 직원은 원격조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여부나 데이터센터 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관리를 담당함
 - 서버의 폐지와 서버 이전도 모회사 직원이 원격으로 진행함

-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모회사가 원격조정을 통해 덴마크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서버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임
- 조세위원회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를 참고하여 데이터센터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음
 - 이 사례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이나 직원 업무에 대한 통제와 지시권한을 갖지 않고, 서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서버의 처분권한(at the disposal)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못함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제1항과 모델조세

²⁷⁾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danish-tax-board-rules-datacenter-does-not-create-pe-for-nonresident-taxpayer>



협약 주식 제42.2호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는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 장소로 볼 수 없는 반면,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지고 있어 사업장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례도 서버가 소재한 데이터센터가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처럼 해석됨

- 한편, OECD 모델조세협약 주식 제42.3호에 따르면 모회사가 처분권한(at the disposal)을 갖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즉 모회사가 서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해석됨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음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제7항의 상대국가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이번 결정에 참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폴란드-비과세 부동산투자신탁(REIT) 관련 초안규정 발표]

- 폴란드 재무부는 2016년 10월 14일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도입 및 신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초안을 발표함²⁸⁾

- 부동산투자신탁 소득의 비과세제도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을 유입하고, 소액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임

- 위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신탁은 자본금, 상장 여부, 매출액, 자산요건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투자신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및 처분 이익, 부동산투자신탁 자회사 등에 대해 보유한 지분 처분이익,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으로 해당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부동산은 일반적인 건물을 의미하며, 거주용 빌딩, 아파트는 부동산 범위에서 제외함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투자신탁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7가지가 있음

- 자본금은 최소 6천만즈워티(약 173억원) 이상이어야 함

-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주식은 폴란드 바르샤바 증권거래소(Warsaw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어야 함

- 총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순이익(net profit)의 70% 이상은 부동산 임대, 매매로 발생한 이익이어야 함

- 총부채는 총자산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28) EY, "Poland published draft bill introducing REIT as new investment vehicle," 2016.10.18.

- 총이익의 90%는 배당 또는 재투자로 분배되어야 함
- 부동산투자신탁은 최소 3개 이상의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폴란드-폐쇄형 투자펀드의 법인세 과세 규정 법안 통과]

- 폴란드 하원은 2016년 11월 14일 폐쇄형 투자펀드(close-ended fund)²⁹⁾의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³⁰⁾
 - 2016년 10월 31일 발표된 개정안 초안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발표한 것임
 - 이 개정안은 폴란드 의회 상원의 표결절차를 거쳐 2016년 11월 말 최종법안으로 입법될 것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쇄형 투자펀드가 도관회사(tax transparent entity)로부터 얻은 이자소득, 주식양도차익, 배당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개정안 초안에서는 폐쇄형 투자펀드의 경우 모든 수익에 대해 개방형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을 제외한 운영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음³¹⁾
 - 투자소득이 아닌 운영수익까지 비과세되는 것

-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하지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폐쇄형 투자펀드에 한해 도관회사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안 초안을 수정함
 - 개방형 투자펀드의 경우 모든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초안규정을 계속 유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아일랜드-2016년 재정법(finance bill) 발표]

- 아일랜드는 2016년 10월 20일 「2016년 재정법(finance bill)」을 승인하였으며, 재정법에는 2017년 예산안에서 제안한 세법개정안 및 추가적인 세법 개정안이 포함됨³²⁾
 -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재정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규정 중 주요 내용으로 1) 부동산 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소득에 과세 2)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신탁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 비과세 3) 7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 4) EU투명성지침에 따른 법안 수정의 내용이 있음
 - 2016년 재정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9) 개방형펀드(open-ended fund)는 투자기간 중 환매가 자유로운 펀드를 말하며,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 폐쇄형펀드(close-ended fund)로 분류됨
 30)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poland-publishes-revised-bill-on-cit-exemption-for-investment-funds>

31) EY, "Poland publishes draft bill amending rules for CIT exemption of investment funds," 2016.11.02.

32) Ireland-Finance Bill 2016(26 Oct. 2016), News IBFD;

아일랜드 재무부(<http://www.finance.gov.ie/news-centre/press-releases/minister-finance-publishes-finance-bill-2016>)



- 아일랜드는 부동산투자펀드(IREF)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펀드(IREF)는 펀드가 보유한 자산 시장가액의 25% 이상이 아일랜드에 소재한 부동산인 펀드를 말함
 - 외국인 및 적격 투자자들은 비과세가 허용되는 펀드에 투자하여 아일랜드 내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로 인해 과세기반이 침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임
 - 따라서 아일랜드 내 부동산 자산가액이 25% 이상인 경우 부동산투자펀드로 보며, 외국인투자자가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소득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퇴직연금계좌(Personal Retirement Saving Account; PRSA) 가입자가 75세까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년 PRSA 미수령 금액의 4%를 수령한다고 간주하여 해당 연금소득에 과세함
 -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75세까지 PRSA 납입액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수령 납입액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음
 - PRSA 가입자가 퇴직연금 납입액을 수령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함³³⁾
- 외국인신탁이 아일랜드 국세청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신탁이라고 입증되는 경우 아일랜드 거주자가 해당 외국인신탁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현행 규정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신탁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국인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하지만 이는 외국인신탁보다 아일랜드 신탁의 투자자가 더 유리하게 되어 EU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EU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개정된 것임³⁴⁾
- EU의 투명성 지침에 따라 조세예규 및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2015년에 도입한 국가별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함
 - EU 투명성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과 조세예규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정보를 자동 교환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이 EU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이 EU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로 주요 사업활동, 연간 매출액, 관련 계열사의 손익 등이 있음
 -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의 경우 아일랜드 거주 기업의 최종모회사가 비EU국에 소재하는 경우 아일랜드 기업에 국가별보고 의무 부여 및 작성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도록 개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33) Irish Times, "Michael Noonan closes tax loophole in PRSA pension plans," 2016.10.20.일자 기사

34) 아일랜드 재무부, "Minister for Finance Michael Noonan T.D. Finance Bill 2016 Second Stage Speech," 2016.10.25.

[오스트리아-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2016년 10월 20일, 외국인(expatriates)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동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함³⁵⁾
 -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내용, 적용대상 및 요건 등이 공포됨
 - 오스트리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나, ³⁶⁾ 상기 세제혜택과 같은 일부 단순 방식이 허용됨³⁷⁾
- 외국인의 R&D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30%를 공제하며, 임시소득(extraordinary income)에 대해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자 함
 - 30%의 소득공제는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고용 혹은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15%의 단일세율은 오스트리아 입국 전 3년 동안 총소득에 부과된 외국세액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 사이의 비율에 근거함
 -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율은 연간 2%씩 인상됨
 - 30% 공제는 최대 5년간 적용되며 임시 소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은 최대 48%까지 도달 가능함
- 세제혜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과학연구 및 연예 분야 종사자에게 부여됨
 - 대학 혹은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원에 종사하는

교수

- 과학 혹은 예술 분야에 대한 저술활동을 하는 자
- 오스트리아에 이주한 예술가 및 운동선수
- 응용과학 및 연구개발 활동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회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고정사업장 혹은 연구소가 오스트리아에 위치해야 함
- 30% 공제와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오스트리아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로 과세관청에 이주사실을 신고·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본인의 활동이 오스트리아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증거
 - 과거 5년간 거주지 정보 및 오스트리아 이주일자
 - 과거 10년간 오스트리아 거주 여부 및 신고 시점 기준 오스트리아 거주 여부
 - 오스트리아 이주 시점 기준 주요 사업 장소
 - 단일 세율 적용을 위한 임시소득 관련 정보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35) IBFD. (검색일자: 2016.11.21.)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25_at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36)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은 0%, 25%, 35%, 42%, 48%, 50%,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2016년 기준)

37)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p. 80.



[스웨덴-금융활동세 도입 제안]

- 스웨덴 정부위원회³⁸⁾는 2016년 11월 7일 금융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³⁹⁾
 -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활동에 대해 VAT가 면세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조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 밝힘
 - 위 규정은 의견수렴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이 지급한 총급여지급액의 15%의 세율로 과세하며, 스웨덴 정부위원회는 이번 금융활동세 도입으로 세수가 3억 7천~7억크로나(SEK)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금융활동세가 부과되는 금융기관은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용역을 제공받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함
 - 은행, 보험회사, 펀드회사, 금융중개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등을 포함하며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융활동세 과세대상 기관에서 제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불법노동자 고용기업의 사회부담금 공제 제외]

- 영국은 2016년 11월 8일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가 부담한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자 함⁴⁰⁾
 - 2016년 예산안에서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적법한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주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여 불법 고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2017년 1월 3일까지 의견수렴 후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현행 규정하에서 영국의 고용주는 연간 3천파운드를 한도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의 공제가 가능하나 불법노동자 고용 시 해당 공제를 1년간 허용하지 않음
 -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고용주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이민규제(immigration control)를 받는 불법체류자 또는 고용이 불가능한 자를 고용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항소권을 모두 소멸한 자를 말함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국 내무부로부터 과태

38) 스웨덴 정부에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조세혜택 제도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2015년 5월에 위촉한 위원회임

39) 스웨덴 재무부, "Skatt på finansiell verksamhet(Financial Activity Tax)," section 6.1.3. (<http://www.regeringen.se/ratts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16/11/sou-201676/>); KPMG, "Proposal on a Financial Activity Tax in Sweden," 2016.11.08. (<https://home.kpmg.com/se/sv/home/nyheter-rapporter/2016/11/se-news-proposal-on-a-financial-activity-tax-in-sweden.html>) Tax News, "Swedish Financial Activities Tax Proposed," 2016.11.11.일자 기사, (http://www.tax-news.com/news/Swedish_Financial_Activities_Tax_Proposed___72729.html)

40) HMRC, "Employment Allowance: technical consultation on excluding employers of 'illegal workers,'" <https://home.kpmg.com/uk/en/home/insights/2016/11/tmd-consultation-on-restricting-employment-allowance-from-employers-of-illegal-workers.html>

료를 처분받은 날의 다음 해부터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오세아니아

[호주-투자신탁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제안]

- 2016년 11월 3일 호주 재무부는 호주 투자신탁(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안하는 협의문서를 발표함⁴¹⁾
 - 외국인 투자 촉진과 호주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임
 - 이번 협의문서에서는 호주 투자신탁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제안⁴²⁾함
 - 정부가 제안한 세 가지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가 특정한 방안을 선택하여 제안한 것이 아니며, 2016년 12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임
- 현행 제도의 유지, 특정 투자신탁에 대해서만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 5%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옵션으로 제시함

- 특정 투자신탁에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아시아펀드패스포트(Asian Region Funds Passport, ARFP)에 등록된 투자펀드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임
- 모든 투자신탁에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부동산투자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모든 호주 투자신탁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임
- 현행 호주 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10%와 배당 30%⁴³⁾로 이번에 제안한 원천징수세율 5%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41) TAX NOTES International p. 549~550 (2016.11.7.)

42)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alia-releases-treasury-discussion-paper-regarding-lower-nonresident-withholding-taxes-for-australian-managed-funds>)

43)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93, 2016.



▶ 아시아

[홍콩-BEPS의 최소요구기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제안]

- 2016년 10월 26일⁴⁴⁾ 홍콩 재무부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기준⁴⁵⁾의 이행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함
 - 홍콩 정부는 2016년 3월, OECD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기준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BEPS의 최소요구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힘⁴⁶⁾
 - 속지주의(territorial tax)를 중심으로 한 간소한 과세체계가 홍콩의 장기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기준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12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중순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 정부는 OECD의 최소요구기준에 맞게 홍콩 국내법의 이전가격규정, 상호합의절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고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BEPS Action 5의 유해조세 관련 제도 중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은 다자간 조세협약보다는 양자간 조세협약을 통해 이행할 예정임

- BEPS Action 6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혜택의 제한(a limitation on benefits approach) 보다는 주목적 테스트(a principal purpose test)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 요구 방안의 도입을 제안함
 -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가격기준에 근거한 이전가격 규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행 홍콩 세법에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부 이전가격과 관련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정상 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음⁴⁷⁾
- BEPS Action 14에서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고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APA)가 적절한 기한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현행 홍콩 세법에는 상호합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과세당국의 행정지침에 따라 상호합의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호합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상호합의 절차와 기간을 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호합의절차나 APA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44) Tax Notes International(2016.10.31.) p. 452.

45) OECD의 최소요구기준은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제도 정비, BEPS Action 5의 유해조세 관련 제도의 정비, BEPS Action 6의 조약조약의 남용 방지와 BEPS Action 14의 분쟁해결장치의 마련임

46) Tax Notes International(2016. 3. 7.) p. 819.

47) PwC, *Worldwide Tax Guide—Corporate Taxes 2016/17*, p 863, 2016.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법에 반영할 예정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

■ 한편, 홍콩 정부가 유지해 왔던 기존의 친기업적인 입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콩의 다른 조세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예를 들어, 16.5%의 낮은 법인세율과 다국적기업에 제공하는 조세혜택도 계속 유지할 방침임
- 최근 다국적기업의 자금집중센터가 홍콩에 위치한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⁴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영세율을 제외한 4단계 세율은 5%, 12%, 18%, 28%로 재화와 용역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음
- 공통적으로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재화에 대해 5%가 적용되며, 12%와 18%의 세율은 표준세율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될 예정임
- 최고세율인 28%는 사치품에 적용되는 데 현행 소비세(excise duty) 세율인 31%보다 인하되는 것임
- 담배, 탄산음료, 고급자동차 등에도 28%의 소비세가 부과되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임
-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항목인 식품, 곡물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금 등 일부 물품에 적용될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인도-소비세의 세율체계 공개]

■ 인도 재무장관은 2016년 11월 3일, 인도의 소비세 세율체계가 4단계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⁴⁹⁾

- 인도는 2017년도부터 소비세(Good and Service Tax)를 운용할 예정인데, 재무장관은 소비세위원회(GST Council)에서 이에 대한 세율체계를 5~28% 구간에서 4단계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적용항목만을 공개하였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48)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조세·재정·공공기관 정보→조세·재정·공공기관 동향→해외동향→홍콩 자금집중센터 유치를 위한 법안 공개(2016.1.13).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홍콩-자금집중센터-유치를-위한-법안-공개/523582

49) The Indian Express(<http://indianexpress.com/article/business/economy/gst-council-meeting-rate-structure-arun-jaitley-indirect-tax-4363154/>).



[인도-소득세법상 상각률을 제한하는 공지 발표]

- 인도 직접세위원회는 2016년 11월 7일, 세무목적상 상각비의 상각률을 제한하는 공지를 발표함⁵⁰⁾
 - 이 공지는 소득세법상 기존의 40% 이상의 상각률을 적용하던 기업들에 대해 최대 상각률을 40%로 제한하는 것임
 - 이는 예산안에서 밝힌 법인세율의 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세혜택 폐지의 일환⁵¹⁾으로 신설기업에는 2016년 4월 1일부터, 기존기업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이 공지는 두 가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을 구분하여 상각률을 제한하고 있음
 - 다른 조세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낮은 법인세율(30% → 25%)을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는 2016년 3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에⁵²⁾ 대해서는 상각률 40%로의 제한을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함
 - 이외의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규정된 자산별 상각률을 40%로 대체하고 이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함
 - 변경 전 기존 상각률은 50~100%인데, 50%는 섬유업종의 설비 등, 60%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80%는 에너지절감장치, 재생에너지장치 등, 100%는 수자원공급에 사용되는 빌딩,

공해저감설비 등에 적용되었음⁵³⁾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중국-특정 수출재화에 대한 환급률 인상 통지 공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11월 4일 특정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는 통지를 공개함⁵⁴⁾
 - 수출되는 카메라, 영상카메라, 내연기관, 가솔린, 등유, 디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현행 최대 13%⁵⁵⁾에서 17%로 인상함
 - 이 통지는 수출물품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베트남-국가별보고서 제출과 이자공제 제한에 관한 규정 발표]

- 2016년 10월 3일, 베트남 재무부는 국가별보고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표⁵⁶⁾함
 - BEPS Action 13에서 제안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을 채택함
 - 개정안을 2016년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됨

50) Ministry of Finance(Department of Revenu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Notification No. 103/2016, the 7th November 2016(http://www.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103_2016.pdf).

51) 「조세동향」 15-03호, 「조세동향」 16-03호 참조

52) 「조세동향」 16-03호 참조

53) Ernst & Young, CBDT restricts tax depreciation rate to 40% on all depreciable assets, EY Tax Alert, 11 November 2016, pp. 2~3.

54)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11/t20161104_2451309.html).

55) KPMG, China Tax Weekly Update, Issue 43, November 2016, p. 4.

5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7-november-2016>)

- 2016년 10월 3일 베트남 재무부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소개함⁵⁷⁾
 - 베트남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에서 그 자회사 EBITDA(earnings before tax, interest and depreciation expenses,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를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BEPS Action 4에서 제안한 내용을 채택한 것임
 - 이자비용에는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됨⁵⁸⁾
 - 개정안을 2016년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일본-2015년 상호합의 처리 현황 발표]

- 일본 국세청은 2015년 상호합의 처리 현황⁵⁹⁾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일본은 2016년 6월 말 현재 총 71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60개국과의 조세조약에 상호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015년 상호합의 발생건수는 총 195건, 2015년 상호합의 처리건수는 총 155건, 2015년 상호합의

이월건수⁶⁰⁾는 총 465건임

- 일본의 상호합의 대상국가는 총 22개국⁶¹⁾이며, 이 중 OECD 회원국이 14개국이고 OECD 비회원국이 8개국임

- 평균 상호합의 처리기간은 26개월이었으며, 2014년 평균 처리기간인 22.4개월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짐
 - 이전가격 사전승인⁶²⁾에 관한 평균 상호합의 처리기간은 25.7개월임
 - 이전가격과세 등⁶³⁾과 관련된 평균 상호합의 처리기간은 27.2개월임

- OECD 비회원국과의 상호합의의 경우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3.3개월로 조사되어 OECD 비회원국과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비회원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위한 평균 상호합의 처리기간은 41.4개월이었으며 이전가격과세 등을 위한 평균 상호합의 처리기간은 26개월로 나타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특히 이전가격 사전승인에 관한 상호합의를 위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57)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7-november-2016>)

58) Deloitte, (http://www.dbriefsap.com/bytes/Oct2016_Deloitte-Vietnam_Tax-Alert_Draft-Decree-on-Transfer-Pricing-October-2016-En.pdf)

59)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kohyo/press/press/2016/sogo_kyogij/index.htm

60) 국가별 이월된 사안의 비중은 미국 31%, 중국 18%, 한국 10%, 인도 9%, 영국 6%로 나타남

61) OECD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14개국이며, OECD 비회원국은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8개국임

62) 과세 전 이전가격 산출 방법 등에 대해 관련 국가 사이에 합의하고 납세자가 합의된 방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 방법임

63)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된 후 이전가격, 고정사업장과 원천소득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사이에 합의하는 것임



국제기구

[OECD-상호합의절차 다자간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 OECD는 2016년 10월 20일, BEPS Action 14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다자간 평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공개함^{64) 65)}
 - BEPS 포괄적 협력체계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Action 14의 분쟁해결조정 최소기준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이 중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최소기준 이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과업내용(terms of reference), 평가 방법(assessment methodology), 상호합의절차 통계보고체계(MAP statistics reporting framework), 상호합의절차에서 제출되는 정보와 문서에 대한 지침(guidance o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with request for MAP assistance)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업내용은 Action 14에서 승인된 최소기준을 다자간 평가를 위한 근거로 재해석한 것으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쟁방지, 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 MAP사건의 해결, MAP합의의 이행임
 - 과업내용은 MAP하에서 조약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각국의 법과 행정적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4가지 분야에서 21가지 요소를 기술하고 있음

- 분쟁방지분야의 요소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과 상호 이전가격 사전합의절차의 소급적용임
 - 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분야의 요소는 조세조약에 MAP 조항을 포함, 납세자가 양방계약국의 관할관청에 MAP 절차 신청 허용 또는 MAP 신청을 받은 계약국의 관할관청이 다른 계약국의 관할관청과 상호 협력 또는 통지절차의 수행 등임
 - MAP사건의 해결 분야의 요소는 MAP 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상호합의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 24개월 이내에 MAP사건의 종결 등임
 - MAP합의의 이행은 합의의 의무이행 및 이의 적시성 확보 등임
- 평가방법은 다자간평가와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자간검토(peer review)와 다자간모니터링(peer monitoring)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 다자간검토는 해당 국가의 MAP에 대한 법적 체계와 실질적인 운용에서 최소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 절차는 대상 국가, FTA(Forum on Tax Administration) MAP Forum의 회원, 납세자를 통

64) OECD, (<http://www.oecd.org/tax/beps/g20-oecd-beps-project-advances-tax-certainty-agenda-with-the-launch-of-global-review-of-map-programmes.htm>).

65) OECD, BEPS Action 14 on Mor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Peer Review Document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aris., 2016.

해 정보와 의견을 받아 FTA MAP Forum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CFA(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채택을 통해 보고내용을 공개함

- 다자간모니터링은 1단계의 다자간검토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취약점으로 인식된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는 것임
 - 이 절차도 대상이 다를 뿐 FTA MAP Forum의 승인과 CFA의 채택을 통한다는 점에서 다자간검토 절차와 유사함

■ 상호합의절차 통계보고체계는 적시에 완전한 MAP 통계 보고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임

- Action 14의 최소기준 중 하나는 평균적으로 24개월 이내에 MAP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의 준수를 위해서는 합의된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통계에 근거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 최소기준 자체에도 합의된 보고체계에 따라 적시에 완전한 MAP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여기에서는 통계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MAP 절차와 보고양식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상호합의절차에서 제출되는 정보와 문서에 대한 지침은 각 국가가 MAP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에 포함되어야할 정보와 문서를 제시하고 있음

- 납세자가 적시에 MAP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침에 적절한 관련 정보와 문서가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여기에서는 납세자의 신청을 위한 정보와 관할관청의 검토를 위한 정보와 문서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음
 - MAP사건 담당 관할관청 및 담당자의 정보 등은 납세자의 신청을 위한 것이며, 납세자의 식별정보, 신청사유 등은 관할관청의 검토를 위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OECD-특정국가의 조세 정보교환 이행여부를 평가한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6년 11월 4일, 글로벌 조세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참여국 중 17개국의 조세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 수행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함⁶⁶⁾
- 글로벌 조세포럼은 OECD, 비OECD국의 조세투명성 강화 목적으로 조세정보 교환 관련 상호평가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며, 2009년부터 검토그룹(Peer Review Group; PRG)⁶⁷⁾이 평가계획에 따라 포럼 참여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국제적 기준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음
 - 조세포럼 참여국은 2016년 기준 총 137개국이며 참여국 대부분이 평가계획에 따라 1단계 평

66) OECD,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details-of-global-forum-peer-review-reports.htm>,

IBFD, "OECD offers fast-track Review of Transparency Progress," 2016.11.14.

67) 검토그룹은 2016년 6월 기준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바하마, 버뮤다, 브라질, 버진아일랜드, 사이먼제도, 중국,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저지, 리히슈타인, 몰타, 멕시코, 노르웨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Seychelles,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우루과이)



가를 완료함

- 이번 평가국은 1단계 규정평가 대상국인 페루, 바논, 나우루, 비누아투, 2단계 기준의 이행 여부 평가 대상국인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브루키나파소, 리소토, 모로코, 루마니아, 바베이도스, 이스라엘,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마셜제도, 파나마, 1, 2단계 동시 평가국인 불가리아임
- 평가단계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는 조세 정보교환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평가하고 있음
 - 조세 관련 정보의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정보의 교환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조세 관련 정보로 기업의 주주정보, 거래정보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조세, 규제,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이용 가능한지 평가함
 - 조세정보 접근 가능성은 과세당국이 금융기관, 기업이 보유한 계좌정보, 기업의 이익을 분배 받는 자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평가함
 - 조세정보 교환 가능성은 각 국가의 과세당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 등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평가결과 이번 평가 대상국 대부분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반면 마셜제도, 파나마의 경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파나마는 페이퍼회사(deemed inactive company)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파나마 법인의 회계기록 의무의 부재, 조세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파나마 정부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 평가(non-compliant)'를 받은 것임⁶⁸⁾
 - 파나마에 법인 등기를 한 기업 중 70%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회사의 소유주 및 무기명주식 발행 정보 등이 최신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파나마 과세당국은 실질적으로 조세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해외법인이 아닌 조세 관련 정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마셜제도는 소유주 정보, 회계, 은행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감시,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파나마 거주 외국법인에 의해 무기명주식이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 평가(non-compliant)'를 받은 것임⁶⁹⁾
- 평가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향후 OECD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국가 규정을 개정할 경우 '신속사후평가(Fast Track Review)'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을 수 있음

68) OECD, "Peer Review Report Phase 2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in practice—Panama," 2016.11.04.

69) OECD, "Peer Review Report Phase 2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in practice—Marshall Island," 2016.11.04.

- 이번 평가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사하여 평가한 것으로 파나마가 최근 다자간정보교환(MCAA)에 서명하고, 페이퍼회사 판단을 위한 내국세법의 개정 등 개선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파나마 및 마셜제도는 OECD에서 제공하는 신속사후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EU-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 제안 공개]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10월 25일, 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 제안을 공개함⁷⁰⁾
- 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은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⁷¹⁾ 이중과세 분쟁해결체계(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⁷²⁾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with Third countries)⁷³⁾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⁷⁴⁾
 -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사업을 위한 보다 발전되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EU회

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취약점을 완화하며, 새로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분쟁조정규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들 제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자문과 유럽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채택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가.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⁷⁵⁾

- 집행위원회는 공정성과 경쟁력을 지향하면서 보다 성장친화적인 법인세체계를 갖추기 위해 CCCTB를 재추진하기로 제안함
- 2011년 집행위원회는 CCCTB를 제안했지만 회원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CCCTB가 회원국과 EU 내의 사업에 부여하는 효익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판단하여 다시 추진하게 됨
- CCCTB는 EU국가 내 단일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단일시장으로서의 개선 등 혜택이 있음
- CCCTB는 EU 내의 기업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하나의 규정으로, 다국적기업은 여러 국가의 규

70)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corporate-tax-reform-package_en).

7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Corporate Tax Base &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3 final. &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Corporate Tax Base,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5 final.

72)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the European Union,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6 final.

73)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EU) 2016/1164 as regards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ies,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7 final.

74) 실제 지침은 4개인데 공통법인세기준과 공통연결법인세 기준은 일련의 하나의 내용임

75)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common-consolidated-corporate-tax-base-ccctb_en).



정이 아닌 단일의 EU체계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됨

- 이후 연결과세소득은 각 회원국에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될 것이며, 이는 각 회원국은 내국세법의 세율에 따라 과세됨

• CCCTB는 사업에 대한 단일시장으로서의 개선, 조세회피 방지, EU내의 성장·고용·투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CCCTB는 2단계에 거쳐서 실행될 예정이며, 대기업에 대한 강제의무, R&D에 대한 세제혜택, 안정적인 금융조달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제안은 공통법인세기준(Common Corporate Tax Base: CCTB)과 CCCTB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CCTB지침을 2018년 말까지 채택하고 이후 CCCTB를 2021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⁷⁶⁾

- CCTB는 단일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며, CCCTB는 CCTB가 채택된 이후 연결 및 과세소득 배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기 연결기준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 또한 지침에서는 2천만유로까지의 연구개발비용에 추가적인 50%의 공제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5%의 공제를 제안함

- 설립 5년 이내인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2천만 유로까지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100% 추가공제 할 수 있음

• 부채 편익의 과세에 대응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및 경제안정을 위해 자기자본조달에 대해 타인자본조달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함

- 유리지역의 10년 국채수익률 지표를 기준으로 지분에 대한 가상 이자공제를 부여함

나. 이중과세 분쟁해결체계(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⁷⁷⁾

■ 집행위원회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분쟁조정체계를 조정함

• 이 제안은 이전의 현행 EU조정협약(EU Union Arbitration Convention)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보다 넓은 범위와 체계의 강제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요 취약점들을 보완함

• 지침의 채택이 이루어질 경우 회원국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요구됨

■ 제안은 보다 폭넓은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종결을 위한 명확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이전에는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의 소득배분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지침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함

• 강제적 조정 및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최대 조정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이전에는 조정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

• 그 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명확하고 강제적인 요구사항 명시, 납세자가 해당 국가의 법원에 불

76) Ernst & Young,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corporate tax reform package," *Global Tax Alert*, 25 October 2016, p. 2.

77)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resolution-double-taxation-disputes_en).

복소송하는 것을 허용, 납세자에 대한 통보 및 조정결정의 공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다.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with Third countries)

- 제안은 지난 6월에 합의된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⁷⁸⁾을 제3국까지 확장하도록 하고 있음⁷⁹⁾
 - 이미 채택된 조세회피방지침은 혼성약정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국 간의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이 제안은 이를 회원국과 제3국가의 약정으로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지침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혼성고정사업장불일치, 혼성양도, 이전불일치(imported mismatch), 이중거주자불일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침의 채택이 이루어질 경우 회원국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EU-세율과 조세전략, 부채/자본 영향, 법인세 개혁 모델링 보고서 공개]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조세전략에 따른 실효세율의 영향, 부채/자본 과세방법 개정의 영향, 법인세 개혁모델링을 다루는 조세보고서를 공개함⁸⁰⁾
 - 조세보고서(Taxation papers)는 집행위원회의 조세와 관세 그룹(Commission's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의 분석결과를 널리 알리고 유럽연합의 조세정책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조세보고서는 『예측가능한 실효세율에 대한 조세전략의 영향』, 『자본원가와 실효세율에 부채/자본 편의를 대응하는 조세개혁의 영향』, 『EU에서 법인세개혁의 모델링』의 3가지임

가. 예측가능한 실효세율에 대한 조세전략의 영향(The Impact of Tax Planning on Forward-Looking Effective Tax Rates)⁸¹⁾

- 연구는 EU 28개국 외에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투자의 실효세율에 대한 차별적인 소득이전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제공하고 있음
 - 각 조세전략과 관련된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EU 회원국 및 미국의 국제투자에서 자본원가(cost of capital: CoC, 세전실질요구수익률)와 평균실효

78) 「조세동향」 16-07호 참조

79) Ernst & Young, European Commission releases draft directive addressing hybrid mismatches with non-EU countries, Global Tax Alert, 26 October 2016, p. 2.

80)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publications/taxation-services-papers/taxation-papers_en).

81) European Commission, "The impact of tax planning on forward-looking effective tax rates," Taxation papers, Working Paper N.64-2016, 31 August 2016.



세율(the effective average tax rates: EATR)을 측정함

- 이러한 측정은 2015년 조세법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

- 조세전략은 이자와 사용료에 따라 다른 소득이전의 형태를 고려하여, 국제자본조달에 있어 가장 세제상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CoC와 EATR을 도출함
- 연구에서 고려한 조세전략은 총 7가지로 투자회사를 조세면제국과 EU회원국의 거주자로 구분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사용료 원천을 조세면제국, EU회원국으로 구분하여 조세전략을 분석함
 - 종속회사가 조세면제국의 거주자인 중간지배회사에 의해 소유되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조세전략임(조세전략 1)
 - 조세전략 1과 동일한 상황에서 중간지배회사가 가상의 평균적인 EU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조세전략 2) 및 차입 대신에 혼성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조세전략 4)
 - 가상의 평균적인 EU국가의 법인세율은 23%임
 - 조세전략 1과 동일한 상황에서 차입 대신에 혼성요소가 포함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조세전략 3)
 - 종속회사가 조세면제국에 거주자인 지적재산권회사의 무형자산을 생산에 투입하여 사용료를 지적재산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조세전략 5) 및 가상의 평균적인 EU국가의 거주자인 지적재산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조세전략 6)

• 조세전략 5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회사가 지적재산권제도를 운용하는 EU회원국의 거주자인 경우

- 기본적인 가정에서 지배회사에 의해 조달된 국가간 투자에서 가장 조세 효율적인 결과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세율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조세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기본적인 가정보다 낮은 CoC와 EATR이 나타남
 - 29개국의 모회사 모두에 대해 가장 조세 효율적인 방법을 가정했을 때 CoC 및 EATR의 평균은 각각 5.7%, 21.1%로 나타남(기본시나리오)
 - 중간(금융)지배회사가 조세면제국의 거주자인 경우 CoC의 중간값은 기본시나리오보다 1.6%p 낮은 4.1%, EATR은 4.9%p 낮은 16.2%로 나타남
 - 지적재산권회사가 조세면제국의 거주자인 경우 CoC의 중간값은 기본시나리오보다 0.2%p 낮은 5.5%, EATR은 3.6%p 낮은 17.5%로 나타남

나. 자본원가와 실효세율에 대한 부채/자본 편의를 대응하는 조세개혁의 영향(The Effects of Tax Reforms to Address the Debt-Equity Bias on the Cost of Capital and on Effective Tax Rates)⁸²⁾

- 연구의 목적은 부채비용의 공제와 자본비용의 비공제의 차별적인 과세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 EU 28개의 회원국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분석하고 실효이자율에 이자공제제한의 영향을 파악함

82) European Commission, "The Effects of Tax Reforms to Address the Debt-Equity Bias on the Cost of Capital and on Effective Tax Rates, Taxation papers," Working Paper N.65-2016, 29 March 2016.

- 현행 과세체계에 근본적인 조세개혁 방안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
 - 대응하는 개정의 세수중립적인 실행을 고려하면서 EU회원국의 투자수준에 따른 결과를 예측함
- 두 가지 형태의 투자를 고려하는 Devereux/Griffith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과 이자공제제한 및 조세개혁에 따른 포괄적 법인세제 등의 세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비교함
- 자본원가와 한계실효이자율을 제공하는 모델인 한계투자자 및 평균실효세율(th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을 산정하는 수익성투자자로 나누어 현재와 조세개혁에 따른 상황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함
 -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는 회원국의 실효이자율의 산정과 이자원가의 공제제한 정도를 가정하여 분석함
 - 조세개혁에 따른 상황은 조세중립적인 방법인 포괄적 법인세제(Corporate Business Income Tax: CBIT), 기업자본에 대한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기업 전체자본에 대한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Capital: ACC), 투자자본공제원가(Cost of Capital Allowance: COCA)를 분석함
 - CBIT는 전체 이자의 공제 부인, ACE는 기업자본에 일정비율을 공제, ACC는 기업 전체(자기·타인)자본에 일정비율을 공제, COCA는 ACC에 더하여 주주단계에서 대응하는 공제금액을 과세하는 것임
- 분석 결과 회원국에서 부채에 대한 편이가 만연하고 있으며, 조세개혁 방법 중 ACE와 ACC가 세수중립성과 투자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부채 편이가 EU회원국에서 관측되며 이는 주주단계에서 더 만연함
 - 따라서 부채로 조달된 투자가 지분투자보다 낮은 자본원가와 EATR로 나타나고 있음
 - 회원국은 다른 형태의 이자공제제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공제제한은 일정부분 부채/자본의 중립성을 향상시키나 투자나 지역선택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결론적으로 ACE와 ACC가 투자의 수준 감소를 작게 가져오면서도 세수중립적인 실행 방법으로 나타남
 - CBIT는 세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며, COCA는 부채편의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주주단계의 과세에서 가상의 배당 과세 등의 문제점 등이 존재함
- 나. EU에서 법인세개혁의 모델링(Modelling corporate tax reform in the EU: New calibration and simulations with the CORTAX model)⁸³⁾
- 이 연구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CCTB와 CCCTB의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모든 EU국가에 대해 일반균형모델인 CORTAX를 이용하여 분석함
 - 다양한 형태의 회사, 법인세체계의 주요 요소의 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함

83) European Commission, "Modelling corporate tax reform in the EU: New calibration and simulations with the CORTAX mode," Working Paper N.66-2016, October 2016.



- CCTB, CCCTB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부채편의를 감소시키는 제안인 CBIT·ACE·ACC와 결합하여 분석하고, 강건성 확인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연구 결과 위의 제안은 EU의 GDP와 부를 유지·증진시키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나타남
 - CCCTB 등에서 국가간 손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자본원가를 낮추며 GDP 증가를 촉진함
 - 높은 수준의 공제를 가진 ACE체계는 거시경제 결과에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각 국가들이 세수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인세율의 과도한 인상은 법인세부담을 야기하며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2017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16.9.12.)¹⁾
 - ※ 집행위의 2017년 EU 예산안은 2016년 7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 ※ EU 이사회 상주대표부의 2017년 EU 예산안은 2016년 8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 (규모) 승인기준²⁾ 1563.8억유로, 지급기준 1337.9억유로를 편성
 - (우선순위) 이민위기 대응 및 그 근본원인 해소와

- 경제 회복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초점을 둠
 - (이민위기 대응 및 그 근본원인 해소) 안보 및 시민권 분야 예산을 2016년 대비 4.9%(승인기준), 24.4%(지급기준) 증액하고 대외정책 분야 내 이민 원인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 (경제 회복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부문 예산을 약 9%(승인 및 지급 기준) 증액
- (감액)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집행위가 증액 편성한 항목을 다소 감액
 -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사회는 집행위가 예산을 실제 필요 금액보다 과다 추정했다고 판단
 - 그러나 성과가 좋거나 효과가 파급되기 시작하

〈표 1〉 2017년 EU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

(단위: 십억유로, %)

분야	2017년 이사회 입장		2016년 예산 대비 증가율	
	승인	지급	승인	지급
1. 스마트 ¹⁾ · 포용적 ²⁾ 성장	74.3	56.1	6.36	-15.31
1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0.7	19.0	8.95	8.89
1b. 경제 · 사회 · 지역적 통합	53.6	37.1	5.39	-23.94
2.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58.7	55.0	-6.02	-0.15
3. 안보 및 시민권	4.2	3.8	4.84	24.42
4. 대외정책	9.3	9.2	1.74	-9.22
5. 행정비용	9.3	9.3	3.67	3.7
특수 기관	0.5	0.4	1.78	0.26
합계	156.4	133.8	0.89	-7.02

주: 1) 연구 · 혁신 · 교육 · 훈련 · 에너지 · 교통 · 통신망, 사회 정책 등
 2)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발전 등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 2016.9.12.

1) 출처: EU 이사회, 2016.9.12.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9/12-eu-budget-2017-council-sets-out-its-position>
 2)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임



는 사업은 대체로 유지

- (향후 절차) 의회가 10월 27일까지 이사회 입장을 수정하면 10월 28일부터 3주간 조정과정을 거쳐 11월 17일 이전에 최종 의결할 예정³⁾

■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등 논의(2016.9.9.)⁴⁾

- 그리스 구제금융 이행 상태에 대해 논의
 - ※ EU와 그리스는 2015년 8월, 3년간 860억유로의 제3차 구제금융에 합의. 자세한 내용은 2015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 ※ 2016년 5월 24일 103억유로의 2차분 지급을 승인하고 6월 17일 75억유로를 1차 지급했으며 28억유로는 이행실적에 따라 차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발간예정) 참고
- 그리스 당국은 유로그룹에 출석하여, 1차 검토에서 합의된 선결조건(milestones)을 적기에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 선결조건에는 민영화, 에너지 부문 개혁, 은행 지배구조, 민영화·투자 펀드 설립과 관련된 15개 조치가 포함됨
- 유로그룹은 그리스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차 검토를 준비할 계획
- 유로지역 회원국은 10월 1~15일 사이에 2017년 예산초안을 제출해야 함을 확인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초과적자시정조치 진행과정을 검토
 - 이사회는 두 국가의 초과적자시정조치 불이행

에 대한 벌금안을 취소하고 기한을 10월 15일로 재설정할 바 있음

〈표 2〉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5.6.30.	그리스 제 2차 구제금융 종료
2015.7.8.	그리스, ESM에 구제금융 공식 요청
2015.7.12.-13.	EU 정상회의,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원칙적으로 합의
2015.7.17.	유로그룹, ESM을 통한 구제금융에 원칙적으로 합의
2015.8.14.	유로그룹, 구제금융 MoU 체결
2015.8.19.	ESM 이사회, 구제금융 1차분 260억유로 승인 (은행자본확충을 위한 100억유로 포함)
2015.8.20.	ESM 이사회, 130억유로 지급
2015.11.24.	ESM 이사회, 20억유로 지급
2015.12.23.	ESM 이사회, 10억유로 지급
2016.1.14.	유로그룹,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1차 검토 시작
2016.5.9.	유로그룹, 1차 검토 논의 및 합의문 채택
2016.5.24.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2차분 103억유로 승인
2016.6.17.	2차분 중 75억유로 지급

- EU 통계청(Eurostat),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6.9.6.)⁵⁾
 - 유로존(EA19)의 2016년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EU 28개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3) 8월 31일, EU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시작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60830STO40504/eu-s-2017-budget-parliament-starts-drawing-up-its-position>
 4) 출처: 유로그룹, 2016.9.9.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16/09/09/>
 5) 출처: EU 통계청, 2016.9.6.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7607796/2-06092016-AP-EN.pdf>

- (국가별) 루마니아(1.5%), 헝가리(1.0%)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는 0% 성장을 기록
- (요소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유로존(EA19)에서 0.2%, EU28개국에서 0.4% 증가했고,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각각 0.1%, 0.2%, 총고정자본형성은 각각 0.0%, 0.2%, 수출은 모두 1.1%, 수입은 각각 0.4%, 0.6% 증가

〈표 3〉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5		2016		2015		2016	
	Q3	Q4	Q1	Q2	Q3	Q4	Q1	Q2
벨기에	0.2	0.5	0.2	0.5	1.3	1.5	1.4	1.4
불가리아	0.7	0.7	0.7	0.7	3.1	3.0	2.9	3.0
체코	1.0	0.3	0.4	0.9	4.8	4.0	3.0	2.6
덴마크	-0.6	-0.1	0.7	0.5	0.5	0.1	0.2	0.4
독일	0.2	0.4	0.7	0.4	1.7	1.3	1.8	1.7
에스토니아	-0.3	1.3	0.0	0.3	1.0	1.0	1.8	0.5
아일랜드 ²⁾	3.1	2.3	-2.1	n/a	24.5	27.4	2.8	n/a
그리스	-1.1	0.2	-0.2	0.2	-1.7	-0.8	-1.0	-0.9
스페인	0.8	0.8	0.8	0.8	3.4	3.5	3.4	3.2
프랑스	0.3	0.4	0.7	0.0	1.1	1.3	1.4	1.4
크로아티아	1.4	-0.5	0.6	0.6	2.7	2.0	2.3	2.0
이탈리아	0.3	0.2	0.3	0.0	0.8	1.1	1.0	0.8
키프로스	0.4	0.5	1.0	0.7	2.3	2.9	2.7	2.7
라트비아	0.6	-0.3	-0.1	0.6	3.3	2.3	1.3	0.8
리투아니아	0.5	0.5	0.9	0.2	1.7	2.0	2.6	2.1
룩셈부르크	1.1	1.5	0.7	n/a	5.3	3.6	4.4	n/a
헝가리	0.4	0.9	-0.5	1.0	2.4	2.8	0.9	1.8
몰타	1.4	1.4	0.3	n/a	7.0	6.2	4.9	n/a
네덜란드 ³⁾	0.3	0.2	0.6	0.6	2.0	1.2	1.5	1.8
오스트리아	0.3	0.4	0.6	0.1	1.0	1.3	1.5	1.4
폴란드	0.8	1.3	-0.1	0.9	3.4	4.0	2.6	3.1
포르투갈	0.1	0.2	0.2	0.3	1.4	1.3	0.9	0.9
루마니아	1.6	1.2	1.5	1.5	3.6	3.9	4.2	5.9
슬로베니아	0.3	0.6	0.5	0.5	1.6	2.1	2.1	1.9
슬로바키아	1.0	1.0	0.8	0.9	3.8	4.0	3.7	3.7
핀란드	-0.3	0.4	0.3	0.0	0.1	0.6	1.2	0.4



〈표 3〉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5		2016		2015		2016	
	Q3	Q4	Q1	Q2	Q3	Q4	Q1	Q2
스웨덴	0.8	1.6	0.4	0.3	4.1	4.8	4.1	3.1
영국	0.4	0.7	0.4	0.6	2.0	1.8	2.0	2.2
EA19	0.4	0.4	0.5	0.3	2.0	2.0	1.7	1.6
EU28	0.4	0.5	0.5	0.4	2.1	2.1	1.9	1.8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calendar adjustment for Slovakia.

2) Information on the Irish GDP growth rates is available on the Eurostat website(increasing globalisation).

3)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calendar adjusted data.

출처: EU 통계청, 2016년 2분기 성장률 보도자료, 2016.9.6.

■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등 논의(2016.10.10.)⁶⁾

- (그리스 구제금융)⁷⁾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선결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11억유로 지급을 승인
 - 그리스 당국은 유로그룹 회의에 출석해 민영화, 에너지 부문 개혁, 은행 지배구조 개선, 민영화·투자 펀드 설립 등 15개 선결조건을 이행하였음을 발표
 - 유로그룹은 그리스 당국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11억유로 지급을 승인
 - 유로그룹은 또한 7~8월 중 그리스 당국의 연체금 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9월 자료가 확보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나머지 17억유로를 지급할 계획
- (재정 이슈) 유로지역 회원국이 10월 1~15일 중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12월 5일에 논의할 예정

〈표 4〉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5.6.30.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종료
2015.7.8.	그리스, ESM에 구제금융 공식 요청
2015.7.12.-13.	EU 정상회의,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원칙적으로 합의
2015.7.17.	유로그룹, ESM을 통한 구제금융에 원칙적으로 합의
2015.8.14.	유로그룹, 구제금융 MoU 체결
2015.8.19.	ESM 이사회, 구제금융 1차분 260억유로 승인 (은행자본확충을 위한 100억유로 포함)
2015.8.20.	ESM 이사회, 130억유로 지급
2015.11.24.	ESM 이사회, 20억유로 지급
2015.12.23.	ESM 이사회, 10억유로 지급
2016.1.14.	유로그룹,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1차 검토 시작
2016.5.9.	유로그룹, 1차 검토 논의 및 합의문 채택
2016.5.24.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2차분 103억유로 승인
2016.6.17.	2차분 중 75억유로 지급

6) 출처: 유로그룹, 2016.10.10.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16/10/10/>

7) EU와 그리스는 2016년 5월 24일 103억유로의 2차분 지급을 승인하고 6월 17일 75억유로를 1차 지급했으며 28억유로는 이행실적에 따라 차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 EU 재무장관회의, 기후 변화 대응 등 논의(2016. 10.11.)⁸⁾
 - (기후 변화 대응) 올해 11월 개최될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앞서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결론을 채택⁹⁾
 - 피터 카지미르(Peter Kažimír) 의장은 “기후 변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심각한 세계 변화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EU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공공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역설
 - 선진국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한 데에 EU와 회원국도 분담하기로 결정
 - (조세 투명성)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폭로와 관련해서 조세 투명성에 대한 집행위의 정책에 대한 결론을 채택
 -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지원 등과 관련된 대규모 자금 은폐에 대한 지속적인 방지 노력이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IMF

IMF 협의단, 2016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2016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발표(2016.8. 26.)^{10) 11)}

가. 한국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

- (경제여건) 한국은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2012년 이래로 경제성장세는 약화되었으며,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
 - 급격한 인구고령화, 수출에 과도한 의존, 기업 취약성 증가, 노동시장 왜곡, 생산성 저하, 사회안 전망의 부족, 높은 가계부채 수준, 빈곤 및 부의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
- (경제전망) 향후 경제회복은 온건한 속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 GDP 성장률은 2.7%, 2017년은 3.0%로 개선될 전망
 - 민간소비 증가, 주택시장 활성화, 재정 및 통화 완화정책의 영향이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반면에 수출 하락세와 불확실성 증가가 전망되고, 이는 고정투자 및 채권보유(stockbuild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8) 출처: EU 이사회, 2016.10.11.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6/10/11/>

9)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에 국한해 논의했으며, 일반적 측면은 지난 9월 30일 환경 이사회에서 논의했음

10)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4201.0>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6/cr16278.pdf>

11) 이전 진행 단계별 발표내용은 아래 출처를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MF 협의단, 2016년 연례협의 결과」,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16.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 8월 제2호 「재정동향」, 「IMF 집행위원회, 2016년 연례협의 결과」(16.8.12.)



- (위험요인)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대내적 하방위험 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對)중 수출하락,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외부적 위험 요소로 작용
 -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높은 실업률과 소비 감소, 은행 재무상태에 단기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경제의 영향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중국과의 경쟁도가 높아질 전망. 또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특히 브렉시트의 영향)가 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정책 제언

- (구조개혁)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세를 회복해야 함
 -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함께 한계기업의 금융 및 운영에 대한 재구조화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권고
 - 정부는 국책은행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 금융 감독 당국은 시중은행(commercial bank)이 취약 부문에 노출되는 것을 감독하고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노동시장 개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유인을 낮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함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

한 지원, 해고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성과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경직성을 감소시켜야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보육지원 대상을 잘 설정하도록 하고,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일과 가정의 균형 향상, 일자리 탐색과 훈련을 지원해야 하며, 직업관련 남녀불평등을 제거해야 함

- (생산성 개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개선과 중소기업 사이에 경쟁 촉진이 필요

- 의료, 교육,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경쟁 강화와 탈규제가 생산성의 상당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구조개혁의 역효과가 완화되도록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함

- 이동과 보육에 대한 지원, R&D활동에 유인 제공, 실업급여 등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창조경제 정책 촉진은 기업 구조조정의 역효과를 완화하는 기능을 함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해서 중기적으로 수혜대를 세심하게 선정하도록 하여 소비 및 생산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빈곤·불평등 감소, 지원 재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기 변동에 따른 취약성 해결)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완화하고,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취약성을 제거해야 함

- (재정정책) 경제 약세와 하방위험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되는 상황(추경 예산안 발표 전 언급)이며, 발표된 추경 예산안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 2016.6.28에 발표된 추경의 효과에 대해 2016-17년 동안 GDP에 약 0.3%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 (통화정책)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재의 경제약세 및 하방위험을 고려할 때 통화완화 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 금융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비은행권 대출, 제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
 - 빠른 가계 부채 증가율에 대해 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DTI 60% 상한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므로 30~50% 수준으로 낮출 필요
 - 비은행권 대출이 2016년에 들어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대한 세심한 규제를 지속해야 함(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
 -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기관리와 분리하여 연관기관들 사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ng)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소비 및 투자)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민간의 예방적 저축을 줄여 소비를 진작하며, 기업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효과
- (생산성 및 경제성장) 출생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노동시장 개혁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경상수지) 현재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

■ Fiscal Monitor, October 2016 발표(2016.10.5.)¹²⁾

- 2015년 세계 비금융 부문 *의 총채무는 GDP 대비 225%(152조달러)로 사상 최고치이며, 그중 3분의 2는 민간 채무(약 100조달러)로 민간 채무과잉이 우려됨
 - * 일반정부, 가계, 비금융 기업으로 구성
 - 금융의 세계화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선진국의 민간채무가 증가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금융조건은 신흥국에서도 민간채무가 늘어나게 된 요인

다. 정책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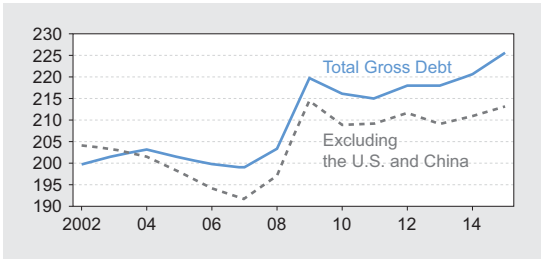
- 권고한 정책들은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 재균형(Rebalancing)

12)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im/2016/02/im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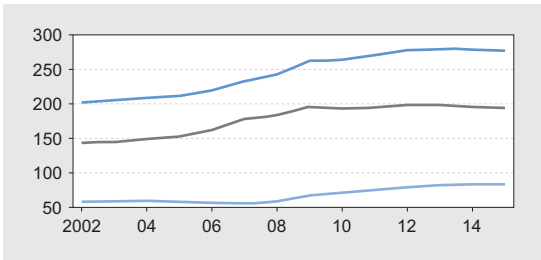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총채무 규모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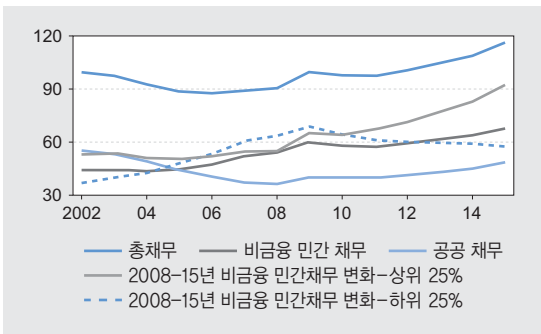
[그림 2] 선진국 총채무

(단위: GDP 대비 %)



[그림 3] 신흥국 총채무¹⁾

(단위: GDP 대비 %)



주: 1) 비금융 민간 채무 변화 상위 25%에 해당되는 국가: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조지아, 말레이시아, 오만, 파라과이, 태국, 터키, 베네수엘라
비금융 민간 채무 변화 하위 25%에 해당되는 국가: 불가리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요르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출처: Figure1,1-1,3, Fiscal Monitor, October 2016.

- 민간 채무과잉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빛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가 결국 줄어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함

• 재정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은 경기대응적 조치에 제약이 있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기간과 정도가 더욱 길고 악화되었던 점에서 민간채무 증가 방지가 필요함

- 특히 신흥국에서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줄임에 따라 금융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선진국의 산출량 손실에 비해 2배가량 더 큰 손실을 초래

- 따라서 건전성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간채무 증가를 억제해야 하고 신중한 재정정책이 중요

• 민간 채무 감소를 위해서는 대상 집단을 정확히 목표로 한 민간 채무 구조조정 지원책을 잘 설계하여 시행해야 함

-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만기 연장을 위한 보조금, 보증, 재정융자)은 자발적인 민간 채무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음

- 공공자금투입,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같은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은행의 자산-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경기대응적 통화정책과 자산-부채 재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구조개혁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여전히 낮은 국가들은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해야 함

- (금융정책) 은행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산평가와 감독 조치 및 자산-부채 재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구조개혁)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시점 간 예산제약을 개선할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 주요 7개국의 201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영국(2.2%)이 가장 높고 일본(0.6%)이 가장 낮음



■ OECD, 2016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16. 8.25.)¹³⁾

- OECD 국가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다소 둔화된 0.3%를 기록
 - G7국가 중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둔화됨
 - (미국) 2016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0.3%임
 - (EU) 2016년 2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감소한 0.4%를 기록
 - ☞ 프랑스(0.0%), 독일(0.4%), 이탈리아(0.0%)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감소
 - ☞ 영국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pre-Brexit)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한 0.6%를 기록
 - (일본) 전분기에는 성장률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 2분기 성장률이 0%로 급감하여 성장률 변동이 큰 모습임

■ OECD, G20 국가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6.9.13.)¹⁴⁾

- G20 국가의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와 동일한 0.7%를 기록
 -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영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직전분기 대비 증가
 - 캐나다, 멕시코, 인도, 호주, 터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됨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유로지역의 성장세도 약화됨
 - 브라질은 직전 분기보다 GDP 감소율이 다소 높아짐
- G20 국가의 201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

■ OECD 국가의 201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6%로 4분기 연속 감소 추세이며, 2013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13) <http://www.oecd.org/std/na/gdp-growth-second-quarter-2016-oecd.htm>

14) 출처: OECD

<http://www.oecd.org/std/na/G20-GDP-Eng-Q216.pdf>



〈표 5〉 G20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2015				2016		차이
	Q1	Q2	Q3	Q4	Q1	Q2	(Q2-Q1)
OECD-Total	0.7	0.4	0.5	0.3	0.4	0.3	-0.1
G20	0.8	0.7	0.8	0.7	0.7	0.7	0
European Union	0.8	0.4	0.4	0.5	0.5	0.4	-0.1
Euro area	0.8	0.4	0.4	0.4	0.5	0.3	-0.2
Argentina	1.7	1.4	-0.1	-0.4	-0.7	-	-
Australia	0.9	0.2	1.0	0.7	1.0	0.5	-0.5
Brazil	-1.0	-2.3	-1.5	-1.3	-0.4	-0.6	-0.2
Canada	-0.2	-0.1	0.5	0.1	0.6	-0.4	-1
China	1.6	1.8	1.8	1.5	1.2	1.8	0.6
France	0.6	-0.0	0.3	0.4	0.7	-0.0	-0.7
Germany	0.2	0.5	0.2	0.4	0.7	0.4	-0.3
India	1.7	2.1	1.8	1.7	2.0	1.4	-0.6
Indonesia	1.2	1.1	1.2	1.3	1.2	1.3	0.1
Italy	0.4	0.2	0.3	0.2	0.3	0.0	-0.3
Japan	1.2	-0.5	0.5	-0.4	0.5	0.2	-0.3
Korea	0.8	0.4	1.2	0.7	0.5	0.8	0.3
Mexico	0.4	0.8	0.7	0.4	0.5	-0.2	-0.7
Russian Federation	-	-	-	-	-	-	-
Saudi Arabia	-	-	-	-	-	-	-
South Africa	0.5	-0.5	0.1	0.1	-0.3	0.8	1.1
Turkey	1.1	1.4	1.0	1.1	0.7	0.3	-0.4
United Kingdom	0.3	0.4	0.4	0.7	0.4	0.6	0.2
United States	0.5	0.6	0.5	0.2	0.2	0.3	0.1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6〉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2014			2015				2016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Total	0.4	0.6	0.6	0.7	0.4	0.5	0.3	0.4	0.3
G20	0.7	0.9	0.9	0.8	0.7	0.8	0.7	0.7	..
EU	0.3	0.4	0.5	0.6	0.4	0.4	0.5	0.5	0.4
Euro 지역	0.1	0.3	0.4	0.6	0.4	0.3	0.4	0.6	0.3
주요 7개국	0.3	0.7	0.6	0.5	0.4	0.4	0.2	0.4	0.2
캐나다	0.9	0.5	0.8	-0.2	-0.1	0.5	0.1	0.6	..
프랑스	0.1	0.4	0.2	0.6	0.0	0.4	0.4	0.7	0.0
독일	-0.1	0.3	0.8	0.2	0.5	0.2	0.4	0.7	0.4
이탈리아	-0.1	-0.1	-0.1	0.4	0.3	0.2	0.2	0.3	0.0
일본	-2.1	-0.6	0.5	1.2	-0.4	0.5	-0.4	0.5	0.0
영국	0.9	0.8	0.8	0.3	0.4	0.4	0.7	0.4	0.6
미국	1.0	1.2	0.6	0.5	0.6	0.5	0.2	0.2	0.3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친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OECD, 2016년 2분기 OECD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6.10.6.)¹⁵⁾
 - (OECD 전체) 2016년 2분기 OECD GDP 성장률은 재고조정(destocking)의 결과로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
 - (성장률) OECD 전체 국가의 2016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전분기 대비 0.1%p 감소
 - (기여도) 민간소비(0.3%p), 정부소비(0.1%p), 순수출(0%p)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전분기와 거의 동일, 투자(0.1%p)는 증가, 재고증감(-0.2%p)은 전분기 대비 감소함
 - (G7 국가) 국가별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과 기

여도 요인에는 차이가 있음

- 영국(EU 탈퇴 국민투표 이전)은 순수출 기여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재고증감 부분의 기여도 증가로 2016년 2분기 성장률이 0.7%로 증가
- 미국은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감소했으나 민간 소비의 기여도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0.4%로 증가
- 독일은 순수출 기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및 정부 소비, 투자의 기여도 감소로 2분기 GDP 성장률이 0.4%로 둔화
- 일본은 순수출과 민간 및 정부 소비 기여도 감소로 GDP 성장률이 0.2%로 둔화

15)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contributions-to-gdp-growth-second-quarter-2016-oecd.htm>



- 캐나다는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개선되었으나 순수출 기여도 급감에 따라 2분기 GDP 성장률이 -0.4%로 감소
- 프랑스는 순수출 기여도가 개선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투자, 재고증감 부문 기여도 감소에 따

- 라 2분기 GDP 성장률이 -0.1%로 감소
- 이탈리아는 순수출 기여도 반등이 재고증감, 민간소비, 투자 부문 기여도 감소와 상쇄되어 전분기 대비 2분기 GDP는 변화 없음

〈표 7〉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 자본형성	순수출	재고증감	GDP 성장률(%)
OECD 전체	Q1 16	0.3	0.1	0.0	0.0	-0.1	0.4
	Q2 16	0.3	0.1	0.1	0.0	-0.2	0.3
캐나다	Q1 16	0.3	0.1	0.0	0.5	-0.2	0.6
	Q2 16	0.3	0.2	0.0	-1.5	0.5	-0.4
프랑스	Q1 16	0.6	0.1	0.3	-0.2	-0.1	0.7
	Q2 16	0.0	0.1	0.0	0.6	-0.8	-0.1
독일	Q1 16	0.2	0.3	0.3	0.3	-0.3	0.7
	Q2 16	0.1	0.1	-0.3	0.6	-0.1	0.4
이탈리아	Q1 16	0.2	0.0	0.1	-0.2	0.2	0.3
	Q2 16	0.0	0.0	0.0	0.3	-0.3	0.0
일본	Q1 16	0.4	0.2	-0.1	0.1	-0.1	0.5
	Q2 16	0.1	0.0	0.2	-0.3	0.1	0.2
영국	Q1 16	0.5	0.1	0.0	0.0	-0.4	0.4
	Q2 16	0.6	0.0	0.3	-0.8	0.6	0.7
미국	Q1 16	0.3	0.0	0.0	0.0	-0.1	0.2
	Q2 16	0.7	0.0	-0.1	0.0	-0.3	0.4

주: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호주¹⁶⁾

1. 예산 · 결산 등

- FY2015-16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발표(2016.9.30.)¹⁷⁾
 - 재정수지는 375억호주달러(GDP 대비 2.3%) 적자로 전년 대비 24억호주달러 개선
 - 재정수입은 3,951억호주달러(GDP 대비 23.9%)로 전년 대비 약 14억호주달러 증가
 - 재정지출은 4,287억호주달러(GDP 대비 26.0%)로 전년 대비 약 11억호주달러 증가
 - 순자본투자는 3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1억호주달러 증가
 - 순채무는 2,964억호주달러(GDP 대비 18.0%)로 전년 대비 470억호주달러 높게 나타남
 - 이는 정부채권(CGS)의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
 - 기능별 지출에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지출이 1,521억호주달러, 지출총액 중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정, 의료, 교통 및 통신 부문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연료 및 에너지, 농업 · 산림 · 어업, 광업 · 제조업 · 건설, 기타 경제 부문이 전년 대비 감소

〈표 8〉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4-15	2015-16
재정수입 (Revenue) (GDP 대비 비율)	380.7 (23.7)	395.1 (23.9)
재정지출 (Expenses) (GDP 대비 비율)	417.8 (26.0)	428.7 (26.0)
재정수지 (Fiscal balance) (GDP 대비 비율)	-39.9 (-2.5)	-37.5 (-2.3)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¹⁾ (GDP 대비 비율)	-37.9 (-2.4)	-39.6 (-2.4)
순채무 (Net Debt) (GDP 대비 비율)	238.7 (14.8)	296.4 (18.0)

주: 1) 현금주의기준, 미래펀드(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5-16 September 2016.

〈표 9〉 기능별 지출(Expenses by Function)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4-15	2015-16
일반공공서비스	24,605	24,209
국방	23,790	26,013
공공질서 및 안전	4,443	4,823
교육	31,101	32,121
의료	65,696	69,301
사회보장 및 복지	147,787	152,124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4,835	4,742
여가 및 문화	3,534	3,462
연료 및 에너지	6,799	6,423
농업, 산림, 어업	2,411	2,259
광업, 제조업, 건설	3,550	3,103
교통 및 통신	6,544	7,083
기타 경제부문	10,046	9,199
기타 목적	82,871	83,829
총지출	417,898	428,691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5-16 September 2016.

16) 호주, 캐나다 매월 「재정동향」 2호에 게재

17) 호주 예결산 홈페이지, <http://www.budget.gov.au/2015-16/content/tbo/html/index.htm>



2. 기타

■ 톨볼 정부, '예산 절감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 의회 제출(2016.8.31.)¹⁸⁾

- 예산절감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에는 24개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5,996백만호주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 호주 총 채무는 4,300억호주달러에 달하며, 매 월평균 약 60억달러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채무 감축 및 예산 균형 회복이 중요한 과제
 - 예산 절감 조치에는 향후 5년간 호주재생에너지청(ARENA) 펀드 8억호주달러 삭감, 가족세 제혜택(FTB) 파트 A,B 및 연방정부 노인의료 카드 등 새로운 복지 수당 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중단, 가족세제혜택 파트 A 기준소득 동결 등이 포함됨

■ 톨볼 정부, 연금 개혁 발표(2016.9.7.)¹⁹⁾

-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연성', '통합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금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계획
 - 연금의 목표(objective) 법제화: '노령연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퇴직 소득 제공'
 - 세금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정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의 납입상한선 2만 5천호주달러로 축소하고, 25만 호주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세금(30%) 부과

- 세금공제 없이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인정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 납입상한선은 연간 10만호주달러로 제한하고, 연금총액이 16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납입허용

- LISTO(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도입: 연소득 3만 7천호주달러 미만의 저소득자에 한해 연간 500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 세금 감면 혜택 등

☞ 이는 저소득 근로자 개인의 세율이 퇴직연금세율보다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재정적 어려움(fiscal challenges)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잘 목표화된(targeted) 세금 감면으로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 수입이 약 31억호주달러 증가하는 효과 기대

■ 통계청, 2016년 6월 분기(June Quarter)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6.9.7.)²⁰⁾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 6월 분기 경제성장은 인프라 프로젝트 등 공공 분야 투자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가계 소비, 공공 및 주거 투자가 광산자원의 투자 감소를 상쇄한 것이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최종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하여 GDP 성장률에 약 0.6%p 기여함

18)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PublicationsAndMedia/Newsroom/MediaReleases/2016/Omnibus-Bill-2016>

19)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Policy-Topics/SuperannuationAndRetirement/Superannuation-Reforms>

20)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0/52AFA5FD696482CACA25768D0021E2C7?Opendocument>

〈표 10〉 2016년 6월 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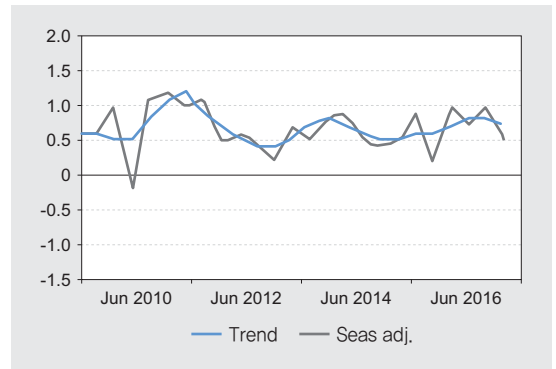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GDP	0.5	3.3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8	3.2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4.5
교역조건 (Terms of Trade)	2.3	-5.4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0.6	2.3

출처: 통계청, 2016. 9. 7.

[그림 4]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캐나다²¹⁾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The Fiscal Monitor(2016년 4월~6월)발표(2016.8.26.)²²⁾
 - FY2016-17 1분기 재정적자는 10억캐나다달러로, 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60억캐나다달러 감소
 - (수입) FY2016-17 1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억캐나다달러(2.1%) 감소한 약 718억캐나다달러로, 이는 주로 기타수입 감소(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에 기인
 -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8%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 ☞ 비거주자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 물품세 및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 (프로그램 지출) FY2016-17 1분기 프로그램 지출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억캐나다달러(8.3%) 증가한 약 664억캐나다달러
- (이자지출) 낮은 평균 실효이자율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약 6억캐나다달러(8.9%) 감소한 약 64억캐나다달러

21) 호주, 캐나다는 매월 「재정동향」 2호에 게재

22) 출처: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fiscmon-revfin/2016-06-eng.asp>



〈표 11〉 2016년 4월~6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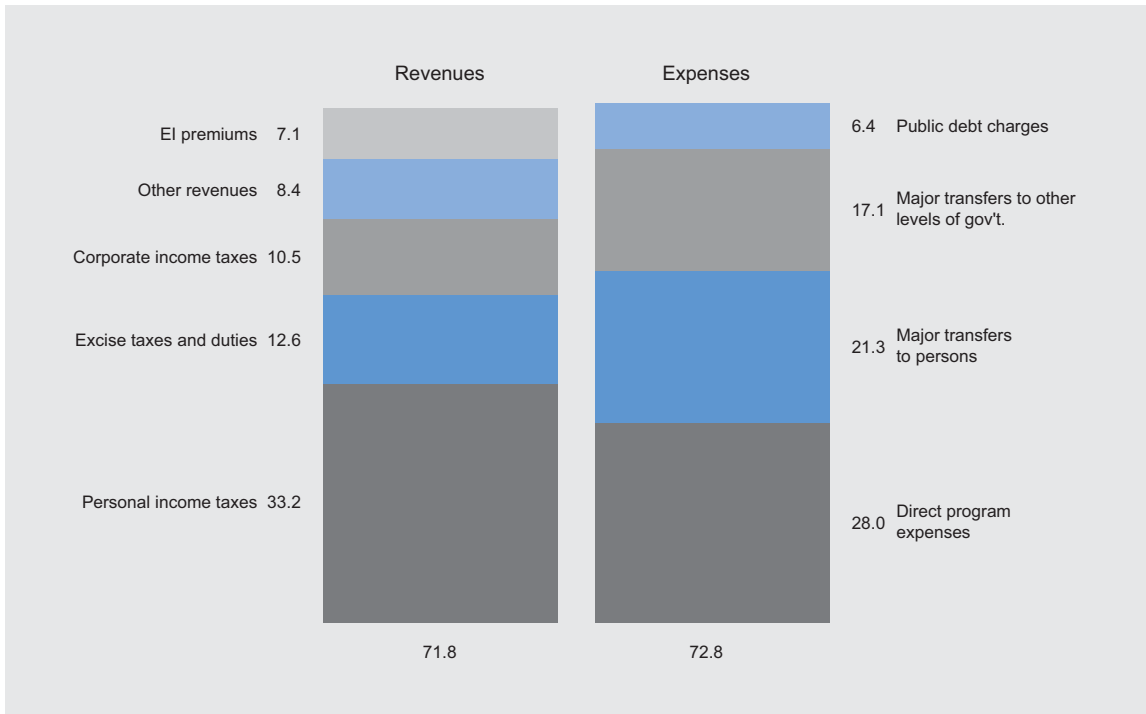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FY2015-16	FY2016-17
수입 (Revenues)		73,315	71,785
지출 (Expenses)	프로그램지출 (Program expenses)	-61,296	-66,396
	이자지출 (Public debt charges)	-7,008	-6,384
재정수지 (Budgetary balance)		5,011	-995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6*.

[그림 5] 세입 및 세출구성(2016년 4월~6월)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6*.

- 재무부, FY2015-16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2016.10.7.)²³⁾
 - FY2015-16 재정적자는 10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재정수지가 29억캐나다달러 악화
 - (총수입) FY2015-16 총수입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955억캐나다달러로, 이는 주로 소득세 수입과 기타 세입 증가에 기인
 - (총지출) FY2015-16 총지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2,964억캐나다달러로 이는 주로 프로그램지출 증가에 기인
 - ☞ 프로그램지출은 주요 이전 지출, 직접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2,708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낮은 평균 실효이자율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6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연방채무) FY2015-16 연방채무는 6,160억캐나다달러이며, GDP 대비 연방채무는 31.1%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 IMF에서 발표한 캐나다의 201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순채무는 26.7%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2. 기타

- 통계청, 2016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6.8.31.)²⁴⁾
 - 2016년 2분기 캐나다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p 감소한 -0.4%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며, 이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하락에 기인
 -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하락과 포트 맥머리(Fort McMurray)의 산불로 인한 원유 생산량 하락 영향을 제외한 2016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1%

〈표 12〉 FY2015-16 결산보고서 주요 내용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FY2014-15		FY2015-16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총수입	282.3	(14.3)	295.5	(14.9)
총지출	280.4	(14.2)	296.4	(15.0)
프로그램지출	253.8	(12.9)	270.8	(13.7)
이자지출	26.6	(1.3)	25.6	(1.3)
재정수지	1.9	(0.1)	-1.0	(0.0)
연방채무 ¹⁾	612.3	(31.0)	616.0	(31.1)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

1) 연방채무는 누적기준이며,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에서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출처: 캐나다 재무부, FY2015-16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23) 캐나다 재무부, <http://www.fin.gc.ca/afr-rfa/2016/afr-rfa-2015-2016-eng.pdf>

24) 출처: 캐나다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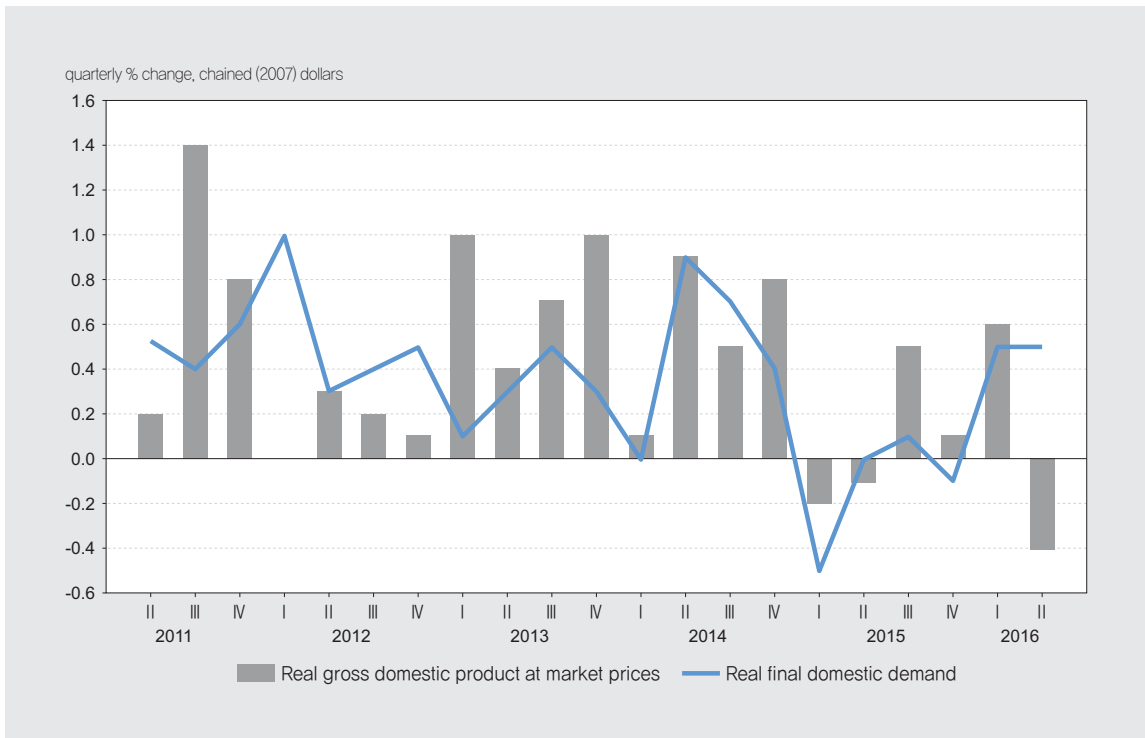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60831/dq160831a-eng.htm?HPA=1&indid=3278-1&indgeo=0>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4.5%로 전분기 대비 6.4%p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품 수출 둔화에 기인

• 2016년 1분기 캐나다의 국내최종수요 성장률은 0.5로 전분기와 비슷한 추세를 유지

[그림 6] 분기별 실질 GDP 및 국내최종수요의 성장률



출처: 캐나다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and expenditure, second quarter 2016.

- 의회예산처(PBO), 연방정부의 아동복지급여에 대한 재정 분석 보고서 발표(2016.9.1.)²⁵⁾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아동복지급여를 대체하는 새로운 아동복지급여

- (CCB: Canada Child Benefit)²⁶⁾를 도입
 - 신규 아동복지급여(CCB)는 기존의 아동복지급여(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

25)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http://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6/CCB/CCB_E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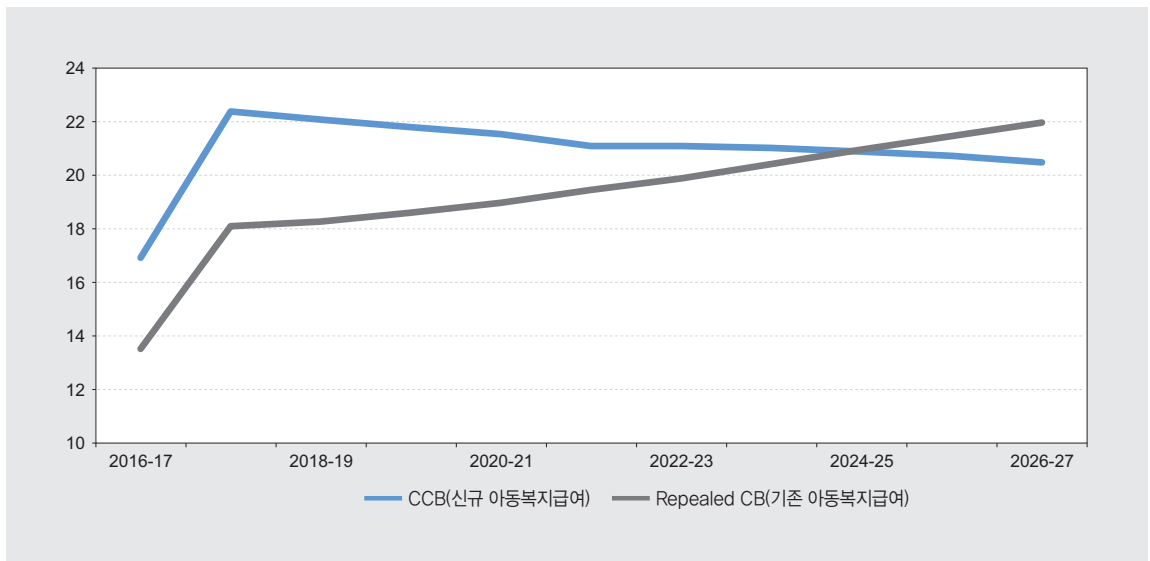
26) 캐나다의 2016년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강화 정책의 하나로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를 도입할 것을 발표

- efit)²⁷⁾을 대체
- 신규 아동복지급여(CCB)는 매달 한 번 지급되고 모든 급여가 비과세로 전환, 신규 아동복지급여(CCB) 도입을 통해 제도가 보다 간편화되고 90% 가족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며 다수의 아동이 빈곤에서 구제될 것
- FY2016-17에는 신규 아동복지제도에서의 비용

- 이 기존 아동복지제도에서의 비용보다 34억캐나다달러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점차 감소하여 FY2020-21에는 25억캐나다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전망
- FY2024-25에는 신규 아동복지제도에서의 비용이 기존 아동복지제도에서의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그림 7] 캐나다 아동복지급여 소요 비용 전망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Analysis of Federal Children's Benefits

- 신규 아동복지제도에서의 평균 아동복지급여는 기존 아동복지제도에서의 평균 아동복지급여보다 1,858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이며, 소득이 30,000캐나다달러 이하인 가정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아동복지급여를 받게 될 전망
- 평균 아동복지급여액의 증가는 신규 제도에서의 전반적인 지출 증가와 수급 가구 수의 감소에 기인

27) 아동복지급여(UCCB)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양육자인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과세급여이며, 자녀양육보조금(CCTB)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양육자인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비과세급여와 저소득층아동에게 제공되는 전국 자녀양육보조금(NCB: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장애아동보조금(CDB: Child Disability Benefit), 기타 관련 지방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



〈표 13〉 소득계층별 아동복지급여 전망

FY2017-18		\$30,000 이하	\$30,001-\$65,000	\$65,001 이상	합계
신규제도	가구 수	880,000	874,000	1,799,000	3,552,000
	총 급여액(십억캐나다달러)	\$8.9	\$7.1	\$6.5	\$22.4
	평균 급여액	\$10,069	\$8,077	\$3,586	\$6,297
기존제도	가구 수	880,000	874,000	2,381,000	4,072,000
	총 급여액(십억캐나다달러)	\$6.9	\$5.2	\$5.9	\$18.1
	평균 급여액	\$7,846	\$5,991	\$2,560	\$4,439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Analysis of Federal Children's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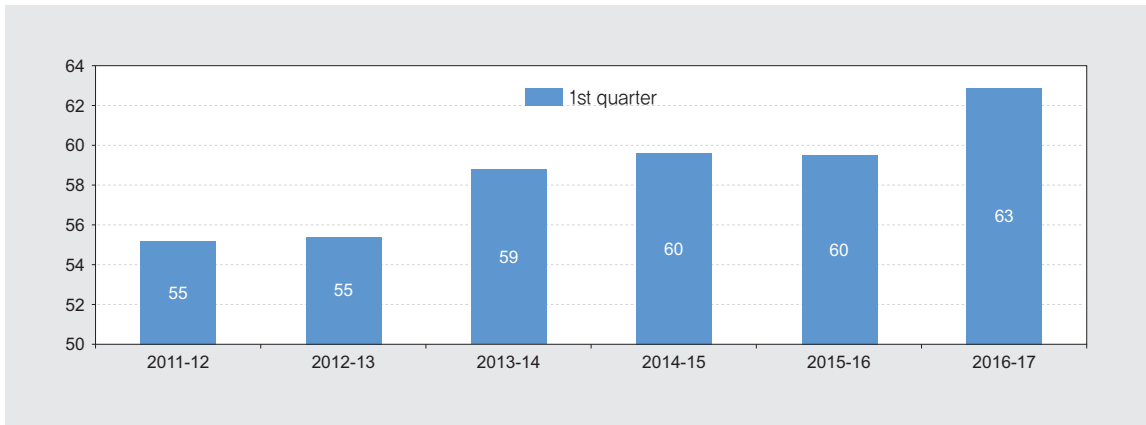
- 의회예산처(PBO), FY2016-17 1분기 지출모니터링 보고서 발표(2016.9.29.)²⁸⁾
 - FY2016-17 1분기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629억캐나다달러로, 최근 5년간 1분기 정부 총지출 중 가장 큰 규모
 - 정부 총지출의 증가는 2016년 예산안 및 FY2016-17 추정안(Supplementary Estimat

es)(A)에서 발표한 인프라 재구축 투자 증가에 의한 직접프로그램지출 증가에 기인

☞ 2016년 예산안에서는 FY2016-17에 주택 및 인프라에 53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이에 따라 FY2016-17 1분기 직접프로그램 지출 중 보조금 및 기여금이 전례 없는 규모인 약 12억달러(전년 동기 대

[그림 8] 매 회계연도 1분기 정부 총지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Expenditure Monitor 2016-2017 Q1

28)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pbo-dpb.gc.ca/en/blog/news/Expenditure_Monitor_2016-17_Q1

- 비 19%) 증가
- 이자지출은 낮은 이자율에 기인하여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작년 2분기에 아동복지급여(UCCB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²⁹⁾가 강화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프랑스

- 청년층의 첫 번째 구직활동에 대한 재정보조금 제도 신설(2016.8.24.)³⁰⁾
 - 기존 프랑스의 청년 고용정책에는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³¹⁾ 첫 고용에 대한 지원(L'aide à la première embauche),³²⁾ 미래고용(L'emploi d'avenir),³³⁾ 세대계약(contract de génération)³⁴⁾이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첫 직장을 찾는 28세 이하 청년층에게 직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부터 4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매월 100~550유로의 재정 지원을 해주는 첫 구직활동 보조금(L'Aide à la recherche du premier emploi, ARPE)을 마련
 - 첫 구직활동 보조금(ARPE)의 수급자격은 직업 관련 자격증인 전문계 바칼로레아, 기술계 바칼로레아, 전문계 국가 자격증 등의 취득자임

- 기존의 고용 관련 수단인 연대축진수당(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³⁵⁾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와 중복수급 불가능하며 견습계약(contract d'apprentissage)과 학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함
- 1억 3천만유로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개혁으로 126,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통계청, 2016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6.8.26)³⁶⁾
 -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력 저하로 1분기(0.7% 성장률)보다 하락한 0.0%로 집계
 - 가계 소비지출(+1.2% → 0.0%)과 총고정자본형성(GFCF)의 급락(+1.3% → -0.2%)으로 내수부문의 GDP 기여도는 전분기(+1.0%p)보다 하락한 +0.1%p를 기록
 - 수출(-0.4% → -0.1%)의 마이너스 성장세 개선과 수입(+0.5% → -2.0%)의 대폭 하락으로 대외무역의 GDP 기여도는 플러스(-0.2%p → +0.6%p)로 전환
 - 재고투자 부문은 운송장비 및 정제된 석유제품의 하락으로 GDP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전분기보다 증가(-0.1%p → -0.7%p)

29) 아동복지급여(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아동복지급여(CCB: Canada Child Benefit)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재정동향」 9월 2호 참조

30)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argumentaire/l-aide-a-la-recherche-du-premier-emploi-entre-en-vigueur-ce-10-aout>

31)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하는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의 보조금을 지급

32)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소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첫 근로자 고용 시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 지급

33) 미취업상태인 16세 이상 25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30세 이하)로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중인 청년을 대상

34) 26세미만의 청년의 정규직 고용과 기존의 57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고용이 유지될 시 연 4,000유로로 최대 3년 동안 고용주(300인 미만 기업 해당)에게 지급

35) 2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없는 실업자나 근로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

36)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26&date=20160826>



〈표 14〉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5 Q3	2015 Q4	2016 Q1	2016 Q2	2015 연간실적	2016 연간전망	
GDP 성장률	0.3	0.4	0.7	0.0	1.2	1.1	
가계소비	0.5	0.0	1.2	0.0	1.5	1.5	
정부소비	0.3	0.5	0.4	0.4	1.4	1.3	
총고정자본형성(GFCF)	0.6	1.2	1.3	-0.2	0.9	2.3	
수출	-0.3	0.7	-0.4	-0.1	6.0	0.4	
수입	1.7	2.5	0.5	-2.0	6.4	1.7	
GDP 기여도	국내수요	0.5	0.4	1.0	0.1	1.3	1.6
	재고투자	0.5	0.5	-0.1	-0.7	0.2	-0.1
	대외무역	-0.6	-0.6	-0.2	0.6	-0.3	-0.4

출처: 통계청(INSEE), 2016.8.26.

■ 2017년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 계획 발표 (2016.9.9.)³⁷⁾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10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소득세 감세 조치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2017년도 예산법안(2016.9.28.)에 포함시킬 예정
 - 2014년부터 시작한 소득세 감세 기초를 2017년에도 지속하여 2014년부터 총 소득세 감세 규모는 60억유로에 도달
 - 2017년 소득세 감세 조치로 소득세가 20% 인하되며 5백만 이상 가구가 가구당 약 200유로(약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소득기준은 독신자 월 1,700유로 미만, 부부 월 3,400유로 미만
 - 가정에서 근로자 고용 및 개인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구에 대해

고용비의 50%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30,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 2015년 말부터 개인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장 부담금 인하분을 시간당 75센트에서 2유로로 확대, 그러나 연금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혜택 수급 불가
- ☞ 따라서 정부는 2017년 10억유로를 투입하여 모든 가구의 개인서비스 지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
- 2017년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율을 인상(6%→7%)하여 33억유로의 기업 세금부담 완화
- 현 33.33%의 법인세율을 2017년 중소기업에

37) 프랑스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nouvelle-baisse-de-l-impot-sur-le-revenu-en-2017-pour-plus-de-5-millions-de-foyers>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gouvernement-annonce-baisse-impot-sur-revenu-et-sur-societes>

계만 28%로 인하,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대해 28%의 법인세율 적용

- 미셸 사팽(Michel Sapin)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재정적자 전망치인 GDP 대비 3% 미만 달성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 피력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 연방내각, 2019년까지 주·지방정부에 20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법안 승인(2016.9.14.)³⁸⁾
- 2016-2018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해소 및 사회통합비용(Kosten der Integ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과 구직자들에게 주거·난방비를 통합적으로 지원
 - 2016~2018년 동안 주정부에 사회통합비용 20억유로를 매년 지원하고, 2017년, 2018년에 각각 5억유로를 주택기금(Wohnungsbau Mittel)에 지원
 - 2018년에는 지방정부에 50억유로를 추가 지원

할 계획

- 에너지경제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2016.10.7.)³⁹⁾

※ 가을경제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에너지경제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수치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 (경제성장) 브렉시트 등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및 저환율 등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은 2016년 1.8%, 2017년 1.4%로 전망
 - (수출) 세계무역 둔화 추세로 2015년 5.2%에서 2016년 2.3% 급감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강건한 노동시장이 소득증가로 연결되면서, 가계최종소비비는 2016년 1.7%, 2017년 1.3%로 전망
 - (건설투자) 유로화의 저환율, 주택수요 및 공공투자의 증가로 2016년 3.3%, 2018년 3.5%로 높게 전망
- (고용인구) 안정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난민이주의 증가로 고용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5〉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15.1Q	2015.2Q	2015.3Q	2015.4Q	2016.1Q	2016.2Q
전분기 대비	0.2	0.5	0.2	0.4	0.7	0.4
전년 동기 대비	1.2	1.8	1.7	1.3	1.9	1.8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통계청, Press release, 2016.8.12.

38) 독일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6/09/2016-09-14-PM18-integration-entlastung-laender-kommunen.html>

39) 에너지경제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6.10.07.

<http://www.bmwi.de/DE/Presse/pressemitteilungen,did=785008.html>



〈표 16〉 가물경제전망 주요수치

(단위: %)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7	1.8	1.4	1.6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2.0	1.7	1.3	1.3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2.7	3.7	2.3	1.7
총투자 증가율	1.7	2.5	2.0	3.1
설비투자	3.7	1.4	0.7	2.9
건설투자	0.3	3.3	2.7	3.5
수출 증가율	5.2	2.3	2.1	3.9
수입 증가율	5.5	2.5	3.0	4.9
고용인구(백만 명)	43.1	43.6	44.0	44.3
실업인구(백만 명)	2.79	2.69	2.66	2.63

출처: 에너지경제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6.10.07.

- 연방내각,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자녀면세액 기준, 자녀수당, 자녀추가수당인상 채택(2016.10.12.)⁴⁰⁾
 - 누진소득세율(kalte Progression)완화와 연방정부의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자에게 매년 63억유로의 면세혜택을 위한 인상
 - 기본소득면세액 기준은 종전 8,652유로에서 2018년 9,000유로로, 자녀면세액 기준은 4,608유로에서 4,788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
 - 자녀수당 및 자녀추가수당⁴¹⁾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

〈표 17〉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등의 인상

(단위: 유로)

	종전	2017	2018
기본소득면세액	8,652	8,820(1.9)	9,000(2.0)
자녀면세액	4,608	4,716(2.3)	4,788(1.5)
자녀수당 ¹⁾	190/196/221	192/198/223 (1.0)/(1.0)/(0.9)	194/200/225 (1.0)/(1.0)/(0.9)
자녀추가수당	최대 160	최대 170 (6.25)	

주: 1) 해당수치는 첫째·둘째 자녀/셋째자녀/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를 의미
2) () 안 수치는 증감률

출처: 연방정부, Aktuelles, Pressemitteilungen, 2016.10.12.

40) 연방정부, Aktuelles, Pressemitteilungen, 2016.10.12.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6/10/2016-10-12-steuerentlastung.html>

41)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가정에서 별도로 받는 수당

■ 통계청, “2015년 공공부조 지출* 4.8% 증가” 발표 (2016.10.10.)⁴²⁾

※ 독일의 공공부조는 사회법전 SGB XII에 근거하며, 3장 생계 원조, 4장 노인·장애인 기본보장, 6장 장애인 통합지원, 7장 수발(요양) 원조 등으로 구성

- 독일의 공공부조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지출규모는 277억유로로 2014년 대비 4.8% 증가
 - (부분) 장애인 통합지원 지출 총액은 56.3% (156억유로)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지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 대한 지출규모는 71억유로,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Nordrhein-Westfalen)은 47.4억유로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각의

- 세출을 통해 1억총화약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간병 환경 정비, 저소득층 현금지급,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구마모토 지진피해복구 등을 시행할 예정
- 재원은 건설국채 2조 7,500억엔 발행 및 국채 이자지급비 감액, 구마모토 지진피해 복구 예비비로 감당할 예정
- 2016년도 1차추경은 5.17일에 하였으며 구마모토 지진 복구지원을 위해 7,780억엔의 예산을 편성⁴⁵⁾
 - 2000년 이후 추경 횟수를 조사해봤을 때 일본 정부는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2010년 1회, 2011년 4회, 2012년 1회, 2013년 1회,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 일본

1. 예산·결산 등

■ 재무성, 2016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각의결정 (2016.8.24.)^{43) 44)}

- 일본정부는 2016년 제2차 추경예산을 총 4조 5,221억엔으로, 일반회계 4조 1,443억엔, 동일본 대지진 복구 특별회계 4,023억엔 등으로 구성해

42) 연방 통계청, Pressemitteilungen, 2016.10.10.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6/10/PD16_363_221.htm

43)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2号)・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會計補正予算等の概要」, 2016.8.24.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6/hosei0824.html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6/sy280513/hosei280824a.pdf

44) (추경근거) 재정법 제 29조에 따르면 내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절차를 준수해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예산작성 후 발생사유가 특별히 필요한 경비의 지출(당해연도의 국고 번 등에 포함시킴)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해 예산을 추가할 경우
- 예산이 만들어진 후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45)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표 18〉 FY2016 2차 추경예산 프레임(일반회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세출총액	41,143	1. 건설국채	27,500
(1) 1억총활약사회	7,119	2. 세외수입	2,844
(2)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14,056	(1) 공공사업비 부담금 수입	1,061
(3) 브렉시트 대응 및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역경제지원	4,307	(2) 재정투융자 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1,244
(4) 구마모토 지진 등의 복구 및 방재대응	14,389	(3) 중소기업·유통 등 합리화 촉진 기금	539
(5) 동일본 대지진 복구 특별 회계로 이월	1,272	3. 전년도잉여금수입	2,525
2. 기본경비 감액	△8,275		
(1) 국채이자지급비	△4,175		
(2) 구마모토 지진복구 예비비	△4,100		
합계	32,869	합계	32,869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경제대책관련 중앙·지방세출: 7.5조엔 중 국비: 6.2조엔

(중 일반회계) 2016년도 3조 9,871억엔, 국고채무부담행위 1,493억엔, 2017년도 이후 0.3조엔

(중 특별회계) 2016년도 5,350억엔(동일본대지진 특별회계, 노동보험 특별회계 및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 2017년 이후 0.2조엔, 2017년 이후 보험료 경감 1조엔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2号)フレーム」, 2016.8.24.

〈표 19〉 2016년 일반회계 및 동일본대지진 특별회계 추경예산

(단위: 억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8.2각의)에 따른 2016년도 추가 국비	
1. 1억총활약사회 실현가속	7,137
2.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1조 4,056
3. 영국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 대비 및 중소기업 지원	4,340
4. 구마모토 지진 및 동일본 대지진 복구·방재 대책 등	1조 9,688
합계	4조 5,221

주: 1. 동일본대지진 복구 특별회계 5295억엔, 노동보험특별회계 52억엔, 자동차안전특별회계 2억엔의 추가지출

2. 재정투융자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 지원기구 등에 3조 6,022억엔(일반회계 세출 중복분을 제외하면 3조 3,432억엔)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2号)・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會計補正予算等の概要」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y280513/hosei280824d.pdf

2. 기타

■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16.7.26.)⁴⁶⁾

*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은 연 2회 발표하며 2016년도 첫 번째 전망은 2016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 (경제전망)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추진으로 고용·소득환경 및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완만한 회복기 조 지속
 - 실질성장률 2016년도 0.9%, 2020년도 2.1% 전망
- (재정전망)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

자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5.0%로 전망되며, 채무잔고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근무방식 개혁 실현 논의(2016.9.30.)⁴⁷⁾

- 아베총리는 제 1차 근무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개최해 실현방안 수립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내 실행계획을 정리,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언급
 - (배경) 근무방식 개혁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개혁

〈표 20〉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단위: %, 조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재생 가정	실질GDP 성장률	-1.0	0.8	0.9	1.2	1.9	2.0	2.1	2.3	2.3	2.4	2.4
	명목 GDP 성장률	1.5	2.2	2.2	2.2	3.3	3.8	3.9	3.7	3.8	3.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9	0.2	0.4	1.4	2.0	2.5	2.5	2.0	2.0	2.0	2.0
	완전실업률 ¹⁾	3.5	3.3	3.2	3.1	3.1	3.1	3.1	3.2	3.2	3.2	3.2
	명목장기금리	0.4	0.3	0.3	0.8	1.7	2.7	3.4	3.8	4.1	4.2	4.4
	기초재정수지 ²⁾ (명목 GDP 대비%)	-4.1	-3.2	-3.1	-2.2	-1.9	-1.6	-1.0	-0.5	-0.2	0.1	0.6
	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5.8	-4.9	-5.0	-4.0	-3.7	-3.6	-3.4	-3.5	-3.9	-4.2	-4.5
	채무잔고 ³⁾ (명목 GDP 대비%)	195.4	198.6	198.7	197.7	194.7	190.8	186.8	183.2	180.0	177.0	174.2

주: 1) 완전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나 직업이 생기면 바로 취업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에서 완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중 국채비 및 결산부족분 보전 소급액을 제외한 것
 3)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는 복구·부흥대책 비용과 재원금액 제외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6.7.26.

46)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6.7.26.

<http://www5.cao.go.jp/keizai3/econome/h28chuuchouki7.pdf>

47)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働き方改革実現会議の状況」, 2016.9.30.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930/shiryo_04.pdf



을 통해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책

- (9개 항목)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임금인상, 장시간 근무 해소, 이직·재취업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여성·청년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 고령자 취업촉진, 질병·육아·간병과 일의 병행, 외국 노동자 채용에 관한 검토 진행사항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영국

- 통계청,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 (2016.9.30.)⁴⁸⁾
 -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0.7%로 1분기 대비 0.3%p 증가, 7월 발표된 잠정치(0.6%) 대비 상향 조정
 - 2013년 1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1%이며 연율 기준으로는 2.7% 예상
 - 기업투자는 기존 잠정치인 0.5%보다 높은 1%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부분 또한 0.6%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당초 예상치인

0.5%를 상회

- 통계청은 EU 탈퇴 국민투표가 영국의 2분기 GDP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거의 없으며, 이와 같은 GDP 성장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7년 3월말 이전 EU 탈퇴 협상 개시(2016.10.2.)⁴⁹⁾

- 메이 총리(Theresa May)는 보수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발동시킬 것이라고 발표
 - 메이 총리는 EU 탈퇴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 50조’를 연내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으며, EU 탈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2017년 회기 내에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법안(Great Repeal Bill)’을 상정할 계획

■ 국가인프라위원회(NIC) 권한 강화(2016.10.12.)⁵⁰⁾

- 2017년 1월부터 국가인프라위원회(NIC;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에 자체적인 예

〈표 21〉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4		2015				2016	
	Q4	Q1	Q2	Q3	Q4	Q1	Q2	
실질GDP 성장률	0.8	0.3	0.5	0.3	0.7	0.4	0.7	

출처: 영국 통계청, Quarterly National Accounts: Quarter 2

48)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quarter2aprtjune2016/pdf>

49) 영국 보수당, <http://press.conservatives.com/post/151378268295/prime-minister-the-good-that-government-can-do>

50)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infrastructure-body-to-help-build-better-britain-for-everyone>

산권 부여

- 2015년 10월 재무부는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자체예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자문기구로서의 독립적, 영구적인 성격이 미흡하였음

- 국가인프라위원회는 영국 전지역에 걸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자문 및 감독 기능을 수행
 - 위원회는 장기 인프라 수요와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를 담은 인프라 평가보고서(NIA;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를 매 회기마다 작성
 - 공모형식인 'Call for idea'를 통해 인프라 관련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권고를 포함한 심층연구 결과를 정부에 전달
 - 위원회가 권고한 인프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의 시정여부 및 진행과정을 감독하며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 영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 인프라에 1,000억파운드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국가인프라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미국

1. 예산·결산 등

- 미 의회예산처(CBO), FY2016~2026 예산 수정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6~2026) 발표(2016.8.23.)⁵¹⁾
 - (경제 전망) 2016년 상반기의 GDP 성장은 1% 수준으로 미약하였으나, 향후 몇 개월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6년 전체적으로 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2017년 2.4%)
 - 금년 하반기의 빠른 성장세는 투자 증가의 주요 저해요인이었던 오일 가격의 하락 등이 진정세(subside)로 돌아선 것에 기인
 - 2018년부터는 경제성장이 느려질 것으로 보이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잠재성장치와 근소

〈표 2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비교

(단위: %)

경제전망	2016		2017		2018		2016~2020	
	1월전망	수정	1월전망	수정	1월전망	수정	평균 성장률	
							1월전망	수정
실질GDP 성장률	2.7	2.0	2.5	2.4	2.1	2.2	2.2	1.9
CPI-U	1.7	1.8	2.4	2.3	2.4	2.3	2.3	2.2
실업률	4.7	4.8	4.4	4.5	4.6	4.6	4.7	4.7

주: 실업률(calendar year 기준)을 제외한 경제지표의 각 년도는 fiscal year 기준임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51) <https://www.cbo.gov/publication/51908>



한 차이(below but remain close to)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의 경우, 2017년 4분기에 CBO 추정치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재정적자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GDP 대비 3.2%(5,900억달러)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FY2026년에는 GDP 대비 4.6%에 근접할 전망

- (세출) 2016년 연방지출은 약 3.9조달러로 GDP 대비 21.1%로 전망. 2017년 연방지출은 처음으로 4조달러를 초과하면서 GDP 대비 21.0% 전망

☞ 재정지출은 향후 2019년까지 GDP 대비 21% 수준에서 안착할 것으로 전망

☞ 연방예산의 주요 3대 지출 구성요소인 ① 보건 · ② 사회보장 · ③ 이자 지출은 2026년까지의 지출 증가분 중 총 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세입) 2016년 연방세입은 GDP 대비 17.8% (3.3조달러), 2017년 연방세입은 전년(추정)대비 3.9% 증가한 3.4조달러로 GDP 대비 17.9% 전망

☞ 주요 세입항목 전년 대비 증가분: 개인소득세(1%), 급여세(5%), 법인세(13%)

〈표 23〉 미국 재정전망(CBO 수정 vs OMB MSR)

재정 전망		실적 2015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수정	18.2	17.8	17.9	18.1	18.1	18.2	18.2	18.3	18.3	18.3	18.4	18.5
	OMB		17.9	19.1	19.7	19.7	19.9	20.1	20.0	19.9	20.0	20.0	20.1
지출	수정	20.7	21.1	21.0	20.7	21.2	21.6	21.9	22.4	22.4	22.3	22.7	23.1
	OMB		21.1	21.4	21.3	21.8	21.9	22.1	22.4	22.4	22.2	22.5	22.7
재정 적자	수정	2.5	3.2	3.1	2.6	3.0	3.3	3.6	4.1	4.1	4.0	4.3	4.6
	OMB		3.3	2.3	1.7	2.1	2.0	2.1	2.4	2.4	2.2	2.5	2.6
비정부부문 소유	수정	73.6	76.6	77.2	77.0	77.5	78.4	79.3	80.5	81.7	82.7	84.0	85.5
	OMB		77.0	77.1	76.0	75.5	74.8	74.3	74.0	73.7	73.2	73.0	73.0

출처: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16 to 2026, CBO, Aug. 2016.

Fiscal Year 2017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7.15.

2. 기타

■ 미 하원 예산위원회, '예산 · 경제의 위험 증가(Growing Risks to the Budget and the Economy)'란 주제로 토론회(hearing) 개최(2016.9.14.)⁵²⁾

• 프라이어스(Price) 예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미국 국가채무가 19조달러에 달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황이 심각함을 언급

* CBO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6조달러의 추가 차입(borrowing)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비정부부문소유채무는 경제규모의 85%(2015년 기준, 73.7%) 이상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음

- 프라이어스 위원장은 현 국가채무 수준은 이미 지속가능 수준을 넘어섰기에 현 이자수준이 낮다고 더 많이 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비판

☞ 현재 당면한 재정의 최대 위협 항목은 안보 · 보건 지출이나 R&D가 아닌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이며 2026년에는 국방비 규모와 맞먹는 7,120억달러의 이자지출이 예상됨을 언급

- 한편, 재정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vital) 요소로 경제성장을 언급

☞ 현재의 실업률이 5% 이하로 하락했으나 완전고용상태와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언급하면서 친 성장(pro-growth)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을 당부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52) <http://budget.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4344>



| 정책 흐름 |

-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
- 2016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본 자료는 2016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재무건전성 제고노력,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17년 중점방향 제시
- ◇ 예산편성지침 준수상황을 점검 · 관리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이행을 뒷받침

- 정부는 12.8(목)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였다.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음

- '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의 강화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15년 194%)

* '16~'2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16)184 ('17)174 ('18)165

- 아울러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 먼저, 총인건비 인상률은 '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 '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3.5%로 설정하되,
 -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15 · '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1.5%(5.0%)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1.0%(4.5%) 산업평균 110% 이상이며 공공
기관 평균 120% 이상: Δ 1.0%(2.5%)

-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 한편,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하여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 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6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7년 예산안이 1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3조원, 총지출은 △0.2조원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0.3조원 감소
-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투자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1만개 이상) •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0.5조원), 누리과정(+8,600억원)
경제활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0.4조원)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65억원)
국민 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핵심전력 증강(+0.1조원), 동원훈련보상비(+3천원/명) •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

- 정부는 12.6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재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I. 재정총량

- ① 총수입 및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 총수입은 정부안(414.5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한 414.3조원
 - 국세 +0.5조원, 기금수입 △1.0조원, 세외수입 +0.2조원
 - 총지출은 정부안(400.7조원) 대비 △0.2조원 감소한 400.5조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 분야 0.4조원 증액
- ②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 국가채무는 682.4조원(GDP 대비 40.4%)으로 △0.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16년(A) ¹⁾	'17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C-B)	전년 대비(C-A)	%
■ 총수입	391.2	414.5	414.3	△0.3	+23.0	5.9
■ 총지출	386.4	400.7	400.5	△0.2	+14.1	3.7
■ 국가채무	644.9	682.7	682.4	△0.3	+37.4	5.8
(GDP 대비, %)	(40.1)	(40.4)	(40.4)			

주: 1) 분예산 기준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① 일자리 지원 및 처우개선

-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7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
 - * 인력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에 반영(500억원)
- **(취업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20 → 22만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 3,907 → ('17안) 4,400 → ('17최종) 4,662억원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1,525명)
 - * 장애인일자리 지원: ('16) 707 → ('17안) 676 → ('17최종) 814억원
- **(보조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129억원) 및 교사수당 인상(20 → 22만원)

②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확대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증액
 - * 생계급여: ('16) 32,728 → ('17안) 36,191 → ('17최종) 36,702억원
 -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 * 긴급복지: ('16) 1,013 → ('17안) 1,013 → ('17최종) 1,113억원
-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16) 5,483 → ('17안) 5,550 → ('17최종) 5,600억원

* 장애수당(기초): ('16) 695 → ('17안) 736 → ('17최종) 781억원

-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3 → 6.5 만명) 및 지원단가 인상(9,000 → 9,240원/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16) 5,009 → ('17안) 5,165 → ('17최종) 5,461억원

- **(어르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01억원)
- **(농민)**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확대(+0.5조원)

* 80kg당 쌀값: (정부안 기준)143,789원 → (11.25일 기준)128,496원

** ('16) 7,193억원 → ('17안) 9,777억원 → ('17최종) 1조 4,900억원

- 농협 사업구조개편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0.5조원의 현물출자 계획을 이자보전으로 전환·지원(77억원)

* 현물출자 5천억원(도로공사 주식) → 농협금융채권 5천억원(정부 이자보전)

③ 보육·교육·주거·의료서비스 확충 및 부담경감

- **(보육)** 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150 → 180개) 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7.5만원/月) 지원
- **(교육)**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비 일부 지원(+8,600억원)
- **(주거)**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 1천호 확대(1.1 → 1.2만호, +950억원)
 - * 다가구매입임대: ('16)9,263 → ('17안)10,028 → ('17최종)10,978억원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전 상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예산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6) 310 → (’17안) 100 → (’17최종) 250억원

- **(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증액

* 의료급여 경상보조:
(’16) 47,224 → (’17안) 47,468 → (’17최종) 47,992억원

2 경제활력 회복

1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미래성장동력 창출)**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확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

- **(산업경쟁력 강화)**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창출을 위해 ICT·SW융합 연구개발 지원 확대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16) 67 → (’17안) 130 → (’17최종) 142억원

2 기업해외진출 및 소상공인 지원

- **(해외진출)** 해외진출기업의 CSR* 경험 사업을 확대(+27억원)하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을 추가 조성(17 → 19개소) 하고,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연구(신규 10억원) 실시

* 청년몰 조성:
(’16) 127.5 → (’17안) 127.5 → (’17최종) 142.5억원

3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 **(SOC)** 철도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0.4조원 확대

* 서해선 복선전철:
(’16) 2,937 → (’17안) 5,183 → (’17최종)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16) 1,512 → (’17안) 2,726 → (’17최종) 2,876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6) 850 → (’17안) 1,561 → (’17최종) 2,211억원

- **(지방재정확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안 대비 1,965억원(교부세 +957, 교부금 +1,008) 추가 확충

- **(농어촌지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포장, 온라인 직거래 등 지원 확대

* 농산물마케팅지원:
(’16) 27 → (’17안) 27 → (’17최종) 66억원
축산자조금: (’16) 250 → (’17안) 250 → (’17최종) 260억원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도:
(’16) 25 → (’17안) 23 → (’17최종) 28억원

- **(올림픽·관광)**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문화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확충, 올림픽특구 경관개선 등(+361억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신규):
(’17안) 61 → (’17최종) 86억원
3대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6) 1,743 → (’17안) 1,569 → (’17최종) 1,696억원

3 국민 안심

1 군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 처우개선 등

- **(군 방위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핵심전력 증강

- Kill-Chain, KAMD(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

기 구축(+0.1조원)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16) 15,212 → (’17안) 15,784 → (’17최종) 16,976억원

• (치우개선 등) 예비군 훈련 여건 및 의료장비 개선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7천원→1만원) 인상 및 동원훈련생활관 냉난방기 전체 설치(신규 +27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 28 → (’17안) 29 → (’17최종) 41억원

- 내구연한을 초과한 군 표준형구급차(27대)를 신형으로 교체

* 표준형구급차 교체:

(’16) 5 → (’17안) 22 → (’17최종) 51억원

② 지진 등 재난대비 및 치안강화

• (지진관련 대책)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소요 반영(+1,403억원)

-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진대응체계 등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지원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6) 6 → (’17안) 6 → (’17최종) 21억원

지진 대비 인프라구축:

(’16) - → (’17안) 12 → (’17최종) 20억원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지원을 통해 조기경보체계 강화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6) 81 → (’17안) 94 → (’17최종) 203억원

- 국가어항, 국도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 국가어항(내진보강):

(’16) 50 → (’17안) 40 → (’17최종) 90억원

국도교량, 철도(내진보강):

(’16) 541 → (’17안) 1,133 → (’17최종) 1,712억원

• (치안강화) 중국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를 지속 지원하고, 단속공무원 보호 장비 확충(+1.7억원)

* 어업지도관리(지도선 건조):

(’16) 368 → (’17안) 921 → (’17최종) 1,043억원

③ 국민생활환경 개선 및 위해·위험요인 대응

• (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급속, +280개소)

* 대기개선 추진대책:

(’16) 981 → (’17안) 1,183 → (’17최종) 1,229억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16) 211 → (’17안) 275 → (’17최종) 312억원

• (위해·위험요인 대응) 생활위해요인 및 화재위험 대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흡입독성 실험기반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확대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16) 155 → (’17안) 301 → (’17최종) 351억원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16) 376 → (’17안) 388 → (’17최종) 394억원

-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자금을 증액하고(+200억원), 화재안전 설비 설치·점검 확대(+5만개 점포)

* 재해지원자금(용자):

(’16) 300 → (’17안) 300 → (’17최종) 500억원

* 전통시장 화재위험 점검:

(’16) 29.7 → (’17안) 29.7 → (’17최종) 134.7억원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6일(잠정)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16예산	'17예산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C-B)	'16 대비(C-A)	증가율
◇ 총 지 출	386.4	400.7	400.5	△0.2	14.1	3.7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29.5	△0.5	6.1	4.9
2. 교 육(교부금 제외)	53.2(12.0)	56.4(10.5)	57.4(10.5)	1.0(0.0)	4.2(△1.4)	7.9(△11.9)
3. 문화·체육·관광	6.6	7.1	6.9	△0.2	0.3	4.0
4. 환경	6.9	6.9	6.9	0.1	0.1	0.8
5. R&D	19.1	19.4	19.5	0.0	0.4	1.9
6. 산업·중소·에너지	16.3	15.9	16.0	0.1	△0.2	△1.5
7. SOC	23.7	21.8	22.1	0.4	△1.6	△6.6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6	0.1	0.2	1.2
9. 국 방	38.8	40.3	40.3	-	1.5	4.0
10. 외교·통일	4.7	4.6	4.6	△0.0	△0.1	△2.4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1	0.1	0.6	3.7
12.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59.5(23.4)	63.9(23.3)	63.3(22.6)	△0.6(△0.7)	3.8(△0.8)	6.4(△3.3)

2016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본 자료는 2016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6.12.2.(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2016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국세기본법

① 미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국기법 §6)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유 신설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정이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의 제고

②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2②3)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 : 5년 *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수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③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수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시행시기> '18.1.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⑥, §65①3호·⑤·⑥, §81의15⑤)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범위·기간 구체화 〈신 설〉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불복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소송 제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결과통지 수령일부 90일 〈단서 신설〉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 심사·심판 결정통지 수령일부 90일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⑥)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 결정기간 : 30일에서 60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납세자 권익 제고

⑥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단공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포탈세액 2억원 이상인 자

〈수정이유〉 성실납세 유도

2. 국세징수법

①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권한 위탁(징수법 §30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위탁 범위 및 방법 : 시행령으로 위임

〈수정이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시행시기〉 '17.4.1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정부안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9년부터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17년부터 200만원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기한 단축 등 (좌 동)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좌 동)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②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 ①, §100의28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요건 폐지 <삭 제>

<수정이유> 적용요건 합리화

③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5 ①, §100의7③, §100의31②)

정부안	수정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지급시 최저금액 규정 마련 *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재산가액 1억원 이상 50% 감액 등 감액 후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 1만 5천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적용 감액 지급시 최저금액 상향 조정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지급

<수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④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 의2②)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단일세율) 17% → 19%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기한 단축 (좌 동)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5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적용기한) '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좌 동)

<수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시행시기> '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수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18.12.31.

<수정이유> 청년 창업 지원

<시행시기> '17.1.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조특법 §7)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감면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수정이유>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9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분) 2~3% (기본 2%+추가 1%*) * (R&D비용/매출액)×1/2 (증가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분) 1~3% (기본 1%+추가 2%*) * (R&D비용/매출액)×1/2 (증가분) 30%

<수정이유> 대기업 비과세 · 감면 축소

1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5 신설)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 7/8/10% (공제대상)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적용기한) '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 5/7/10% <p>(좌 등)</p>

<수정이유> 비과세 · 감면폭 조정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6 신설)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 중견기업/중소 : 7/10%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 문화유산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 3/7/10% <p>(좌 등)</p>

<수정이유> 비과세 · 감면폭 조정

12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신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 70% 감면 (교육세 ·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요건 미충족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40% 상당 가산세 시행기간 : '16.12.5~'17.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수정이유>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시행시기> '16.12.5일 이후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분 부터 적용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
특법 §8의3, 부칙 §3)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의 사용목적제한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지원목적 삭제 <추가> 공제율: 출연금의 7%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추가 및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공제율 인상: 출연금의 10% (좌 동)

<수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

1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
특법 §25의2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1/3/6% (적용기한) '16.12.31. →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기간 단축 (좌 동) (적용기한) '16.12.31. → '18.12.31.

<수정이유>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1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
법 §25의3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3/5/10% (적용기한) '16.12.31. →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기간 단축 (좌 동) (적용기한) '16.12.31. → '18.12.31.

<수정이유>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4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3/5/7% (적용기한) '16.12.31. →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중소: 1/3/6% (좌 동)

<수정이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7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3, 부칙§1)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적용대상)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19.12.31.까지 양도 (사후관리)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수정이유> 문화시설 이전 지원

18 월세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95의2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무주택자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10% → 12% (공제한도) 750만원 	<p>〈현행 유지〉</p>

〈수정이유〉 적용대상, 공제율 등 추가 검토

19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부칙 §28, §48)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시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운영비의 20%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운동경기부 10% (기간) 설치 후 5년 →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운동경기부 3년 (종목)육상·탁구 등 40개 종목 	<p>〈현행 유지〉</p>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20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8 신설, 부칙 §23)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제공 (특례내용)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 금지 (적용기한) '19.12.31. 	<p>〈삭 제〉</p>

〈수정이유〉 제도 실효성 등 감안

4. 소득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수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소득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축소(시행령 개정 예정)

〈수정이유〉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시행시기〉 '17.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의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25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 '16.12.31. → '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좌 동)

<수정이유> 간주임대료 과세제의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 동)

<수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②)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공제율)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좌 동) (좌 동)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수정이유> 난임시술 지원 확대

⑥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소득세법 §97조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등으로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좌 동) 적용 배제 사유 추가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이유>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17.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

7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종목별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 25억원 → ('18.4월부터) 1%, 15억원 코스닥 시장 (지분율, 종목별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 20억원 → ('18.4월부터) 2%,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종목별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 25억원 → ('18.4월부터) 1%, 15억원 ('20.4월부터) 1%, 10억원 코스닥 시장 (지분율, 종목별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 20억원 → ('18.4월부터) 2%, 15억원 ('20.4월부터) 2%, 10억원 <p>※ 시행령 개정 예정</p>

〈수정이유〉 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시행시기〉 '18.4.1('20.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 유지(소득세법 §162의3④)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제외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행 52개 업종 적용) 	<p>〈삭 제〉</p>

〈수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실효성 등 감안

5. 소득세법

1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법인세법 §25, §27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천 200만원(중소기업은 2천 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②)×50% <p>*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 <th>적용률</th> </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 <td>1만분의 20</td> </tr> <tr> <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 <td>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td> </tr> <tr> <td>500억원 초과</td> <td>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 </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만원 → 400만원 800만원 → 400만원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수정이유〉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②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전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형 → ㉠형(투자포함형)으로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득환류세 산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 [당기 소득×80% - (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등)]×10% ㉡유형 : [당기 소득×30% - (임금증가액+배당액등)]×10% 투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포함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 → 1:1.5:0.8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 → 1:1.5:0.5

〈수정이유〉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 되도록 유도

③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세법 §58의3, §66, §72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따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수정이유〉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④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부칙 §5)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현물출자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법인이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이 승계할 것 부칙(법률 제135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은 '16.1.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 사업기관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 배제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농협중앙회가 '16.1.1일 이전에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기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 배제

〈수정이유〉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지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법인 제도 개선(상증세법 §16, §48)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 : 10% <small>*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small>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 10%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 5%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small>* 시행령(예: 1%)으로 위임</small>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 공시(시행령)

<수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익성 제고

<시행시기> (주식보유한도) '17.7.1일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사후관리) '18.1.1일부터 시행(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도 적용)

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 7%

<수정이유> 공제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17.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상증세법 §18)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영농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상당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

<수정이유> 사후관리 합리화

<시행시기> '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사후관리 위반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 법인등의 사후관리 의무 현행유지(상증세법 §18)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 법인등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삭제 가업유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나머지 사후관리는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유지>

<수정이유>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

7. 교육세법

①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추가(교육세법 §3 별표)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사업에 한정한다)' → '수협은행'으로 명칭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수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 '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관세법

①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감면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을 감축 일정 2년 유예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20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수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등 감안

②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②)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을 감축 일정 2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을 감축 일정 1년 유예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수정이유〉 관세감면 축소

재정포럼

2016년 12월호 통권 제24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12월 15일 발행 / 제20권 제12호(통권 제24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